정책연구	2006-07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고용정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김승택·정인교·조정란

목 차

요 약 ····· i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FTA ····· 5

제 1 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과 효과 ····· 5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와 특성 ····· 5
2. FTA의 효과 ····· 9
3. 우리 정부의 FTA 추진 경과 ····· 13

제 2 절 한·일 FTA ····· 17

1. 배경과 특수성 ····· 17
2. 한·일 FTA의 추진 경과 ····· 18
3. 한·일 FTA의 영향 전망 ····· 26

제 3 장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32

제 1 절 기존 연구결과 논의 ····· 32

제 2 절 제조업종별 영향에 대한 논의 ····· 35

제 3 절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 모형 ····· 42

1. 분석 시나리오 ····· 42
2. CGE 분석 모형 ····· 43

제 4 절 경제적 효과의 추정 결과 ····· 57

1 .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 57

2 . 산업별 영향 ····· 59
3 . 교역에 대한 영향 ····· 63
제 5 절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69
제 6 절 소 결 ····· 79
제 4 장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의 대응사례 ····· 81
제 1 절 미국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 ····· 82
1. TAA의 배경과 특성 ····· 82
2. TAA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 84
3. TAA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 ····· 94
제 2 절 EU의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 ····· 106
1. 유럽구조기금의 형성과정 ····· 106
2. 유럽구조기금의 종류와 프로그램 ····· 107
3. 유럽구조기금의 운영 ····· 112
4. 유럽구조기금의 성과와 평가 ····· 116
제 5 장 결 론 ····· 124
참고문헌 ····· 129
부 표 ····· 136

표 목 차

<표 2- 1> FTA의 추진 동기 및 사례 ····· 9
<표 2- 2> FTA의 효과 요약 ····· 13
<표 2- 3>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개요 ····· 19
<표 2- 4>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주요 논의내용 ····· 20
<표 2- 5>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 ····· 24
<표 2- 6> 한·일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 28

<표 3- 1> 한·일 FTA 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 ····· 37
<표 3- 2>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 ····· 38
<표 3- 3> 우리나라 대 일본의 주요 산업별 기술경쟁력 비교 ····· 38
<표 3- 4> 한·일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비교
(2003년 말 기준) ····· 4
<표 3- 5> 분석 시나리오 ····· 43
<표 3- 6> CGE 모형의 주요 구조와 변수 ····· 45
<표 3- 7>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 58
<표 3- 8> 분석 시나리오별 GDP에 대한 영향 ····· 59
<표 3- 9> 한·일 FTA의 산업생산에 대한 영향 ····· 60
<표 3-10> 한·일 FTA의 산업생산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 ····· 62
<표 3-11> 한국의 대일본 산업별 수출변동액 ····· 64
<표 3-12> 한국의 대일본 산업별 수입변동액 ····· 65
<표 3-13>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변동액 ····· 66
<표 3-14>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변동액 ····· 67
<표 3-15>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무역수지변동액 ····· 68
<표 3-16> 한·일 FTA의 대일본 교역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 ···· 69
<표 3-17> 한·일 FTA의 산업별 실업자 추정치(제1 시나리오) ···· 71

<표 3-18> 한·일 FTA의 산업별 실업자 추정치(제2 시나리오) ····· 72
<표 3-19> 한·일 FTA의 산업별 실업자 추정치(제3 시나리오) ····· 73
<표 3-20>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직종별
(2004년 기준) ····· 75
<표 3-21>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수준별
(2001년 기준) ····· 78

<표 4- 1>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의 변천 단계 ····· 85
<표 4- 2> 미국 무역조정지원(TAA)제도 ····· 89
<표 4- 3> Petition and Employment Experience for Various Free
Trade Hypotheses Sample Period(1980~99년) ····· 6·9
<표 4- 4> Pre-Layoff Job and Job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TRA Recipients, UI Exhaustees, and Other Samples
of Unemployed Persons ····· 89
<표 4- 5> Comparison of Weekly Wages in Pre-Layoff Jobs
and in Jobs Held Three Years After the Initial
UI Claim ····· 101
<표 4- 6> Petiton and Employment Experience in the Garment
Industry Sample Period(1980~99년) ····· 9
<표 4- 7> Estimate of Loss Due to Import Impact(1980~98년) ··· 41
<표 4- 8> Estimate of TAA Benefits Received Due to Import
Impact on the GArment Industry(1980~98년) ····· 5
<표 4- 9> 유럽구조기금 ····· 108
<표 4-10> 지역별 목표의 종류 ····· 109
<표 4-11> 지역사회 주도 의제의 종류 ····· 111
<표 4-12> 유럽구조기금의 종류별 분배 ····· 112
<표 4-13> 구조기금의 국가별 배분(제1차 프로그램: 1994~99년) ·· 1
<표 4-14> 구조기금의 지역별 목표 배분
(제1차 프로그램: 1994~99년) ····· 1

<표 4-15> 지역사회 주도 의제별 배분(제1차 프로그램: 1994~99년) ····· 118
<표 4-16> 구조기금 국가별 분배 계획(제2차 프로그램: 2000~06년) ····· 119

요 약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환경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는 다자협상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제조업뿐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방향(도하개발아젠더, DDA: Doha Development Agenda)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의는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말 세계 총무역액 중 지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43%에 달했고, 2005년에는 55%에 도달(WTO 추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 미체결 국가, 즉 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FTA의 체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FTA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협상과 활용의 전략이 필요하다. FTA의 장점은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므로 인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성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퇴출과 함께 노동요소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고용조정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피해기업과 노동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 계층을 지원

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량적인 근거와 관련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FTA의 특성과 효과 등 FTA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설과 함께 한·일 FTA의 배경과 특수성, 전개상황, 예상되는 효과와 산업별 전망 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3장은 한·일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형과 수출입 변동액을 이용하여 단기, 중장기,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발생, 관세율의 부분철폐 정도 등 시나리오들을 설정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되는 실직자 규모 중심으로 산업별, 직종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FTA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와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에 대한 배경, 추진과정, 현황, 성과 및 평가 등을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전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면 보통은 생산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에 의해 전체적인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수입품의 가격하락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상대국의 상품과 경합하게 되는 국내 산업부문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여파로 해당 부문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이 초래될 때 과연 이들 피해근로자들에 대해 어떤 정책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것인가와 이들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취업하도록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은 노동시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취업자 규모의 증가는 생산물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수요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데, 이들 산업이나 직

종에서는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채용을 하게 되므로 FTA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되는 근로자가 이들 산업과 직종에 유입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따라서 FTA의 체결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의 규모적 변화는 고용의 증가와 감소에서 나타나는 순규모를 피해인원으로 추정하기보다 오히려 실직자의 총량적인 규모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FTA로 인해 새로이 고용창출을 하게 되는 부문으로 이동해 가기 위해서는 이들 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살펴본 미국의 TAA나 유럽의 구조기금의 경우 모두 일정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TAA 방식은 FTA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고용되고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유럽구조기금은 취약한 지역에 자금을 지원(지역사회 조직이나 그룹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하여 그 지역의 경제나 고용을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합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TAA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내의 지지기반을 얻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여했으며, 또한 피해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이전 수준의 60~70%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의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구조기금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운영방식

과 평가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그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기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에 있어서도 투명한 과정을 통한 프로젝트의 선정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요약컨대 위의 두 제도는 서로의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TAA는 피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지역별 격차나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한편 유럽구조기금은 역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그 지역의 경제주체가 발굴하여 추진하므로 인해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축소할 수 있으나, 근로자나 기업에 대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취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금도 기초 사회안정망으로서 고용보험제도는 고용안정센터라는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훈련비용지원, 전직지원, 직업정보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통상제도의 변화인 FTA에 의하여 실업을 당한 근로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기존의 고용보험제도에서 제공하는 관련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

로 보인다. 구체적인 예로 FTA로 실직당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지급규모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0.5배 높여준다거나, 또는 실업급여의 만료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그 외 훈련 및 전직지원의 한도와 기간을 확대한다거나, 보다 전문적인 고용안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실업자와 차별화된 혜택을 주는 것을 통해 무역자유화에 의한 피해를 보완해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한편, 새로운 업무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보험의 혜택에 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역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용보험제도와 연관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여 소득보조, 훈련지원, 전직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경제환경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주의(Regionalism)의 확산이라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세계화는 다자협상을 중심으로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부문을 포함하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만드는 방향(도하개발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주의는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말 세계 총 무역액 중 지역협정 내의 무역비중이 43%에 달했고, 2005년에는 55%에 도달(WTO 추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FTA 미체결 국가, 즉 역외국의 수출여건은 계속 악화될 전망이다.

FTA의 확산 추세를 살펴보자. 최근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 및 미주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유럽연합(EU)은 인근 유럽 및 남미지역으로 FTA를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5년까지 남미와 북미를 연결하는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EAI(The Enterprise for ASEAN Initiative)를 통해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으며, 실제 미·싱가포르 FTA가 2003년 초 타결되어 아시아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역경제통합 추세를 외면했던 동북아에서도 FTA가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에는 역내 냉전체제의 장기화, 국가간 발전수준의 격

차, 다자주의의 선호 등의 요인이 동북아 지역주의의 발전을 저해해 왔는데, 최근 중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와의 FTA를 통하여 지역적 리더십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중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고도성장과 WTO 체제 편입으로 전환되면서 세계 제1의 FDI 유치국으로 부상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간의 FTA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인접 국가들과의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FTA 체결을 통한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전세계가 국제통상의 측면에서 유럽지역의 EU(15개국)와 2005년을 목표로 하는 미주대륙의 FTAA(34개국)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지역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현재 추진 또는 타결된 동아시아지역의 FTA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아세안 FTA 2001년 중국 제안, 2004년 타결 및 2010년까지 이행, 일본・아세안 FTA 연구작업반 가동중, 일본・멕시코 FTA 2004년 3월 타결, 한・싱가포르 FTA 타결, 한・ASEAN 및 한・일 FTA 추진 등 일련의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수출의 증가가 없는 소득증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달성을 위해서는 '개방형 대외통상전략'으로 FTA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만약 FTA 체결에 실패하여 대부분 지역블록에서 역외국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면, 해외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불리한 경쟁여건 확대, 개방화의 세계적 조류로부터의 고립 등의 기회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현재 노동비용이 낮은 중국과 같은 국가와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의 중간에 끼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혹은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추월당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FTA는 비록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국제경쟁력 확보 촉진이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 FTA의 추진은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서 FTA의 장점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발생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협상과 활용의 전략이 필요하다. 장점으로는,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할 때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퇴출과 함께, 노동요소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고용조정이라는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과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이 두 국가와의 FTA체결은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부분 산업분야에서 경합관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 FTA의 체결은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에 특히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중간부품 교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부문의 기술의존도가 높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한·일 FTA가 체결되는 경우 경합관계에 있는 산업 중 일본보다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서 나타날 구조조정의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 계층을 지원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FTA의 특성과 효과 등 FTA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해설과 함께 한·일 FTA의 배경과 특수성, 전개 상황, 예상되는 효과와 산업별 전망 등을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제3장은 한·일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CGE 모델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이 추정치를 바탕으로 노동시장(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되는 실직자 규모를 중심으로 산업별, 직종별, 기술수준별로 분석한다. 제4장은 FTA가 가져오는 부작용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제도와 유럽연합의 구조기금에 대한 배경, 추진과정, 현황, 성과 및 평가 등을 살펴본다,

제5장은 결론으로 전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리한다.

제2장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일 FTA

제1절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과 효과[1)]

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와 특성

국제통상의 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이 발효된 이래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을 거치면서 1999년까지 WTO에 등록된 총 194개의 지역협약 가운데 87건이 1990년 이후에 이루어졌고, 1998년까지 WTO에 통보된 162개의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FTA가 143건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져 1990년대 들어 지역경제통합 현상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WTO(2000)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당시 전세계적으로 240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약 70%에 이르는 172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은 현재 발효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2)] 이러한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의

1) 김승택 외(2006)에서 재정리했다.
2) 지역무역협정은 '체약국간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관세 지역 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다.

수는 총 312건이며, 이 중 발효중인 RTA의 수는 총 170건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경제학에서 전통적인 경제통합 이론은 그 통합의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합(Economics Integration) 등으로 분류한다. 먼저 FTA는 경제통합의 첫 단계로 협정체결 당사국간의 역내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하는 것을 의미하며,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유지하는 경우다. 또한 FTA는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특혜무역 블록으로 GATT/WTO에 통보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관장하는 GATT/WTO 규정은 GATT 제24조 및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허용조항(Enabling Clause)과 GATS 제5조 등이 있다.[3)]

FT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경우로 관세동맹은 역내관세를 경감 또는 철폐함과 동시에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에 생산 및 유통부문의 통합을 가미하며, 자본과 노동

3) GATT 제24조에서는 자유무역지대를 두 개 이상의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에서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여타 제한적인 규정을 협약 당사국간에 "Substantially all trade"에 대해 철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Substantially all trade"는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교역"으로 번역되며 그 해석이 주관적인 까닭에 FTA의 포괄범위가 상당 수준 가변적일 수 있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의 대상범위는 협약대상국간 설정하는 "Substantially all Trade"의 포괄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손찬현, 2001). GATT 제24조 해석에 관한 양해·허용조항(Enabling Clause)이라고 불리는 「1979년 개발도상국의 차별적·호혜적 대우, 상호주의·완전참여에 관한 결정」은 개도국간 특혜무역협정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규정으로, GATT 제24조와 달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가 아닌 인하만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인정되며, 이를 당사국간 상당부분의 교역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일부 품목에만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UR 협상의 결과로 합의된 GATS 제5조는 일부 국가간의 지역서비스 무역협정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지역서비스 무역협정이 무역촉진적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교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GATT 제24조와 유사하지만 지역투자기구(RIO: Regional Investment Organization)는 상품의 FTA와 같이 역내국간의 특혜무역, 역외국에는 차별대우와 같은 형태는 허용되지 않고, 역외국에 대해서도 역내국과 같이 최혜국대우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의 이동이 자유로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경제통합은 공동시장적 성격에 회원국의 금융통화 및 경제정책 통일이라는 요소가 더해진 것을 의미한다.

과거 GATT 시대에는 주로 상품의 관세철폐가 핵심이었으나 WTO 체제에 접어들어서는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은 물론 환경, 직접투자, 노동력 이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FTA가 추진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WTO 체제의 출범으로 자유무역협정의 대상범위는 농산물을 포함한 공산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지적재산권 교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다자간무역협상(MT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4] 협정 이외에도 위생 및 검역조치, 무역 관련 투자조치, 선적 전 검사, 원산지 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정부조달 등 비관세장벽의 범위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FTA의 대상범위는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NAFTA나 칠레가 최근 체결한 협정들을 보면 포괄하는 내용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반면, 개발도상국간의 협정은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FTA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을 기본으로 했으나 점차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기준 등의 범위

4) MTN은 '신국제라운드' 또는 '도쿄라운드'라고도 한다. 도쿄라운드가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에서 주요 국가간에 가조인된 후 계속 조정이 진행된 결과 완성된 '제네바 의정서'를 수락하게 됨으로써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합의된 내용 중 관세인하에서는 광공업제품은 평균인하율 33%, 농산물은 41%를 8년간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보다 공정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 덤핑 방지, 정부조달, 기술규격, 관세평가, 수입허가절차, 개발도상국 대우에 관한 조치, 민간항공기 등에 관한 8개 국제협정과 식육과 낙농품에 관한 2개의 협정이 조인되었다. 도쿄라운드는 1980년대 세계무역의 헌법이라고도 할 협정을 맺었으나, 그 초점의 하나인 선택적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항이 계속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었고, 또 이 협정이 선진국 주도로 되어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배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참가 99개국 중 서명한 국가는 미국·일본·EC(유럽공동체) 등 선진 25개국에 불과했으며, 개발도상국으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서명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1986년 9월에 시작되어 1993년 타결을 본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일괄 타결되었으며, UR의 기능은 1994년부터 새로 발족한 WTO(세계무역기구)로 전이되었다(강인수 외, 2004).

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가장 대표적인 FTA인 NAFTA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관세 및 비관세장벽·원산지 규정·통관절차 등으로 이루어진 상품교역 분야, 투자 및 서비스교역 분야, 표준 정부조달·지적재산권·반덤핑·환경·노동 등 무역규범 분야, 분쟁해결절차·각종 협력 및 검토위원회 등 기타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FTA 협상에서 다루는 기본 내용이자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다. 그 중에서도 주요 쟁점 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철폐 시기의 설정과 대상품목의 선정이다. 산업별로는 공산품에 비해 농업, 수산업 등 기초산업에 대한 시장개방 협상이 어려우며,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협정 발효 즉시 철폐, 5년 후 철폐, 10년 후 철폐, 15년 후 철폐, 극히 민감한 분야에 대한 예외 규정 등으로 분류된다(이행시기의 차별화). 흔히 FTA가 체결되는 즉시 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취약한 역내 산업이 단기간에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 5~15년에 걸쳐 단계적인 자유화를 실시한다. 또한 관세 인하 이행 기간중에는 양자간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를 통해서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한 품목에 한해 수입을 제한할 수도 있다(정인교, 2001).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1990년대 이전에는 시장접근에 의한 교역확대가 주된 체결 목적이었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다양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FTA가 추진되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동기이다. 즉 관세가 철폐되면 무역이 창출되고 후생이 늘어난다는 논리에 근거하여 FTA를 추진한다. 둘째, 개방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 국외 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하는 효과를 추구한다. 셋째, 1990년대 이후에 체결된 FTA들은 국내 경제 개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투자유치, 기술이전, 경제구조조정 등의 목적으로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넷째, 다자주의는 회원국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국의 특수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등의 한계가 있지만, FTA의 경우는 역내 국가간의 보다 높은

자유화를 선도하려는 목표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협상력 강화를 위한 FTA 추진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적 결속관계 강화를 위한 목적을 가진 FTA로 EU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중미 공동시장(CACM: 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경우도 1970~80년대에 빈번하였던 경제·사회적 불안정을 극복하고자 역내 국가들끼리 경제통합을 시도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정인교·노재봉, 2005).

<표 2-1> FTA의 추진 동기 및 사례

FTA 추진 동기	사 례
시장 확대 및 유지를 위한 동기	MERCOSUR, NAFTA 등 거의 모든 FTA의 기본목표
개방과 보호의 절충	멕시코(NAFTA)
국내 경제 개혁의 촉진	멕시코, 칠레
다자주의의 한계점 보완	1990년대 후반 이후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FTA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협상력 강화	ANCOM, MERCOSUR
정치, 외교안보, 사회문화적 결속관계 강화	EU, CACM

자료 : 정인교·노재봉 (편저) (2005)에서 재인용.

2. FTA의 효과

세계 각국이 FTA를 비롯한 지역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무역장벽을 줄이고 교역을 원활히 해 나감으로써 무역자유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공통의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이론적으로 FTA 추진의 중요한 근거는, 무역장벽의 철폐가 시장기능에 의한 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촉진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이론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FTA로 인한 단기적인 경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trade creation effect)와 무역전환효과(trade diversion effect)로 설명된다.

먼저 FTA를 통해 무역장벽이 완화되면 무역거래가 촉진되어 교역규모를 증대시키는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상품 가격이 관세인하 폭만큼 낮아져 소비자들은 저렴한 상품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 효과로 말미암아 역내국들은 관세인하로 비교우위를 갖게 되는 재화를 중심으로 상호교역의 폭을 확대하게 되고, 따라서 역내국들은 비싼 국산 재화를 값싼 역내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 경우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강화되면서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비교우위산업으로 이동하게 되어 생산측면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무역전환효과'는 생산의 효율성이 높은 역외국가로부터 수입되던 물건이 협정체결 후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이 유리해진 이유로 효율성이 낮은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해 대체되는 효과다. FTA 체결 이후 역외국에게 부과하는 관세 때문에 역외산 재화가 비교우위를 잃어버릴 때 관세가 없을 경우의 실제 가격은 역내산이 더 높고 가격 비교우위면에서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지닌 경우, 체약국은 단지 가격만을 따져 비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산업에 대해 자원을 투입하게 되고, 그 결과 회원국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FTA 체결로 역내 시장이 확대되면 역내 경제에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가운데,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요구하는 힘이 역내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5]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수 있는 산업의

5) 이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바그와티 교수는 FTA가 수입국에 따라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이 다르고 원산지 규정이 혼란을 야기하는 등 다자주의 교역체제보다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비회원국에 대한 차별대우를 피하기 위해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역 무역협정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상대 협상국에 보다 많은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해 무역자유화를 지연시키는 형태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오히려 세계 교역체제 전체의 자유화를 후퇴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경우, 역내 시장의 확대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단위당 평균 생산비용이 하락하게 된다. 그 결과 역내 재화가 역외 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 발생하였던 무역전환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FTA의 체결로 제품 단위당 생산비용이 하락하면 해당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이 확대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작은 나라(small country)와 거대 국가(big country)가 지역무역협정을 맺을 경우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 경제적 소국(小國)은 경제적으로 대국(大國)의 무역협정 추구 전략에 휩쓸려 주변국(spoke)의 형태로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변국은 FTA 중심국의 지역무역협정을 구축하는 데 종속적인 위치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고 무역자유화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6)]

FTA의 중장기적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나는 동태적인 효과로, 규모의 경제 및 경쟁촉진,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을 지적할 수 있다.[7)] 단기적으로 무역전환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역내 생산활동의 평균비용 하락 폭이 커지면 역내 재화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질 수도 있어, 중장기적으로 보면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능가하는 이익이 생길 수

6) Wonnacott(1996)에 따르면, FTA 주변국은 대등한 입장의 FTA 회원국일 경우에 비해 후생 악화가 확실한 반면, 여러 양자간 FTA에서 중심국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복수의 FTA에서 중심국일 경우에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합이 이들 여러 Hub-and Spoke FTA를 하나의 FTA로 만들 경우의 이익보다 낮을 수 있는데, 이는 중첩되는 FTA간 발생하는 비효율성 때문이다.

7) 흔히 정태적 효과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반면 동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인 효과보다 먼저 실현될 수도 있다. 만약 양국간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부터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 남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외국기업들도 FTA로 통상제도와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역내 투자를 증대하게 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자유화 효과가 있는 민감한 품목의 경우 협정체결 후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된다면 관세인하의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보다 먼저 나타날 수 있다.

도 있다. 또한 시장의 확대는 기업들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게 되는데, 경쟁촉진은 재화공급과 각종 서비스 측면에서의 질적 향상, 기업간 R&D 경쟁, 신기술의 개발, 기술의 이전, 축적 및 파급, 역외기업의 역내로의 투자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한다.

그러나 FTA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는 부정적인 효과 또한 발생시킨다. FTA의 체결로 발생하는 역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는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의 역내 수입을 막아 국민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제 내의 생산요소들의 산업간 이동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경제 내에 대량실업 등 경제구조의 조정비용(adjustment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FTA의 체결로 경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의 규모가 크더라도 부문별로는 손실을 입는 기업과 근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유통서비스업의 경험을 살펴보면, 개방이 되면서 다국적 외국 대형유통업체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게 되었고, 선진 유통업체와의 치열한 경쟁과 함께 국내 유통시장 구조의 변화가 발생했다. 그 결과, 대형할인점의 경우 국내 유통업체들도 급속도로 증가하며 외국 업체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1993년 1호 할인점의 개설 이후 2002년 말 3천㎡ 이상의 대형점이 207개로 증가). 그러나 영세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등은 그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당해 사라지게 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FTA의 시장개방으로 단기적으로 문제가 크다면 협정이행 초기 단계에서 시장개방의 폭을 축소하여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특정 사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FTA하에서 자유화 이행 기간중에 허용되는 양자간 세이프가드는 이러한 산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FTA는 협정 이행 초기에는 민감하지 않은 품목 위주로 자유화를 실시하게 된다.[8)]

---

8) FTA에 있어 관련 산업분야의 개방을 늦추는 협상 전략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점진적인 관세철폐(노동 관련 서비스 분야와 거의 관련 없음)

<표 2-2> FTA의 효과 요약

		내용	효과(가입국)
무역 및 입지 효과	무역창출 효과	관세 인하로 가입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	무역의 발생으로 소비자잉여가 증가하고 국가 전체로도 후생 증가
	무역전환 효과	관세 인하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국가에서 역내국으로 수입 전환	비효율적 국가로부터 수입 전환이 발생하여 후생 감소
	생산설비 재배치	역내의 기업들이 기존 생산설비를 재배치	비교우위가 있는 역내국의 입지 증가, 일부 국가 산업 이탈
시장 효과	규모효과	무역장벽 제거로 시장이 확대되면 기업은 규모의 경제 발생	시장 확대로 수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비용 하락
	경쟁효과	경쟁압력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 및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 구조 개혁으로 산업 구조 고도화	수입 개방으로 수입대체 기업들은 경쟁압력에 직면
	투자유치 효과	제3국 기업들의 투자	역내 시장 지향의 제3국 기업 투자가 증가
정치적 효과	안전 보장효과	비회원국에 대항한 안전보장	안전보장 강화
	협상력 효과	소수 국가가 통합으로 협상력 증가	협상력 증가
	개혁효과	개혁의 조류를 이용하는 정치적 목적	국내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개혁·개방 목적 달성

자료 : 박번순 외(2004)에서 재인용.

3. 우리 정부의 FTA 추진 경과

세계 각국이 FTA와 같은 지역경제통합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 이행기간 설정
- 세이프가드(Safeguard)의 확립
- 관련 분야를 협상의제에서 제외
-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유보 리스트) 작성
- 국내 전문인력의 고용 금지 또는 사업체간의 합병 금지(현재 법률시장)
- 국내의 자격제도 유지(자격의 상호인증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있고, 공인노무사나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등도 이에 해당됨)

그리고 안정적인 수출입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FTA의 체결을 통해 우리의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 : 지금처럼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우리나라는 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어 역외국으로 남는 경우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불이익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품이 상대적인 고관세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우리 무역의 해외시장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개방을 통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개혁과 개방정책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FTA는 우리 경제시스템의 개혁과 경쟁력의 강화를 추진하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국민후생의 증대와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 제고 : 관세철폐로 인하여 생필품을 보다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의 평균적인 실질소득 및 후생은 증가될 것이다. 또한 FTA의 체결은 우리 경제의 개혁과 개방이 지속될 것이며 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로 나아갈 것이라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국제민간기관의 신용평가나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FTA 전략은 동시다발적인 FTA의 확산과 더불어 국민적 공감대를 갖춘 포괄적인 내용의 FTA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먼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킨다면 각각의 FTA별로 나타나는 서로 다른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보완할 수 있으며, 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전략상 상대국의 적극적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2004년 6월 「자유뮤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9]을 제정하

9)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의 세부내용을 보면, 최고심의·의결기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이며, 동 회의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을 위원으로 한다. FTA 심의기구로 통상교섭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1급

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FTA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하는 FTA의 내용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한편,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유명희, 2005).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FTA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칠레와의 FTA: 1998년 11월 대상국으로 선정, 2002년 10월에 타결, 2004년 4월부터 발효;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FTA로 6년에 걸친 오랜 협상과 비준동의 진통을 겪었지만, 발효 이후 2004년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양국간 교역량이 전년 대비 48%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싱가포르와의 FTA: 2004년 1월에 협상 개시, 2004년 1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 2005년 8월에 정식 서명을 거쳐 2005년 12월 국회비준 동의;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한-칠레 FTA에 포함되지 않은 MRA,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협력 등의 분야도 포함된 포괄적인 FTA이다.
- 일본과의 FTA: 2005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한·일 FTA를 협상중, 2004년 11월 6차 협상까지 견해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후 기타 경제적·정치적인 문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농수산물분야 양허를 포함하여 비관세조치의 개선, 정부조달시장 진출 확대, 산업협력 확대 등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 아세안(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10개 국가)과의 FTA: 2005년 8월 현재까지 총 4차례의 협상을 개최, 2005년 12월 협정 체결 발표, 2006년에는 상품·서비스·투자분야 등의 협력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무원이 위원으로 구성된 'FTA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통상교섭조정관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실무추진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과의 FTA: 2005년 7월 공동연구를 거쳐 FTA 협상 타결
- 캐나다와의 FTA: 2005년 7월 FTA 협상 공식 출범 후 예비협의를 통해 협상 진행중
- 멕시코와의 FTA: 2005년 현재 2개월 주기로 양국간 FTA에 관한 공동연구 진행중
- 인도와의 FTA: 2004년 10월 한국과 인도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을 맺고 FTA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그룹 구성에 합의한 후 공동연구가 진행중
-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중 한국과 브라질간, 그리고 한국과 아르헨티나간 FTA: 2004년 11월 정상회의에서 타당성에 관한 공동연구 개시 발표
- 중국과의 FTA: 2005년 현재 한·중, 한·중·일 3국간 FTA에 대해 공동연구 진행중
- 미국과의 FTA: 2005년 현재 FTA 사전실무검토회의가 진행중

이와 같이 많은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역규모가 큰 거대경제권인 중국(18.1%), 미국(17.6%), EU(14.7%), ASEAN(10.1%), 일본(14.1%)과의 FTA 추진이 바람직하다. 둘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몇 개의 국가를 결합하여 추진하는 묶음(package)과 결합(combination)의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와 FTA 체결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국가와 동시에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외협상과 긴밀히 연계된 대내협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FTA의 체결로 인해 발생할 산업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업체들의 퇴출과 관련된 근로자들의 실직 및 피해에 대비한 사회통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 피해계층 및 취약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다루기 위하여 대외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

여 범부처적인 실무기획단을 설치하여 대외개방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조정 및 피해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10]

제2절 한·일 FTA

1. 배경과 특수성

한국과 일본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지역주의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며, 서로간의 통상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인 한·일간 FTA를 추진하고 있다.[11] 구체적으로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동 대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한·일 FTA는 추진되고 있다(정인교, 2001a).[12]

그러나 한·일 양국의 경합적 산업구조 및 한국의 높은 대일 기술의존

10)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체질 강화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농업·농촌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04~13년까지 10개년 동안 119조원의 재정투융자 계획이 집행되고 있다. 또한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7년간 FTA 이행기금을 조성하여 농업부문의 피해를 지원해 나가고 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에는 피해보상보다는 기업의 전업과 근로자의 전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둔 가칭 「무역조정지원법」의 법제화가 추진중이다.

11) 한편 남북 대치상황에서 일본과의 FTA 체결을 통해 다른 국가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들 국가의 업계, 의회 및 정부가 한반도의 안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정인교, 2001a).

12) Fukagawa(2000)는 한·일 FTA로 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FTA 대상국으로 한국이 매우 적합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첫째, 한국은 규모의 경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등 높은 동태적인 이익을 지적하고 있고, 둘째, 일본과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므로 무모한 중복투자 관행의 감소, 셋째, FTA로 금융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엔화 자금의 활용기회 확대, 넷째, 한반도 안정에의 기여를 지적하고 있다.

도 등의 경제적 요인과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역사 문제와 같이 복잡한 양국간의 정치·경제적 관계로 인해 한·일 FTA는 여러 면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일 FTA는 그 효과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가 단기적·정태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장기적·동태적으로 일단의 과정이 충족되어야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대한 실험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의 FTA 정책 전개에 있어 일본과의 FTA는 최대 현안이자 협상의 타결까지 난제가 될 전망이다.[13)]

2. 한·일 FTA의 추진 경과

1998년 10월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partnership)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 부속문서인 '행동계획'을 통해 5개 분야 43개 항에 달하는 최초의 포괄적인 한·일 협력의 계획을 수립했다.

1999년 3월 '한·일 경제협력 의제 21'을 통해 기존의 경제협력 범위를 넘어서 양국 관계를 강화하자는 요지를 표명하였고, 그 결과 통상장관회담에서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JETRO-IDE)의 한·일 FTA 공동연구의 추진을 합의했다.

2000년 9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의 추진이 합의되어, 2001년 9월 첫 한·일 공동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양측은 IT 협력 활성화를 위한 IT 협력위원회 구성에 합의했고, 2002년 1월 25일 도쿄에서 개최된 2차 한·일 공동회의에서는 양국간의 조속한 FTA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2002년 3월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발족하여 2003년 10월까지 8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

13) 김양희(2003) 참조.

<표 2-3>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개요

명칭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과제	한・일 FTA의 효과, 포괄범위, 분야별 검토, 공동보고서 작성	
운영 방식	양국 공동회의는 격월간 1회 연구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운영은 사전에 양국이 협의한 의제에 대하여 양측이 각기 기조발제를 하며 이에 대한 상대국 소관부처의 이견 발표 및 토론 전개	
구성	한국	- 정부: 외교부 및 3개 부처(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수산부)를 주축으로 하며 현안별로 관계부처 과장이 참석(의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심의관) - 산업계: 한국무역협회,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중앙회 대표 등 - 학계: 국책연구기관 및 대학
	일본	- 정부: 외무성 및 3개 부처(재무성,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를 주축으로 하며 현안별로 관계부처 참석 - 산업계: 경단련 일한산업협력검토회, 농협중앙회, 서울재팬클럽(SJC) 대표 등 - 학계: 대학

2003년 10월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2003년중 정부간 FTA 교섭을 시작하기로 합의(2005년 내 타결 목표)한 후 양국 정부간 협상 추진체계와 협상 일정을 계획하는 한편,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서비스/투자, MRA, 협력, 기타 무역의제(정부조달, 지재권, 경쟁), 분쟁해결 등 7개 분과를 설치했다.

한・일 양국은 2003년 12월 22일 서울에서 한・일 FTA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하였다. 제1차 협상에서 먼저 양국은 지난 10월 방콕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바와 같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를 추진하고 양국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며, WTO 협정에 일치하는 FTA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국은 분야별 협상 단위로 6개의 협상분과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상호 인정 협상 분야는 기술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측간 확인작업을 거친 후 결정키로 했다. 6개 협상분과는 상품무역분과, 비관세조치분과, 투자/서비스분과, 기타무역 이슈분과, 분쟁해결분과, 협력분과의 6개이며, 협상분과 대표는 관계부처 국

<표 2-4>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의 주요 논의내용

한·일 FTA의 기본원칙	- 포괄적인 FTA ·농업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추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MRA,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등을 포함하고, 무역투자증진, 경쟁, 과학기술, 운송, 방송, 환경 등 제반 분야의 상호협력의 진흥을 위한 방법 모색 - 실질적인 자유화 ·단기적으로 일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지라도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자유화 추진, 관세철폐 이행기간은 가급적 단축 - WTO 규범과의 일치
관세 (Tariffs)	- 특정 분야를 일괄 제외하지 않되,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관세철폐를 통해 상호 개방의 충격을 완화한다는 기본원칙에 동의하였음. ·한국의 가중평균 수입관세율(2001년 기준)은 7.9%, 일본은 2.5% 수준을 확인하고 한·일 양국은 농산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농산물과 신발류 및 섬유에 종량세 유지 확인 ·일본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57.3%가 무관세이며, 나머지 품목이 비록 민감하지만 협상대상으로 하겠다는 견해 제시 ·한국은 양국의 관세율 차이를 고려할 때 한·일 FTA는 한국 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 제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이행기간의 설정 및 세이프가드의 확립을 통해 대응하는 데 동의
비관세조치 (NTMs, Non-Tariff Measures)	- 양측은 상호 시장접근 증진을 위해 NTM 철폐 및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 원산지규정의 판정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부가가치 또는 주요공정기준)을 활용하되, 세번 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는 것에 합의 ·원산지 규정은 단순하고 사용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하며, 불필요하게 복합한 규정은 지양
서비스	- WTO 서비스협정보다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서비스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고, 한·일 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서비스부문의 추가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 ·한국은 일본 은퇴기술자의 한국 내 재취업, 간병 인력의 대일 진출 등 인력이동 사례를 제시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비자 면제방안의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음(특히, 의료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상호인증(MRA)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음). ·일본은 일본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본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면서 현재 시점에서 자격의 상호인증을 확립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개진

<표 2-4>의 계속

투자	- 한국은 향후 한·일 FTA에서 이미 발효된 한·일투자협정(BIT) 유보 분야의 추가 자유화와 투자촉진을 골자로 하는 BIT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였고, 아울러 BIT의 홍보 및 일본의 대한투자 증대 방안과 이를 위한 일본의 협력 필요성 등을 피력하였음. ·반면 일본은 현단계에서 BIT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는 한편, 한국에의 투자 증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역할의 한계 등을 지적하였고, 또한 노사문제, 지적재산권, 합작투자 파트너간의 경영방식 차이 등 일본 기업이 한국에 투자시 겪는 애로사항의 개선에 관심을 표명하였음.
무역 원활화	- 통관 ·한국은 통관절차입국시스템(CUPES) 도입을 통해 수출입통관뿐 아니라 모든 통관절차가 전산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일본에서는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 ·한국은 서류 없는 수출입통관시스템, 전산관세지불시스템 및 광범위한 수송위험관리시스템과 같은 조치들에 관해 설명하고, 또한 단일창구시스템, 웹(web)에 기반한 통관절차시스템, 해양 및 항공수송시스템 및 현지적하방출시스템 등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소개 ·일본은 KTNET과 같은 지방전자시스템의 상호연결 분야에서 양국간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에 관해 설명 ·한국은 자국의 통관 및 유통은 KTNET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여러 표준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전자상거래도 오프라인(off-line) 거래와 같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 - 한편 공동연구회는 공동원산지증명서(e-C/O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서류 없는 무역과 같은 전자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과 동시에 실행에 있어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
기술장벽 (상호인증)	- 한국과 일본은 전기제품, 전자통신설비, 전압컨테이너, 의학/약물장비, 일본산업표준(JIS) 및 한국산업표준(KS)의 여섯 분야에서 상호인증에 관한 가능성 연구를 위해 9차례의 미팅을 가진 바 있음.
위생 및 검역(SPS) 조치	- 공동연구회는 SPS 조치가 한·일 FTA에서 과학적 원칙에 기반하여 필요한 정도까지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
자연인의 이동	- 한국은 양자간 비자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한국은 여권사진의 정보교환을 위해 관련 기관들간에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 이민통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 여권이 조작되는 것을 줄이고자 노력 중이라고 언급. 또한 사업가들의 비자면제 및 다국적 비자와 관련한 조치 개선 등 잠정조치의 마련을 제안하고, 양국간 사업가들의 교류를 촉진키 위해 증명서의 상호인증을 제안 - 일본은 비자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국인들의 일본 불법입국 및 거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강화를 요청

<표 2-4>의 계속

지적재산권	- 일본은 한국측에 대해 절차의 간소화, 보호범위의 확장, 상표등록일자의 변경 및 데드 카피(dead copy)의 효율적 규제를 포함한 한국지재권 법제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요구안을 제출 - 한국은 일본측에 대해 일본 특허사무소와 한국 지재권사무소가 특허협력협약(PCT)을 위한 국제조사국/국제예비검사국(ISA/OPEA)을 지명하여 양국이 검사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
정부조달	- 공동연구회는 양국이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글로벌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권고
경쟁정책	- 공동연구회는 경쟁정책이 한·일 FTA에 포함되는 데에 공감
협력 의제	- 아래와 같이 광범위한 협력 및 정책 조화가 논의되었음. ·이동통신, 디지털 가전 등의 분야에서 공동표준 설정, 전기통신분야에서 MRA 체결 및 상호 제도의 규율을 통일하도록 제의(정보기술)하고, 한일 FTA 체결을 기다리지 말고 기존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양국 정부는 중소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함. ·과학기술분야에서 협력의 중요성 공감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공유. 환경영향평가방법에 대한 각국의 연구정보 교환. Eco-labeling 등 기술수준이 유사한 분야부터 MRA 시행

자료 : 박순찬(2004)의 내용에서 정리.

장, 심의관급에서 담당하기로 했다. 단, 상호인정협정분과 설치 문제는 사전 확인이 필요한 기술적 사항들에 대한 점검 후 확정키로 하고, 양국은 2005년에 협상을 실질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2004년 2월 제2차 협상이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협상에서는 협상분야별로 양측의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확인한 후,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 자유화 등 높은 수준의 FTA를 목표로 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번 협상에서의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은 우선 양국간 무역 및 투자 증대를 위하여 농업을 포함하는 상품, 서비스의 포괄적 자유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우회수입 방지를 위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간소화 등 분야에서 FTA 체결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FTA 체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무역규범 분야에서

수준 높은 FTA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관세조치 분야에 있어서는 협의회를 계속 유지키로 하고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간 경제통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역 투자협력, 기술협력 등 각종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키로 하는 한편, 양국간 기술규격을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분과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금번에 논의되지 않은 분쟁해결분과와 함께 총 7개 협상 분과가 설치되었다(7개 협상분과: 상품무역, 서비스/투자, 비관세조치, 상호인정, 기타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 지재권), 협력, 분쟁해결 분과).

2004년 4월 서울에서의 제3차 협상에서 양측은 협정문 초안을 교환하고 주요 쟁점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한국은 정부조달, 비관세조치, SPS, TBT, MR, 인력이동(비자면제협정체결 포함), 경제협력 등 한국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2004년 6월 도쿄에서의 제4차 협상에서 양측은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상품 및 서비스 무역자유화 등 6개 협상분과별로(분쟁해결분과는 미개최) FTA 협상의 주요 쟁점에 대해 협정문을 기초로 논의를 진행했다. 우리측은 비관세조치(NTM), 상호인정(MRA), 정부조달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여 적극 제기하였으며, 일본측은 지재권분야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양국은 상품양허안 교환 시기 및 양허안의 수준에 대해 일반적 의견을 나누었다.

2004년 8월 제5차 협상에서는 여전히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원래 목표했던 2005년까지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7개 협상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협상 제3차 회의시 양국이 각각의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 이래로 진행되고 있는 통합 협정문 작성 작업을 계속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FTA의 핵심인 상품양허안의 교환 시기, 교환 방법, 공산품 및 농수산물 양허안의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공

동발표문을 발표했다.[14]

그러나 이후 협상은 정치적인 문제(독도 문제 등)가 불거지면서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로 1년이 지나가며 2005년 12월 현재에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표 2-5> 한·일 FTA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

상품양허안	- 일본은 높은 수준의 양허안이 교환될 수 있도록 양허안의 교환에 앞서 먼저 요청안(request list)을 가급적 조기에 교환하는 방안을 선호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높은 수준의 양허안이 기대될 경우 요청안 없이 양허안을 교환하자는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 다만 일본은 양허안 교환 시기나 방식보다는 비공식 협의 등을 통해 먼저 상호 만족할 만한 양허안 수준에 대해 공감대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 이에 대해 한국은 일본이 공산품의 양허안을 먼저 교환하자는 제안은 포괄적 FTA 체결을 지향하는 협상의 목표에 맞지 않으며, 높은 수준의 양허안 제시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일본이 농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양허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교환 시기와 관련, 가급적 교환 시기를 미리 정하는 것이 양허안 준비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모든 품목에 대해 동시에 양허안을 교환할 것을 제안 - 양허안 교환은 10월 비공식회의에서 논의
원산지규정	- 한국은 일본이 제시한 선박/가공선(vessels/factory ships)의 정의에서 세 가지 조건이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 내국인 지분 최저소유비중(50%) - 선장과 주요 선원(항해사, 기관사 등) 자국 국적 요건 - 일반 선원 75% 이상의 자국 국적 요건 - 한국은 한·일 FTA는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사이의 FTA이며, 동 조항은 국제기준에 배치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서비스	- 주요 쟁점사항인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최혜국 대우 및 유보 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양측 협정문의 기술적인 차이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

14) 주요 참고자료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5>의 계속

서비스	- 유보리스트 작성 방법은 한·칠레 FTA와 유사한 형태를 따르기로 양측이 합의하였으며, 일본은 유보리스트에 부기되는 산업분류 기준을 GATS에서 사용된 CPC 분류로 하기보다는 양국의 국내산업 분류기준을 따르도록 하자고 제의 - 이에 한국은 양국간 국내산업 분류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주고받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 양측은 구체적인 유보 관련 사항 논의시기에 관하여 상품분과 등 기타 분과의 논의 진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늦어도 2004년 말까지 유보리스트를 교환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함.
협력	가. 정보통신분야 - 전자서명 상호인정, IT 기술자 시험의 상호인정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 방향성이 일치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 - 이와 함께 일본은 개인정보보호, 제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개발 표준화 및 브로드밴드(broadband) 관련 정보교환 등의 분야에 대한 협력을 제안 - 이에 대해 한국은 해당 의제별 상세자료를 제시할 경우 관련 부처의 검토 후 한국의 입장을 전달키로 하였음. 나. 과학기술분야 - 고급과학기술인력 확대 프로그램 등 총 6개의 세부협력 의제에 대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제안을 성실히 검토하기로 약속 다. 환경 분야 - 환경라벨링 상호인정협력 및 FTA 환경성과 평가기법 개발에 대해 일본은 한국의 제안 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 라. 인적자원개발 협력 - 한·일 대학간 학점교류를 위한 민간협의체간 공동연구 추진과 관련하여, 한국의 제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양국 학점인정의 불균형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었음.

자료 : 박순찬(2004)의 내용에서 정리.

3. 한・일 FTA의 영향 전망

한・일 FTA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주로 동태적인 것으로, FTA가 발효했을 때 직접적으로 작동되기보다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정 조건이 달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15] 첫째,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사라지므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인하, 둘째, 일본 기업이 원자재나 중간재를 공급하고 우리 기업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추구할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와 자본축적, 셋째, 경쟁관계에 있는 양국 산업에 대한 중복투자의 방지, 국내 제조업의 생산기술 향상(경쟁 격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달성, 효율성 증대). 이러한 동태적이며 긍정적인 효과들은 양국의 산업 구조조정과 협력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한・일 FTA가 추진되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들은 주로 정태적인 것으로, 한・일 FTA가 발효하자마자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들인데, 우선 현재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일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일본과 경합하고 있거나 국내 기술발전에 주요한 자본집약적 산업들의 국산화 노력 위축과 산업기술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일본기업에 비해 취약한 경쟁력을 가진 국내 기업의 대일 의존도 심화와 일본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가능성(대표적인 예로 부품소재 산업)이 있다.

대외경제연구원(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관세철폐가 한국의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GDP 수준은 개선될 전망이며 그 영향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나, 장기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고려될 경우 한국의 경제력이 제고되고 이로 인해 한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보다 높고, 대일본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높기 때문에 양국간 FTA의 관세철폐효과는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를 악화

15) 한이경・이형오(2004) 참조.

시킬 전망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일간 관세철폐와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산업에 따라 대일본 수출의 증가나 수입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관세 수준이 높은 농축산물의 경우 관세가 철폐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높은 수출증가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의 관세율이 낮거나 무관세인 품목(예: 승용차와 전기·전자 부문)에서는 수출증가가 저조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관세철폐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이 내리거나 그대로인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되는 경우는 배제되어, 일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확대되는 산업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업부문의 생산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으로는 의류, 축산물, 가공식품, 전기·전자 등이며, 기초산업과 서비스산업을 포함한 나머지 산업의 생산규모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적인 효과 외의 영향을 살펴보면 한・일 FTA는 다음과 같은 외교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역내 협력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펼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한・일간 우호관계를 끌어낼 수 있다. 또한 양국간 경제적 협력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동북아시아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당사국간 비경제적 차원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손열, 2004).[16]

16) 손열(2004) 참조.

<표 2-6> 한·일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전망

농수산업		- 한국과 일본의 농업은 생산자원의 부존 여건, 자연환경, 농업 정책 등의 측면에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나, 생산비의 격차와 소비자 선호의 차이로 인하여 FTA 이후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단, 이러한 수출증대는 한국산 농산물이 일본산과 비교하여 품질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 어업의 경우 최근 신어업협정의 발효와 이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에 의하여 고용, 국제수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수산업에 있어 일본의 경쟁력이 일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하락 추세에 있으므로 수산물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한·일 FTA가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켜 생산기반을 위협할 가능성 존재 ·일본 평균 관세가 낮아 무역창출효과보다는 무역전환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전체적으로 농림수산업의 특성상 직접투자 증대, 기술이전 등의 동태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봄.
제조업		- 관세철폐에 따라 일본 제품의 가격이 하락: 이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이 우리 국산을 대체할 것인가 여부가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공작기계	-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시장의 잠식이 예상되며, 국내 공작기계산업의 대체, 산업공동화 내지는 대일 무역적자의 심화 가능성 있음. - 투자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대일 진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이 부문에서 일본 관세율은 이미 0%이기 때문에 수출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가전	- 가전 완제품보다는 이들 완제품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부품 쪽에서 일본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품목에 따라서는 한국 제품이 일본을 앞서 나갈 가능성도 있으나 가전산업 및 이와 관련되는 전자부품산업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대체로 첨단 쪽으로 갈수록 일본 쪽의 경쟁우위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핵심부품과 생산설비의 국산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특히 신가전부문에서 대일 의존적 성격이 고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표 2-6>의 계속

제조업	섬유·의복	- 한·일간에 경합관계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완적 관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고부가가치제품·차별화제품의 특화, 한국은 저부가가치제품·표준화제품의 특화 구조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음.
	반도체	- 반도체산업에 있어 한·일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교역장벽이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 추진에 있어 국내 반도체 산업에는 생산, 수출, 고용구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일본과의 FTA는 경쟁의 성격이 강하던 양국간에 협력 분위기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석유화학	-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일본에 비해 높은데다 수입가격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 - 경쟁력 변화가 예상 - 기초유분: 관세율 인하 폭이 일본보다 크지만 대일 가격 우위 구조에는 큰 변화 없음. - 합성수지: 일본의 관세율 인하 폭이 크기 때문에 범용제품에 관해서는 경쟁력 향상(단, PVC, ABS의 경쟁력은 약화) 예상 - 합성섬유원료: 한국의 관세율 인하 폭이 일본보다 크며, 대일 경쟁력 격차 확대 예상 - 합성고무: 한국의 관세율 인하 폭이 일본보다 크며, 대일 경쟁력 격차 확대 예상 - 일본의 석유화학제품 수요처인 조립가공업체, 중개거래를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종합상사 등이 석유화학업체와 함께 하나의 계열 시스템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양국 기업간에 형성될 전략적 제휴 관계의 강도가 양국 분업구조의 고도화 정도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임.
	자동차	- 중소형 이하의 차급에서는 국산 자동차와 직접적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나, 배기량 기준 3리터 이상의 대형차 및 럭셔리 부문에서는 국산차 수요를 상당히 잠식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이미 일본은 자동차 관련 수입관세를 모두 철폐한 상태이며, 양국 자동차산업간 경합도가 매우 높으면서 국제경쟁력은 일본이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일 FTA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어려움을 주는 선택으로 예상

<표 2-6>의 계속

제조업	조선	- 한국 기업의 시장창출 예상분야로 타국적선(시쿠미센)과 같은 달러 베이스 발주 선박의 수주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일본 내수시장의 대부분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반해 일본 기업의 시장창출 여건은 국내 해운선사들의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의 타국적선 발주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납기, A/S 등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내수시장 잠식이 우려됨. - 국내 LNG선 발주의 개방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의 발주시장에서도 잠식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은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범용 선박 중심으로, 그리고 일본은 특수선제품을 주력 생산제품으로 생산 특화가 이루어질 것임.
	통신기기	- FTA의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ITA 참여국이므로 일부 유예품목과 ITA 비포함 품목을 제외하고는 FTA에 따른 관세폐지의 효과는 높지 않음.
	철강	- 이미 일본의 관세가 2~3%로 낮고, 대일본 수출의 일부 품목은 GSP 수혜를 받는데다가 2004년 무관세화의 추진에 비추어 볼 때 FTA의 관세인하 효과는 적음. - 투자자유화에 있어 일본의 대한국 투자보다는 한국의 공급과잉 상황을 감안할 때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
서비스업	- 관세철폐와는 크게 관계가 없으나,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서비스업은 사업체 활동의 개방, 인력이동, 자격의 상호인증 등의 문제가 오히려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	
	유통서비스	- 현지 진출 : 일본시장 진출에 있어 유통경로상에서의 독특성이 진입장벽의 하나임을 감안할 때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임. - 국내 진입 : 일본에서 경쟁력 있는 유통업체의 한국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이며, 일본 제조업체들이 직접 유통경로를 구축하는 데 따른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임. - 상품에서도 점포 내에서 수입제품의 취급률이 높아지게 되어 해당 상품의 수입 확대 기회를 제공할 것임.

<표 2-6>의 계속

서비스업	금융서비스	- 긍정적 효과: 자본유입, 효율성 제고, 대외신인도 제고, 지역금융시장 발전 - 부정적 효과: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체계적 위험노출 증가, 통화정책 파급효과, 통화주권 약화
	통신서비스	- 국내 사업자에 의한 대외투자의 경우 일본은 이미 외국자본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완화된 상태이므로 FTA의 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보임. - 명시적으로 파악된 기존 투자실적이 없었으나, 일본의 투자잠재력을 고려해 보면 향후 FTA가 발효되었을 때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해운서비스	-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FTA의 경우 외국적선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따라 저운임이 유지될 것이므로 일본선사들의 참여는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며, 양국의 공동대응이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러시아선사 등의 신규 참여로 우리나라 선사들의 지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반해 역외선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공동대응할 수 있는 확대형 FTA를 체결하면, 시장운임이 다소 회복됨으로써 시잠점유율 하락 폭을 완화시킬 수 있고 채산성의 호전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건설	- 1994년 이후 일본이 대외개방을 확대하면서 우리 업체의 진출 실적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양허 협정이 발효될 경우 시공부문에서의 진출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건설시장이 추가적으로 개방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토목공사에 대한 진출이 어려울 것인 반면, 건축부문에서는 현장에서의 사업관리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므로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 : 정인교(2001b)의 내용을 정리.

제3장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제1절 기존 연구결과 논의

지난 5년 사이 우리나라 FTA 정책추진에서 한・일 FTA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음에도 이의 경제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1999~2000년 사이 한일 양국의 국책연구기관이 중심이 되어 공동연구를 하였고, 이 시기를 즈음하여 몇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이후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개최되었으나,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내용보다는 협정의 내용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공동연구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2003년 12월 협상이 시작되었고, 산업별 이해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나 경제구조 및 협상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반영한 한・일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추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연구의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999~2000년 한일 양국의 국책기관들이 수행한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7] 정인교(2001b)에 따르면, ① 양국간 호혜적 관세철폐는 한국의 후

17) 한국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은 아시아경제연구소(아지켄)가 양국의 대표 연구기관으로 각각 참여하였다.

생수준과 대일(對日)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② 또한 한국의 중화학공업부문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한국의 산업구조가 악화될 전망이다. ③ 그러나 양국간 FTA하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산업구조와 대세계 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이 시기에 산업연구원(KIET), 한국경제연구원, 외국의 연구자들이 한·일 FTA의 경제효과를 추정하였으나, 주요 내용은 국책기관의 공동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양국간 관세철폐의 후생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KIEP의 연구는 후생수준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KIET와 아지켄의 연구는 반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GDP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KIET, BDS(Brown, Deardorff and Stern, 2000)이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지켄은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대일본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란 전망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결과이다.

한·일 FTA 산관학 보고서는 한·일 FTA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를 악화시키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진 등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결론짓고 있다. 동 보고서는 KIEP의 2000년도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전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할 경우, 단기적으로 무역수지가 최대 60.9억 달러 악화되나 장기적으로는 그 폭이 4.4억 달러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대세계 무역수지는 단기적으로 15.4억 달러 악화되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30억 달러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GDP는 장기적으로 2.88%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추정은 FTA 체결에 따른 경쟁촉진, 중복투자 방지, 규모의 경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등 동태적 효과와 이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별 영향을 고찰하여 보면, 우리 업계의 대일 경쟁력 보유 여부, 산업별 관세율 및 수입의 가격탄력성 수준에 따라 산업별 영향이 차이가 난다. 또한 개별 산업 내에서도 부품/완성품 여부, 범용제품/고기능제품 여부에 따라 영향이 상이한 편이다.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분야에서 특히 부품·소재의 피해가 예상되고, 섬유, 석유화학 등의 분야에서는 수출확

대가 전망된다. 무관세로 수출입되는 정보통신, 반도체, 철강분야에서는 영향이 미미할 전망이다. 일본에서 부품·소재, 일반기계 등 자본재를 수입하는 국내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자본재에 대한 관세철폐는 이를 사용하는 완성품업계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수산물의 경우, 우리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은 신선채소류 등 우리 농산물 전체 수출의 36%(5.9억 달러, 2002년 기준)와 김, 굴, 붕장어, 피조개 등 수산물 전체 수출의 70%(8.2억 달러, 2002년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농수산물 수출시장이다.

양국 기업간 경쟁과 협력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 양국간 FTA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무역 및 투자자유화, 과학기술협력, 산업협력 등 제반 경제협력사업을 포함하므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2003년 중반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FTA 협상 개시에 동의하였다.

한편, 한·일 FTA가 양국간 긴밀한 산업협력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 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김학기(2004)는 기술협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생략된 한·일 FTA는 수입확대에 따른 국내시장 잠식과 중소기업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02년 대일 수출 총액 151억 4,300만 달러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60%에서 2002년 48.3%로 줄어들었다. 품목별로는 일본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 미만의 관세를 부과하는 기계, 전기, 전자, 철강, 종이 등 제품은 수출비중이 1999년 24.5%에서 2002년 38.7%로 커졌으나, 10% 이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신발, 모자, 섬유는 전체 대일 수출의 2.2%에 불과하여, 양국간 관세를 철폐하더라도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무관세 혹은 관세율이 낮은 품목은 대일본 경쟁력 약화로, 일본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국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이나 중국의 경쟁에 의한 생산 및 수출 감소로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대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의 FTA 실익이 작다는 것이다.

김학권(2004)은 일본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들, 즉 일본의 평균 관세율이 1% 미만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한국 상품이 사실상 일본 상품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일본 시장 진입이 여타 시장에 비해 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평균 관세율 1% 미만에 속하는 품목들이 우리나라의 대세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인데 비해 대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2%에 그치고 있는데, 그 차이를 관련 품목들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거나 일본의 유통시장의 문제 등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향후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저관세 또는 무관세에 속하는 품목들은 일본과의 경쟁력 차이로 인해 대일 수출은 기대만큼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일본의 관세율이 높은 품목들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일 수출품목들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관세율이 낮거나 무관세인 품목들에 대한 대일 수출 비중은 늘어나고 있음을 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FTA 체결에 따른 관세철폐효과가 줄어들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일본 관세율에 따른 수출상품 구성비를 우리나라 전체 수출품의 구성비로 확대해 볼 경우 '고관세 소량 수출, 저관세 대량 수출'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일본 관세가 1% 미만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8.1%에서 71%로 늘어났고, 5% 이상의 고관세 품목의 수출 비중은 같은 기간 동안 12.4%에서 11%로 감소하였다. 예컨대, 2002년 현재 관세가 높아 FTA 체결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섬유류와 식품류이나, 이들 품목의 수출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FTA의 수출증대효과의 감소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2절 제조업종별 영향에 대한 논의

한・일 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 산업구조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일 수입 증가가 우

리 수출 및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는 반면, 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부품소재 업종에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업종은 대부분 손실을 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업종 내에서도 기업의 제품판매구조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내수 위주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지만, 내수기업이더라도 수입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무관세수입부품은 오히려 가격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우경화로 인한 우려, 정치·역사적 현안 등으로 한·일 FTA를 비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평가가 용이하지 않다.

여기서는 한·일 FTA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FTA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명 시장개방 내용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사항이 협정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협상에 있어 가장 가시적이며 일차적인 평가기준은 관세인하에 따른 경제적 이해득실이 된다. 여기서는 양국간 관세인하에 대한 우리 산업의 입장을 고찰하고, 양국간 FTA를 평가하고자 한다.

2003년 말 양국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매 2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04년 하반기에 관세양허안을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측 제조업 시장개방안은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동년 6월 말까지 산자부안을 확정하고, 8월 초 정부 차원의 협상안을 결정하고, 9월경에 offer list를 교환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산자부는 산업연구원 등에 양허안 작성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동 연구결과를 기초로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였다.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므로 산자부의 양허안 내용을 밝힐 수 없으나,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 규정을 충족시키는 내용의 양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2004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4단체는 정부의 협상안 등을 중심으로 한·일 FTA에 대한 범산업적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서 전경련(2004a)은 한·일 FTA 양허안에 대한 업체의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수 업체가 정부의 양허안을 지지하거나 오히려 관세양허 일정을 단축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표 3-1> 한·일 FTA 양허안에 대한 업계의 입장

	업체수	KIET안 수용(A)	단축(B)	유예	비율계(A+B)
수입	873	197(22.5%)	637(73.0%)	39(4.5%)	95.5%
생산	649	229(35.3%)	191(29.4%)	229(35.3%)	64.7%
전체	1,522	426(28.0%)	828(54.4%)	268(17.6%)	82.4%

자료: 전경련, 「실태조사 결과 및 보완과제」, 2004a.

상기 <표 3-1>을 살펴보면, 정부의 요청으로 KIET가 도출한 양허안이 업계의 입장보다는 보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대상 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 KIET의 양허안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관세철폐를 희망하고 있으며, 관세유예를 희망하는 업체는 18%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관세철폐에 대해 우리 정부 혹은 연구기관이 민간업계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양국간 FTA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전경련(2004b)의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경련(2004b)에 의하면, 한·일간 기술격차는 일반기계가 가장 취약하며 IT 관련제품은 첨단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율이 취약한 편이다. 일반기계는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5.5년으로 가장 크며, 특히 CNC선반 등 고부가가치 품목의 기술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 및 부품·소재는 범용가전을 제외한 광섬유, 비메모리 반도체, 무선통신기기부품 등 첨단부품의 기술격차가 큰 상황이며, 철강 및 석유화학은 국내 수급구조 및 양국 분업구조에 기인한 무역의존도가 크므로 기술격차의 의미로는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는 71.4%, 조선은 85%, 전자는 70.8%, 일반기계 71%의 국산화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소재분야의 국산화율은 65% 수준에 머물고 있어 동 업계는 일본과의 FTA를 우려하고 있다.[19]

18) 조사기간은 2004년 3~6월이며, 조사에 응한 기업은 총 1,522개(생산 649개, 수입 873개.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437개, 300~1,000명 업체 264개, 300명 이하 821개 업체) 업체이다.

19) 양국간 관세율 차이를 감안할 때, 한·일 FTA 체결시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쟁력 격차는 객관적 기술격차 지표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송, 일반기계 분야에서 대일 경쟁력 격차를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심 원천기술 및 소재부품분야에서 경쟁력이 뒤

<표 3-2> 주요 산업의 국산화율(%)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전자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섬유	부품소재
국산화율	71.44	85.00	49.68	70.85	71.03	-	-	-	65.00

자료 : 전경련(2004b) 재인용.

<표 3-3> 우리나라 대 일본의 주요 산업별 기술경쟁력 비교

(지수 : 한국 = 100 기준)

	현황						전망	
	설계기술	기술/제품개발력	생산기술	품질수준	종합	기술격차(년)	2007	2010
반도체	108.6	106.8	100.0	104.0	104.9	0.8	99.0	94.4
컴퓨터	106.3	112.0	101.0	104.0	105.8	1.7	104.5	102.1
조선	107.3	108.0	108.8	101.7	106.5	0.6	104.6	102.6
가전	107.8	108.3	102.8	107.8	106.7	1.4	104.2	101.9
섬유	108.2	116.0	106.0	110.2	110.1	1.8	105.6	101.8
통신기기	116.2	109.4	104.6	111.0	110.3	1.3	107.0	102.0
석유화학	119.5	117.8	106.8	105.0	112.3	3.1	106.6	103.2
철강	116.9	113.8	115.1	116.8	115.7	3.2	108.8	105.0
자동차	117.9	114.1	114.6	117.9	116.1	3.0	110.4	102.3
일반기계	120.7	120.7	112.7	115.0	117.3	5.5	111.3	105.3

자료 : 전경련(2004b) 재인용.

일본과의 FTA에 대한 산업별 입장을 살펴보면, 먼저 전자산업의 경우 일본의 전자산업 경쟁력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반도체, 디지털가전, 이동단말기, 소프트웨어 등은 한국이 일본과 동등하거나 부분적으로 우위에 있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이동통신 단말기, MP3P, DVDP, DVR 등 정보통신기기에서 일부 경쟁우위에 있으며, DRAM, TFT LCD, PDP, CRT, CD-ROM 등은 세계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제조 및 응용기술은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케팅 등은 일본에 열위를 보이고 있다. 전자산업은 가격경쟁력 하락에 따른 대일 수입증

지는 현실에서 관세철폐시 가격경쟁력까지 악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가로 인한 피해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 가속화를 예상하고 있다. 양국간 관세율 격차(제조업 평균 일본 0.8%, 한국 8%)가 없어지면 국내 소비자 가격 기준 12~15%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FTA 체결로 인해 브랜드와 기술력을 갖춘 완제품생산 대기업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부품생산 중소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기계산업의 경우에도 불리한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 기계산업의 대일 경쟁력은 낮은 편이며, 일본과 같은 선진국은 연구개발 및 판매 등 고부가가치 창출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범용제품의 조립생산에 치중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쟁능력의 열위로 선진기업과 동일한 가치연쇄상(기초연구→제품개발→생산공정→마케팅 등)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기계산업 가운데 일반기계부문의 부가가치 창출은 낮은 편이다. 생산공정에서도 한국이 생산공정의 효율성, 하청관리능력의 미비로 선진국 기계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비해 낮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과의 기술격차가 크고 핵심부품 중심으로 대일의존이 심한 상태이므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역내 분업시스템으로 국내 생산비용의 절감 효과는 기대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기술개발 회피와 산업기반의 붕괴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기계산업에 대한 일본의 평균 관세율은 0.4%이므로 FTA를 통한 대일 수출증대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한일간 자동차와 부품의 무역수지 적자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부품 총수입액의 42.7%(2002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이는 자동차부품의 대부분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와 수입차들의 국내 판매호조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자동차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나 1990년대 들어서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일 양국 자동차산업간 범용기술 경쟁력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미래형 자동차 및 첨단기술 경쟁력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8% 관세 철폐시 일본산 완성차의 국내 판매가격 7~10% 인하 효과가 발생하여 대형 승용차는 물론 준중형 승용차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세계적 부품 조달 네트워크의 일반화, 일본 부품업체의 부품단가 인하 추세에서 자

동차부품 무관세화는 자동차부품 수입 대폭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은 자본집약적인 장치산업으로 설비규모에 따라 생산원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경쟁력 비교의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에틸렌 단위설비규모는 5,720천 톤으로 단위설비규모가 가장 큰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60% 수준에 있고, 싱가포르 및 미국에 비해서도 열위에 있으나 일본과는 비슷한 수준에 있다. 전반적인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규모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2배(합성수지 기준) 크나, 일본은 PE·PP 등 범용제품분야에서 노후화되고 소규모인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아 설비효율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다.

석유화학산업은 범용제품의 경우 대체로 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어 동일 기술을 채택할 경우 품질 등 제품생산 면에서의 기술격차는 비교적 작다. 다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기술과 응용기술 면에서는 구미 석유화학산업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정기술이나 특화기술에서는 다소 열위에 놓여 있다. 반면, 일본은 모든 분야에서 구미 석유화학기업과 거의 대등한 기술 수준이며, 주요 제품에서는 독자적인 원천기술을 확보, 주요국에 기술을 판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최대 기술 공여국이다.

석유화학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대체로 경합관계에 있으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니즈에 대응하고, 차별화에 의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수 고급제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석유화학분야는 양국 모두 공급과잉 상태로 잉여분의 대외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일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합성수지 등 범용품의 수출 증가,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 촉진, 장기적으로는 양국 우위분야에 대한 생산 분업, 양국 기업간 경쟁과 제휴 촉진 등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섬유의 기술경쟁력을 살펴보면,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이고 경쟁국인 대만, 홍콩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장섬유직물과 편직물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3-4> 한·일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비교(2003년 말 기준)

(단위 : 천 톤/년)

	한 국			일 본		
	생산능력	업체수	평균능력	생산능력	업체수	평균능력
에틸렌	5,720	7	817	7,232	11	657
벤젠	3,180	12	265	5,518	25	221
톨루엔	1,929	8	241	1,634	15	109
자일렌	2,540	7	363	5,895	23	256
P-X	3,830	6	638	3,225	10	323
LDPE	1,702	5	340	2,404	11	219
HDPE	1,995	7	285	1,285	8	161
PP	2,778	8	347	2,833	9	315
PS	1,303	6	217	1,044	4	261
PVC	1,260	2	630	2,340	9	260
EO	510	3	170	918	4	230
AN	520	2	260	741	5	148
TPA	5,120	6	853	1,450	4	363
Caprolactam	120	1	120	622	4	156
SBR	240	2	120	613	5	123
BR	218	2	109	279	5	56
VCM	1,416	2	708	3,042	7	435
SM	2,602	7	372	3,005	9	334
Acetaldehyde	30	1	30	430	3	143
Acetic Acid	444	2	222	685	3	228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편람』, 2004;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관계통계』; 중화학공업통신사, 『일본의 석유화학공업』, 2004.

의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넥타이, 손수건(스카프 포함), 양말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으며, 블라우스, 셔츠, 남성용 코트 및 재킷도 아직은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양국간 관세철폐시 대일 수출 확대로 전반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이

전망된다. 일본산 섬유소재 투입가격이 하락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 및 제품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양국의 대세계 섬유산업 경쟁력이 점차 하락 추세에 있어 단기적인 섬유교역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편이다.

한편, 섬유사·직물의 범용품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고급 및 차별화된 사·직물은 경쟁력 열위를 보이고 있다. 섬유소재(화섬사, 화섬직물, 모·면직물)에서 일본 고급제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제3절 분석 시나리오 및 분석 모형

1. 분석 시나리오

기본적으로 FTA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를 한·일 FTA 경제효과 추정의 1차적인 시나리오로 설정하고자 한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제조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불리한 측면이 많으므로 자유화 예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데, 제조업 전품목에 대해 10%의 예외를 허용하기로 한다(시나리오 2). 마지막으로 한·일 FTA하에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이 기계산업이므로 이 산업에 대한 자유화 예외를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도입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나리오 2에다가 기계산업의 50%가 자유화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가정한다.[20]

다국가 CGE 모형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가 직접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생산, 교역, 소비, 정부지출 등에 대한 품목별 통계를 획득하고 이를 동일한 산업분류에 따라 재정리하는 데 많은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과거 연구자의 경우, 1~2개 지역에 대한 5

20) 2005년 현재 일본은 농업분야에 대한 개방을 꺼리고 있어 농업의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 가능성도 분석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굳이 자유화 예외를 고려하지 않고자 한다.

<표 3-5> 분석 시나리오

	시나리오의 설명
제1 시나리오	- 전품목 완전 관세철폐
제2 시나리오	- 제조업의 예외 인정(10%)
제3 시나리오	- 제2 시나리오+기계산업 예외 50% 인정

개 이내의 산업통계를 활용하여 CG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으나, 15개 이상으로 산업을 분류할 경우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구자가 겪는 이러한 애로를 감소시키기 위해 국제 CG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1990년대부터 Purdue 대학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Purdue 대학이 2005년 발간한 제6판 GTA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였다.

2. CGE 분석 모형

CGE 모형은 정책변동의 효과가 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자유화정책의 추진은 부분균형접근으로는 정확한 영향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일반균형모형은 생산자, 소비자, 정부 등 경제주체별 활동에 대한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GDP, 물가, 무역수지 등 거시변수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보통 다국가 CGE 모형은 모형 내 여러 지역이 동일한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를 한국, 일본 및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고 모형을 설정할 경우, 각 지역 소비자의 가격탄력성, 생산자의 생산구조(보통 규모불변)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소비패턴, 산업별 생산요소 투입계수, 수출입 패턴 등에 대해 현실적인 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경제는 서로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된다. 각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모형화할 때, 프로그래밍 작업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으나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뮬레이션의 어려움이 있다.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방식을 특징짓는 모수는 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계량작업을 거쳐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모수를 모형에 반영하기 어렵다. CGE 모형을 이용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주로 GTAP의 모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를 한국, 일본, 기타 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본과 기타 지역은 규모불변과 GTAP 모수를 사용하기로 한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전의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는 저축 및 투자에 대한 모형의 미비로 발생하는 추정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함수를 도입한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한국적 모수를 사용하고, 규모의 경제와 자본축적 효과를 모형화하기로 한다.

먼저 본 연구에 사용되는 CGE 모형의 가정에 대해 논의하면, 첫째, 각 경제는 초기 균형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어떠한 경제활동(생산, 수입, 수출 등)에도 초과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생산요소들은 한 국가 내에서는 산업별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으나 자본을 제외하고는 국가간에는 이동하지 않는다. 셋째, 소비자와 생산자는 각각 효용극대화 및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

가. 기본모형[21]

기본모형에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 경제의 후생수준은 식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소비와 저축으로부터 얻는 후생수준 변동의 가중평균으로 계산된다.

식 (4)는 국내재와 수입재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복합재화(c_r^i)에 대한 가격지수를 계산하며, 이 가격지수는 국내재(식 (2))와 수입재(식 (3))의 수요결정에 사용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먼저 소득과 가격(식 (4))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후생수준을 극대화시키도록 복합재화에 대한 최적의 수요량을 정한 후, 소비자는 각각의 복합재화 수요량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수입된 재화 중에서 각각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지를 결

21) 기본모형에 대한 설명은 정인교(2001b)에서 발췌, 요약하였다.

정한다. 이 단계의 의사결정에서는 국내재에 대한 가격이 가격지수에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 3-6> CGE 모형의 주요 구조와 변수

소비자 선호체계 :

(1) $u_r = \delta_r * \sum_i \delta_r^i * c_r^i,\ where \sum_i \delta_r^i = 1$

(2) $d_{cr}^i = c_r^i + \sigma_c^i * \{p_r^{ci} - p_{cr}^{di}\}$

(3) $m_{cr}^i = c_r^i + \sigma_c^i * \{p_r^{ci} - p_{cr}^{mi}\}$

(4) $p_r^{ci} = \Theta_{cr}^{mi} * p_{cr}^{mi} + (1 - \Theta_{cr}^{mi}) * p_{cr}^{di}$

생산자 :

(5) $q_r^i = LEONTIEF(\overline{q}_r^i,\ z_r^{1i},\ z_r^{2i},\ z_r^{3i},,,)$

(6) $d_{zr}^{ji} = z_r^{ji} + \sigma_f^j * \{p_r^{ji} - p_{zr}^{dji}\}$

(7) $m_{zr}^{ji} = z_r^{ji} + \sigma_f^j * \{p_r^{ji} - p_{zr}^{mji}\}$

(8) $p_r^{ji} = \Theta_{zr}^{mji} * p_{zr}^{mji} + (1 - \Theta_{zr}^{mji}) * p_{zr}^{dji}$

(9) $q_{er}^{ki} = \overline{q}_r^i - \sigma_v^k * (p_{er}^{ki} - p_{er}^i)$

(10) $p_{er}^j = \sum_k \varpi_r^{jk} * p_{er}^{jk}$

가격연관함수 :

(11) $p_{rs}^i = \overline{p}_{rs}^{\ i} + t_{rs}^i$

(12) $\overline{p}_r^{\ i} = \sum_s \Theta_{sr}^i * p_{sr}^i$

(13) $p_{cr}^{mi} = \overline{p}_r^{\ i} + t_{cr}^{mi}$

(14) $p_{zr}^{mji} = \overline{p}_r^{\ i} + t_{zr}^{mji}$

(15) $p_{cr}^{di} = p_r^i + t_{cr}^{di}$

(16) $p_{zr}^{dji} = p_r^i + t_{zr}^{dji}$

<표 3-6>의 계속

시장균형조건 :

(17) $\overline{l_r} = \sum_j l_r^j$

(18) $\overline{k_r} = \sum_j k_r^j$

(19) $q_r^i = d_{cr}^i + \sum_j d_{zr}^{ji} + \sum_s m_{sr}^i$

(20) $m_r^i = m_{cr}^i + \sum_j m_{zr}^{ji}$

(21) $p_r^i = mc_r^i$

(22) $p_r^c = \sum_i \Theta_r^{ci} * p_r^{ci}$

상수 및 모수 :

δ_r^i : r지역 소비자의 총지출 중 제품 i에 대한 지출 비중(이하 하첨자 r은 지역 r을 나타냄)

Θ_{cr}^{mi} : 소비자의 상품 i에 대한 총지출 중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중

Θ_{zr}^{mji} : 제품 i 생산자가 중간재 j의 구입에 대한 총지출 중 수입재에 대한 지출 비중

ϖ_r^{jk} : 산업 j에 있어서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총지출 중 노동과 자본 각각에 대한 지출 비중($k \in$ 노동, 자본)

Θ_{sr}^i : 수입품 i에 대한 수입에 지출한 총지출액 중 지역 s에서 수입한 상품 i에 대한 지출 비중

σ_c^i : 최종소비재 i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σ_f^j : 중간재 j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σ_v^k : 본원적 생산요소 k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

Θ_r^{ci} : 소비자의 총지출 중 상품 i에 대한 지출 비중

변수(변동률로 표시):

u_r : 후생지수

c_r^i : 복합재화 i의 소비량

d_{cr}^i :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i의 최종소비량

m_{cr}^i : 수입된 상품 i의 최종소비량

<표 3-6>의 계속

변수(변동률로 표시):

q_r^i : 제품 i의 생산량

$\overline{q_r^i}$: 산업 i의 부가가치 투입량

z_r^{ji} : 산업 i의 중간재 j의 투입량

d_{zr}^{ji} : 산업 i의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j의 투입량

m_{zr}^{ji} : 산업 i의 수입중간재 j의 투입량

q_{er}^{ki} : 산업 i의 본원적 생산요소 k의 투입량

$\overline{l_r}$: 지역 r에 고용된 노동의 합

$\overline{k_r}$: 지역 r에 고용된 자본의 합

l_r^j : 산업 j에 고용된 노동

k_r^j : 산업 j에 고용된 자본

m_{sr}^i : 상품 i의 지역 s로의 수출량

m_r^i : 상품 i의 총수입량

p_r^{ci} : 복합재화 i의 소비자가격

p_{cr}^{di} :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 i의 소비자가격

p_{cr}^{mi} : 수입재 i의 소비자가격

p_r^{ji} : 산업 i의 복합중간재 j의 생산자가격

p_{zr}^{dji} : 산업 i의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j의 생산자가격

p_{zr}^{mji} : 산업 i의 수입중간재 j의 생산자가격

p_{er}^{ki} : 산업 i의 본원적 생산요소 k의 생산자가격

$\overline{p}_r^i$: 수입한 상품 i의 가중평균가격

p_{er}^i : 산업 i의 부가가치의 생산자가격

p_{sr}^i : 지역 s에서 수입한 상품 i의 관세부과 후 가격

$\overline{p}_{sr}^i$: 지역 s에서 수입한 상품 i의 국제가격

t_{rs}^i : 지역 s에서 수입한 상품 i에 대한 수입관세

p_r^i : 상품 i의 생산자가격

<표 3-6>의 계속

변수(변동률로 표시):

p_r^c : 소비자물가지수

mc_r^i : 상품 i의 한계생산비용

t_{cr}^{mi} : 최종소비용 수입상품 i에 대한 수입관세

t_{zr}^{mji} : 수입중간재 i에 대한 수입관세

t_{cr}^{di} : 최종소비용 국내생산 상품 i에 대한 세금

t_{zr}^{dji} :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 i에 대한 세금

생산은 토지, 노동, 자본의 본원적 생산요소와 중간재를 투입물로 사용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구조는 가능한 한 단순한 형태로 구성하였다. 기본모형에서는 모든 생산부문이 완전경쟁상태에 놓여 있다고 가정하였다. 생산자는 이윤극대화의 조건인 가격과 한계생산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식 (21)).

부가가치와 복합중간재는 레온티에프(Leontief) 생산방식에 따라 투입된다(식 (5)). 즉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부가가치와 일정량의 복합중간재가 투입되어야 한다. 식 (6)과 (7)은 국내 생산재화와 수입재화에 대한 기업의 수요체계를 나타낸다. 소비자 수요와 마찬가지로 기업은 수입재화와 국내재화에 대한 가중평균치인 생산자 가격지수를 계산하여, 이를 수요방정식 (6)과 (7)에 대입하여 수입중간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에 대한 수요량을 계산하게 된다. 노동과 자본의 수요는 식 (9)와 (10)으로부터 계산된다.

가격연관함수는 모형에서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이 조세와 관세 등의 정책변수와 어떤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낸다. 식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부과 후 수입가격은 수입품의 국제가격과 수입관세의 합으로 표시된다. 수입가격지수는 관세부과 후의 수입가격을 수입국가별 수입 비중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된다(식 (12)).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입품 사용에 대한 최종가격 계산에 이용된다. 식 (13)과 (14)는 수입된 재화가 최종소비에 사용될 경우와 중간재로 사용될 경우에 소비자(식 (13))

와 생산자(식 (14))가 지불하는 가격을 나타낸다. 식 (15)와 (16)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해 국내세금이 부과된 후의 소비자가격과 생산자가격을 나타낸다.

시장균형조건은 각 시뮬레이션 모형에 포함된 시장이 항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수식체계이다. 대부분의 다국가 일반균형 시뮬레이션 모형은 요소시장(식 (17)과 (18)), 상품시장(식 (19)과 (20)) 및 자본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여기서는 왈라스의 법칙(Walras' Law)을 이용하여 자본시장을 생략하고 요소시장과 상품시장의 균형조건만이 모형 내에서 달성되도록 한다.

지역별 국민소득의 변동은 부가가치접근방식으로 계산되며 각 지역의 각 산업별로 총생산물의 가치를 추계하여 그로부터 생산에 투입된 중간투입재를 공제한다. 이를 전산업에 걸쳐 합산하고, 해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 및 정부수입(관세인하의 경우에는 (-)가 됨)을 가산함으로써 명목소득이 결정되고, 모형 내에서 계산된 GDP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GDP를 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수식은 지나치게 복잡하므로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나.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모형화하는 방식은 대체로 총비용 중에서 고정비용이 존재함을 가정하고, 생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생산비가 하락하도록 모형화한다. 수식 (23)에서 단위당 평균비용(C_i^A)은 한계비용(C_i^M)과 평균고정비용($\frac{FC}{qi}$)의 합으로 계산된다.

$$(23)\quad C_i^A = C_i^M + \frac{FC}{qi}$$

수식 (23)에서 고정비용에 대한 산업별 정보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비용계수(CDR: Cost Disadvantage Ratio)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모형화시키게 된다. CDR 계수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규모의 경제 계수와 산출탄력성은 CDR/(1-CDR)과 1/(1-CDR)로 계산된다.

$$(24)\quad CDR_i = \frac{C_i^A - C_i^M}{C_i^A}$$

규모의 경제를 모형화함에 있어 CDR을 사용하는 것은 산업별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형화 작업에 그대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규모의 경제가 반영된 CGE 연구에서는 주로 Prattern(1988)의 연구결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Prattern 이후 경제 전체에 걸쳐 산업별로 규모의 경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도 부득이 Prattern이 제시한 산업별 CDR계수를 시뮬레이션에 사용하기로 한다.

고정비용은 진입장벽을 의미하며, 균형상태에서 i산업은 n개 기업(n개의 차별화된 제품(variety))이 존재한다. 여기서 규모의 경제가 포함된 모형을 이용한 연구에서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업단위제품차별화(firm-level product differentiation)를 모형화할 필요가 있다.[22] 이를 위해서는 산업 내 제품별 대세계 수요를 추정하기 위한 탄력성을 구해야 하고, 이러한 탄력성이 다시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수식에 반영되어 제품별 마크업(mark-up, mk_i^i)을 모형화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크업을 모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한 형태의 마크업 방식을 가정하기로 한다. 기업의 판매가는 생산자가격과 마크업의 합으로 표시된다.

22) 기업단위제품차별화의 모형화에 대해서는 Cheong(1995) 참조.

(25) $p_r^i = p_A^{ir} + mk_r^i$

Cheong(199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차별화가 반영된 대세계 탄력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업단위제품차별화는 완전균형 CGE 모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즉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입품 최종소비 및 중간재 수요에 대한 지역별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의 행동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모수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 작업의 단순화를 위해서 Francois and Roland-Holst(1997)의 단순화된 방식을 사용하기로 한다. Francois and Roland-Holst는 한 산업 내 n개의 기업이 존재하고, 각 기업은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각 기업별 의사결정 방식이 주어져야만 모형을 풀 수 있으므로, 이들은 제품차별화도 반영하면서 모형화가 용이한 쿠르노 추측적 반응(Cournot conjecture)을 채택하였다. 이 경우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대세계 수요탄력성은 식 (26)으로 계산된다.

(26) $\epsilon_r^i = \sigma_r^i + (1 - \sigma_r^i)\zeta_r^i$

σ_r^i는 제품간 대체탄력성이며, ζ_r^i는 r지역 i제품에 대한 가중치이다.

(27) $mk_r^i = (1 - CDR_r^i) * \left(1 - \frac{\Omega_r^i}{n_r^i} * \frac{1}{\varepsilon_r^i}\right)^{-1}$

식 (27)에서 두번째 괄호 안에 있는 $\frac{\Omega_r^i}{n_r^i}$를 통해 가격 결정에 쿠르노 추측적 반응을 반영하게 된다. 이 추측계수는 1(완전독점일 경우)과 0(완전경쟁)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즉 2개 기업으로 구성된 과점일 경우 쿠르노 추측계수는 0.5가 된다. 각 산업별 쿠르노 추측계수를 구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한 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10개 기업이 균형상태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다. 투자와 자본축적 효과

CGE 모형에서 투자와 자본축적의 관계를 내생화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과 프로그래밍 기법의 제약성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특히 다국가 모형은 무역관계의 모델링에 초점을 둔 결과, 투자는 초기균형상태 배분비율과 동일하게 배분되거나 지역별 투자 수익률이 동일하게 되도록 투자를 지역별로 배분하는 메커니즘의 도입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교역, 투자 및 성장이 상호 동태적 순기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Baldwin(1989), Edwards(1992), Levine and Renelt(1992), Grossman and Helpman(1991, 1995), Baldwin and Venables(1995) 등 많은 학자들이 교역, 투자 및 성장의 관계에 대한 계량적인 검증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들 중 Levine and Renelt(1992)는 cross-country 자료를 사용하여 성장과 GDP 대비 투자 비중의 (+) 상관관계와 GDP 대비 투자 비중과 GDP 대비 교역 비중이 상호 (+)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Baldwin and Venables(1995)는 무역자유화가 정태적 효과 외에 투자유인을 가져다주며, 이러한 투자가 축적되면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인(動因)을 제공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이를 '자본축적효과(capital accumulation effects)'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투자축적효과는 특히 FTA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FTA는 무역자유화 외에도 통상규범과 제도를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도록 조율함으로써 역내외로부터 투자유입을 확대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일부 CGE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모형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논문은 Francois, McDonald, and Nordstrom(1997)이다. 이들은 FTA 체결의 효과 추정에 있어 FTA가 투자유치에 미치는 긍정적인 측면과 이로 인한 자본축적효과의 모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인 다국가 CGE 모형에서는 저축률을 외생화시키고, 그 결과 소비자는 저축 후 소득수준을 기초로 각 품목

별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축적의 효과가 생산, 더 나아가 미래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소비자는 소득수준이 변동할 때 현재 소비와 함께 미래 소비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명시적으로 모형화하기 위해서는 intertemporal 동태적인 CGE 모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태적 모형을 다국가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들은 기존 정태적 CGE 모형에 저축률을 내생화시키고, 자본축적이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태적 모형이기 때문에 미래 소비수준은 모형 내에서 명시되지 않는다.

자본축적효과를 보여주는 [그림 3-1]에서 YY는 생산함수이고, SS는 저축함수이다. 저축은 전통적인 가정에 따라 소득의 일정부분(저축률 s)으로 결정된다.

(27) $S_t = s * Y_t$

소득수준은 자본량에 의존하고 저축은 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저축은 자본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자본은 자연마모, 노후화 등으로 감가상각된다.

(28) $DD = \delta * K_t$

저축수준이 자본감가상각을 초과하게 되면 자본량은 증가하게 된다.

(29) $K_{t+1} = (1-\delta) * K_t + I_t; \quad 0 < \delta < 1$

자본량이 낮아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식(29)), 그 결과 자본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기술진보를 가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증가는 투자수익률을 감소시키게 되고, 장기적으로 1인당 소득수준은 저축이 자본재의 감가상각과 일치하는 점(DD와 SS 교차점)에서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자본과 노동을 생산요

소로 투입할 때, 정태적 자본과 소득수준은 다음과 같다.

$$(30)\quad K = \left(\frac{s}{\delta}\right)^{\frac{1}{1-a}} * A^{\frac{1}{1-a}} * L$$

$$(31)\quad Y = \left(\frac{s}{\delta}\right)^{\frac{a}{1-a}} * A^{\frac{1}{1-a}} * L$$

[그림 3-1] 저축과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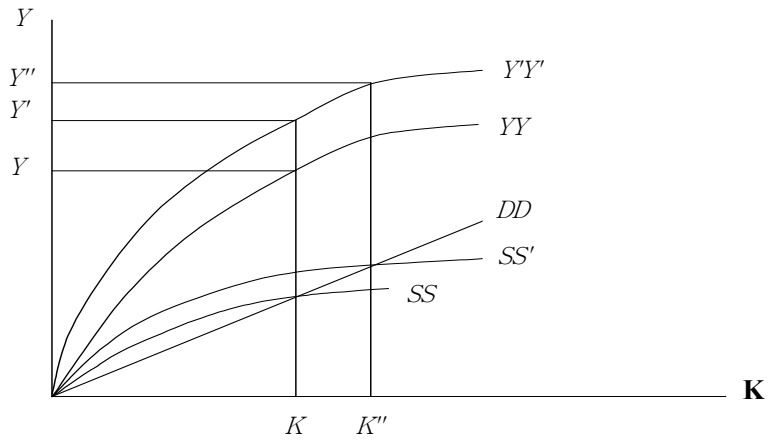

식 (30)과 (31)에서 a와 (1-a)는 각각 자본과 노동의 생산탄력성이며, A와 L은 각각 경제 전반의 효율성 파라미터와 노동투입량이다. 여기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개혁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산함수는 $Y'Y'$로 상향 조정되고, 그 결과 저축함수도 $S'S$로 바뀐다. 새로운 균형점은 (K'', Y'')가 된다. [그림 3-2]는 이러한 자본축적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개혁조치 전에 경제는 점1에 있었으나, 개혁조치로 후생수준이 개선된 점2로 이동하게 된다. 자본집약적인 산업(산업 2)의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는 후생수준이 더 높아진 점 3으로 이동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자본축적의 효과가 반영된 모형을 사용

하여 한·일 양국간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자 한다. 먼저 규모의 경제는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차이가 평균비용에서 차지하는 비

[그림 3-2] 자본축적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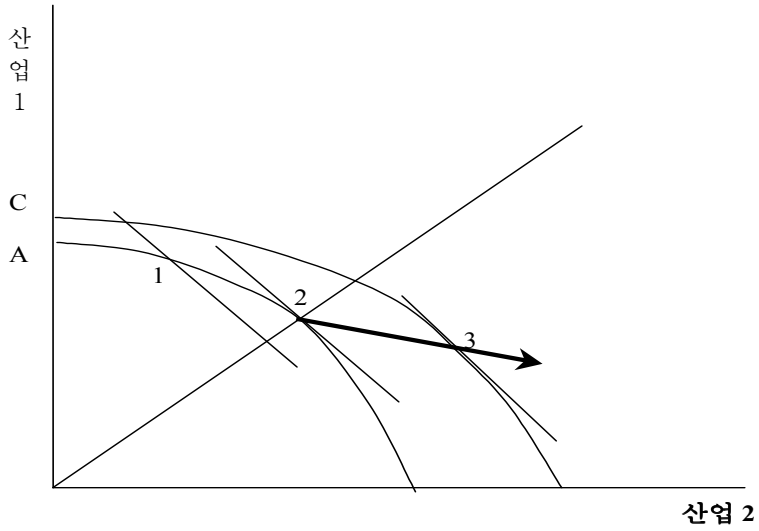

중인 CDR 계수를 부여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에 그 효과가 반영된다. 모든 산업에 대한 CDR 계수를 0으로 부여하게 되면 그 모형은 기본 모형인 완전균형 CGE 모형이 된다.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의 산업별 CDR 계수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Francois and Roland-Holst(1997)에 제시된 값을 조정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기초산업, 의류,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나머지 산업들에 대해서는 0.05~0.15의 CDR 계수가 사용되었다. 자본축적 CGE 모형은 자본축적활성화변수(자본변수)와 저축활성화변수(저축변수)를 변수통제방식(Closure)[23]을 통해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 기본모형, 규

23) 대부분의 모형은 정책변수와 기타 전이변수 등으로 인해 변수의 수보다는 수식의 수가 적게 된다. 이 경우 모형을 풀기 위해 변수의 일부를 외생화하게 되는데, 이를 변수통제(Closure)라고 한다.

모의 경제 모형, 자본축적모형, 규모경제-자본축적모형으로 변형될 수 있다. 먼저 분석대상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분류한다. 단기적 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변수통제로 자본변수와 저축변수를 외생화시킨 모형을 시뮬레이션하면 된다(식 (32)). 중기와 장기적 효과는 이들 두 변수에 대한 변수통제를 통해 추정된다. 중기적인 효과 추정을 위해서는 저축변수를 외생화시키되 자본변수를 내생화함으로써 모형 내에서 자본축적을 활성화시킨다(식 (33)). 마지막으로 장기적 효과는 자본변수와 저축변수를 모두 내생화시킴으로써 자본축적 허용과 함께 경제주체가 소득증가분을 소비와 저축으로 배분할 때 미래 투자수익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추정된다. 식 (34)에서 r_1과 r_0는 각각 감가상각 후 투자의 미래 수익률과 현재 수익률이다.[24]

(32) $K_1 = K_0 = K^{fixed}$

(33) $I_1 = I_0 * \left(\frac{K_1}{K_0}\right)$;

$K_1 = K_0 * \left(\frac{Y_1}{Y_0}\right) * \left(\frac{P_0}{P_1}\right)$

(34) $r_1 = r_0 * \left(\frac{P_1}{P_0}\right)$

식 (32)~(34)는 동태적 구조인 데 비해 본 연구는 정태적 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과연 이들 식이 정태적 모형에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충격)이 변동했을 경우에 정태적 모형이 새로운 균형을 찾는 방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모형은 충격을 한꺼번에 정책변수에 반영하지

---

24) CES 후생함수($U_s = \int_s^{\infty} u(c_t)e^{-\rho(t-s)}dt$: constant relative risk averse 함수가 됨)를 사용할 경우, 투자수익률은 시간할인율(rate of time discount)과 인구증가율의 합이 된다.

않고, 한 시뮬레이션에서 각 단계별로 소폭의 충격을 모형에 가함으로써 초기에 설정된 모든 충격이 반영되도록 한다.

제4절 경제적 효과의 추정 결과

앞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은 최대 네 가지 형태로 확대될 수 있다. 즉 먼저 규모불변모형과 규모의 경제 모형으로 나누어지고, 각 모형은 단기추정 모형과 중장기추정모형으로 확대된다.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크게 거시경제변수, 생산, 교역, 노동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분석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별도의 절로 분리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비록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한·일 FTA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본 가정인 제1 시나리오에서의 추정결과를 주로 제시하고, 제2 및 제3의 시나리오 추정결과를 보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일본과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의 경제를 가정한 모형으로 추정한 효과가 완전경쟁모형 추정치보다 클 것으로 나타났으나, 추정치간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자가 수행한 다른 연구에서는 규모의 경제 모형을 이용한 추정치가 완전경쟁모형을 이용한 추정치보다 상당히 큰 추정치를 도출하였으나, 한·일 FTA에서는 양 모형간 추정치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 그 이유는 양국간 교역구조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높지만 수출대상국으로서의 일본의 비중은 상

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규모의 경제를 가정해도 대일본 수출이 그다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거시경제 추정치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3-7> 한·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실질GDP(%)	0.14	0.72	0.14	0.78
후생수준(백만달러)	459	1,680	494	1,826
물가(%)	0.18	-0.20	0.22	-0.22

한편, 한·일 FTA의 경제적 이익은 단기보다 장기에 주로 실현될 전망이다. 사용된 추정모형에 관계 없이 단기에는 우리나라 GDP가 0.1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장기적으로는 GDP 증가율이 0.72~0.78%로 증대될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단기에서와는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모형 내에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후생수준의 변화는 FTA하의 무역자유화의 영향을 소비자잉여 및 생산자잉여 변화로 계산한 것이다. 한·일 FTA는 단기적으로는 5억 달러, 중장기적으로는 17~18억 달러 후생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물가수준은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하나, 생산잠재력이 확대된 장기에는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한·일 FTA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경쟁력이 높은 일본과의 FTA 체결시 대일본 수입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우리 제조업이 타격을 입게 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대일 수입의 대부분은 우리 산업의 생산활동에 중간재 및 자본재로 투입되는 것이고, 이들 수입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우리 수출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산 수입품과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부품소재 업종들

은 피해가 우려되나, 이들 산업에 대한 피해가 FTA 체결로 인한 산업경제 전반의 이익보다는 작을 것이란 점을 본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자유화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관세의 완전 철폐 경우(제1 시나리오)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10%의 제조업을 자유화 예외로 설정하는 제2 시나리오하에서

<표 3-8> 분석 시나리오별 GDP에 대한 영향

(단위 : %)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제1 시나리오	0.14	0.72	0.14	0.78
제2 시나리오	0.13	0.64	0.13	0.78
제3 시나리오	0.11	0.53	0.11	0.64

우리나라의 GDP 증가율은 0.01~0.08%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규모의 경제를 가정하면 중장기적으로 동일한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기계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자유화 예외를 인정(제3 시나리오)할 경우 GDP 증가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대일 수입품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 . 산업별 영향

관세철폐의 효과가 주로 반영되는 단기에는 산업별 명암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업 등 기초산업, 가공식품, 섬유, 의류, 전기전자, 기타 제조업, 건설, 무역 등의 서비스 등에서 산업 생산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나, 석유화학, 금속, 자동차의 생산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보면 완전경쟁모형과 규모의 경제 모형이 유사한 추정 결과를 보여주지만, 규모의 경제 가정하에서 생산축소 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타 수송장비의 경우, 완전경쟁모형에서는 생산이 0.04% 증가할 전망이나 규모의 경제 모형에서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생산증가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은 의류이며, 다음으로 가공식품, 전기전자, 섬유, 건설, 수산물 등의 생산증가율

이 높을 전망이다.

한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난 산업에 영향이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모형하에서 석유화학과 자동차산업의 생산은 각각 0.61%, 0.1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규모의 경제 모형에서는 생산축소 폭이 0.56%, 0.13%로 줄어들었다.

<표 3-9> 한·일 FTA의 산업생산에 대한 영향

(단위 : %)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0.62	0.55	0.63	0.51
원료 농산물	1.01	0.92	1.02	0.89
축산물	1.11	1.00	1.11	0.95
임산물	0.53	0.44	0.56	0.42
수산물	1.04	0.73	1.06	0.64
가공식품	1.62	1.39	1.63	1.34
광물자원	-0.80	0.24	-0.83	0.38
섬유	1.37	2.59	1.19	2.62
의류·피혁	4.26	4.65	4.13	4.60
석유화학	-0.61	0.48	-0.56	0.66
금속	-1.00	-0.08	-0.93	0.21
승용차·부품	-0.18	0.51	-0.13	0.68
기타 수송장비	0.04	1.96	-0.12	2.08
전기·전자	1.37	2.80	1.29	2.94
기계장비	-1.48	-0.07	-1.37	0.26
기타 제조업	0.59	0.98	0.58	1.02
건설	1.06	1.03	1.19	1.12
무역·운송	0.32	0.29	0.36	0.28
사업	0.38	0.54	0.43	0.57
기타 서비스	0.34	0.22	0.39	0.20

한편, 중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이 고려되면 생산축소 산업의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변화율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 규모의 경제 모형하에서는 전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전망이며, 완전경쟁하에서는 두 개의 산업만이 생산이 악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 산업은 금속과 기계장비로 생산감소 폭은 각각 0.07%와 0.08%로 낮을 전망이다.

완전경쟁모형하에서 중장기적으로 가장 생산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 산업은 단기추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류산업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섬유, 기타 수송장비, 가공식품 등의 생산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며, 단기추정보다는 생산증가율이 훨씬 높을 전망이다. 규모의 경제 모형으로 추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전산업 생산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의 경제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영향을 추정해 본 결과, 제조업 전산업의 생산증가율은 완전경쟁하의 추정치보다 클 전망이나, 의류산업만은 생산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초산업 및 서비스산업의 생산증가율도 완전경쟁모형에서보다 낮을 전망인데, 이는 제조업에 한정해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것으로 모형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분석 시나리오를 달리함에 따라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3-10>은 완전경쟁 및 중장기 가정하에서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산업별 영향이 시나리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제조업 예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 생산에 대한 영향이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기초산업의 생산규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었던 자원이 이들 기초산업으로 일부 전환되기 때문이다. 제조업 부문 예외 허용은 완전 철폐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조업 생산활동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키며, 기초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 시나리오를 달리하더라도 대부분의 산업에 대한 영향이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의 경우, 제1 시나리오에서는 0.2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2 및 제3의 시나리오하에서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25)]

제조업 중 기계장비산업은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생산규모가 위축될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화 예외 확대가 동 산업의 생산규모 축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전산업 완전 관세철폐가 부분적인 예외 허용보다 기계장비산업에는 더 유리한 것으로

<표 3-10> 한·일 FTA의 산업생산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

(단위 : %)

	제1 시나리오	제2 시나리오	제3 시나리오
곡물	0.55	0.94	0.88
원료 농산물	0.92	1.23	1.19
축산물	1.00	1.43	1.37
임산물	0.44	0.71	0.67
수산물	0.73	1.46	1.39
광물자원	1.39	1.87	1.83
가공식품	0.24	-0.16	-0.21
섬유	2.59	1.97	1.98
의류·피혁	4.65	4.58	4.60
석유화학	0.48	0.03	-0.03
금속	-0.08	-0.36	-0.42
승용차·부품	0.51	0.15	0.04
기타 수송장비	1.96	0.59	0.25
전기·전자	2.80	1.85	0.97
기계장비	-0.07	-0.69	-0.31
기타 제조업	0.98	1.04	0.97
건설	1.03	1.18	0.99
무역·운송	0.29	0.66	0.57
금융	0.54	0.74	0.63
기타 서비스	0.22	0.70	0.62

주 : 완전경쟁 및 중장기 추정 결과임.

나타났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완전 관세철폐인 제1 시나리오하에서의 생산규모가 위축되더라도 그 감소 폭(-0.07%)의 절대치는 제2 및 제3 시나리오에서보다도 더 작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완전 철폐로 기계장

25) 자본축적이 고려되지 않는 단순한 CGE 모형에서와는 달리, 복잡한 형태의 CGE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에 대해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비의 수입도 증가하지만 경제 전반의 생산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국산 기계장비의 수요 및 생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한편, 제2 시나리오와 제 3시나리오의 추정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기계장비의 50%에 대한 관세철폐를 예외화하는 제3 시나리오에서의 생산규모 축소가 완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세철폐 예외 확대가 생산위축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비록 기계장비산업일지라도 완전 관세철폐가 제일 유리하며, 만약 기계장비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허용할 경우 대폭적인 예외 확대가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3 . 교역에 대한 영향

일본과의 FTA 체결시 우리나라의 대일본 수출은 24억~27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수출 증가액은 사용된 분석모형에 따른 추정치 차이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완전경쟁모형으로 추정한 수출증가액은 24억 달러이고, 규모의 경제 모형 추정치가 27억 달러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표 3-11>에서 보듯이, 각 산업별 수출증가액이 분석모형과 관계 없이 유사한 편이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수출증가액은 2억 4,500~2억 6,900만 달러로 단기 완전경쟁 추정치와 중장기 규모의 경제 추정치간 차이가 2,4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산업별로 볼 때, 가장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산업은 가공식품과 의류피혁이며, 다음으로는 기타 제조업, 섬유, 석유화학, 전기전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가공식품과 의류피혁을 제외하고는 수출증가액이 5억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 제조업, 섬유,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의 수출증가액은 2억~3억 달러에 불과할 전망이다. 기초산업의 경우, 원료 농산물 수출이 6,000만 달러 내외가 될 전망이며, 수산물 증가액은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일본 수입증가액은 76억~80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증가액에 비해 수입증가액이 2.5배 정도 커지게 될 것으로 나타나, 대일 무역수지가 50억 달러 악화될 전망이다.

수입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기계장비류이며, 수입증가액은 3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는 석유화학, 금속 등의 수입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하며, 이들 3개 산업의 수입증가액이 대일 수입증가액의 8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초산업의 대일 수입증가액은 4천만 달러 정도될 전망이며, 이들 수입증가의 대부분은 수산물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업계가 일본과의 FTA를 위협적인 것으로 우려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1> 한국의 대일본 산업별 수출변동액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9	9	9	9
원료 농산물	63	64	63	64
축산물	3	3	3	3
임산물	0	0	0	0
수산물	11	11	11	11
가공식품	567	571	566	571
광물자원	0	0	0	0
섬유	304	312	302	312
의류·피혁	559	563	556	563
석유화학	245	264	248	269
금속	130	170	132	179
승용차·부품	2	5	2	5
기타 수송장비	0	1	0	1
전기·전자	129	223	124	233
기계장비	59	105	65	120
기타 제조업	374	384	372	384
건설	0	0	0	0
무역·운송	-6	-3	-8	-3
사업	-6	-2	-7	-2
기타 서비스	-2	-1	-3	-1
전 체	2,441	2,679	2,437	2,718

<표 3-13>과 <표 3-14>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변동액 및 수입변동액 예상치를 제시하고 있다. 대세계 수출과 수입은 각각 시나리오 평균 42억~43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대일 수출 및 수입에서와는 달리 시나리오에 따른 추정치의 차이가 클 전망이다. 단기적으로 대세계 수출은 29억 달러 내외 증가하나, 중장기적으로는 56억~60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가장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전기·전자로 시나리오 평균 13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산업은 대일 수입부품을 중간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FTA 체결로 이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

<표 3-12> 한국의 대일본 산업별 수입변동액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1	1	1	1
원료 농산물	5	5	5	5
축산물	7	8	7	8
임산물	0	0	0	0
수산물	28	28	28	28
가공식품	233	233	233	233
광물자원	6	6	6	6
섬유	273	277	273	277
의류·피혁	56	57	56	57
석유화학	1,502	1,630	1,507	1,643
금속	1,175	1,142	1,181	1,154
승용차·부품	290	296	289	297
기타수송장비	26	28	26	28
전기·전자	706	823	702	832
기계장비	3,031	3,145	3,023	3,150
기타 제조업	260	266	260	266
건설	0	0	0	0
무역·운송	-2	1	-2	1
사업	0	3	0	4
기타 서비스	0	0	0	0
전 체	7,597	7,946	7,596	7,988

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가공식품, 의류, 석유화학, 기계 등도 수출증가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가공식품과 의류는 주로 대일 수출증가가 예상되는 품목들이다. 대세계 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 산업은 기계장비로, 시나리오 평균 14억 달러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기계장비의 대일 수입증가액이 30억 달러인 반면, 대세계 수입이 1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 것은 FTA 체결 이전에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기계장비의 상당부분이 일본으로 전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기계장비 다음으로 수입증가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은 석유화학 및 금속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출변동액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평균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8	7	8	8	8
원료 농산물	55	56	55	56	56
축산물	2	2	2	2	2
임산물	0	0	0	0	0
수산물	10	10	10	10	10
가공식품	517	508	515	508	512
광물자원	0	0	0	0	0
섬유	233	437	206	443	330
의류·피혁	484	507	470	505	492
석유화학	321	568	346	631	467
금속	103	350	117	408	245
승용차·부품	52	260	56	310	169
기타 수송장비	5	206	-13	218	104
전기·전자	886	1,743	836	1,818	1,321
기계장비	154	608	205	733	425
기타 제조업	311	352	300	353	329
건설	-1	0	-1	0	0
무역·운송	-80	-18	-93	-20	-53
사업	-84	-23	-97	-26	-57
기타 서비스	-42	-6	-49	-6	-26
전 체	2,934	5,566	2,874	5,951	4,331

한・일 FTA가 산업별 무역수지에 미칠 영향은 <표 3-15>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표 3-13>의 수출변동액과 <표 3-14>의 수입변동액을 차감한 것이다. 일본과의 FTA 체결시 단기적으로 9억~10억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10억~13억 달러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다. 대체로 기초산업과 서비스업종은 무역수지 적자 확대가 예상되나, 제조업은 품목에 따라 이해관계가 엇갈릴 전망이다. 전기·전자, 의류·피혁, 가공식품 등은 무역수지가 개선될 전망이나, 기계장비, 금속 등은 악화될 전망이다.

<표 3-14>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수입변동액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평균
곡물	25	24	25	23	24
원료 농산물	33	35	33	35	34
축산물	40	49	39	48	44
임산물	4	6	4	6	5
수산물	17	16	17	16	17
가공식품	135	130	137	127	132
광물자원	57	204	55	226	135
섬유	166	209	163	209	187
의류·피혁	55	48	57	47	52
석유화학	613	611	611	618	613
금속	468	681	473	696	580
승용차·부품	157	160	158	160	159
기타 수송장비	23	24	26	26	25
전기·전자	357	517	362	539	444
기계장비	1,383	1,509	1,365	1,502	1,440
기타 제조업	135	168	141	173	154
건설	1	0	1	0	1
무역·운송	70	30	79	26	51
사업	95	120	108	134	114
기타 서비스	25	2	29	1	14
전 체	3,861	4,544	3,884	4,612	4,225

GDP 및 생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역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가 허용되면 대일본 수출액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예외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수출증가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감소액은 네 가지 분석모형 평균 1억 7,7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26]

26) 제2 시나리오 및 제3 시나리오에서의 대일본 수출 및 수입에 대한 영향(산업별 추정치)은 <부표 1>~<부표 4> 참조.

한편, 제조업 관세철폐 예외 확대는 대일본 수입증가액을 상당수준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에 대한 10% 예외가 허용되면 완전 철폐에 비해 8억 5,400만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고, 여기에다가 기계장비산업에 대해 50% 예외가 추가되면 대일본 수입액은 20억 9,300만 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세철폐 예외가 대폭 허용되는 기계장비의 수입은 12억 달러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3-15> 한국의 대세계 산업별 무역수지변동액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평균
곡물	-17	-16	-17	-16	-17
원료 농산물	23	21	22	22	22
축산물	-38	-47	-37	-46	-42
임산물	-4	-6	-4	-6	-5
수산물	-7	-6	-7	-6	-6
가공식품	382	378	378	381	380
광물자원	-57	-204	-55	-226	-136
섬유	67	229	42	233	143
의류·피혁	429	459	413	459	440
석유화학	-292	-44	-265	13	-147
금속	-365	-331	-356	-288	-335
승용차·부품	-106	100	-102	150	11
기타 수송장비	-18	181	-39	192	79
전기·전자	530	1,225	474	1,279	877
기계장비	-1,229	-901	-1,160	-769	-1,015
기타 제조업	176	184	159	180	175
건설	-1	0	-1	0	-1
무역·운송	-150	-48	-173	-46	-104
사업	-179	-144	-205	-160	-172
기타 서비스	-68	-8	-78	-7	-40
전 체	-927	1,022	-1,010	1,339	106

<표 3-16> 한·일 FTA의 대일본 교역에 대한 시나리오별 영향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4가지 가정 평균치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한국의 대일본 수출증가액				
제1 시나리오	2,441	2,679	2,437	2,718	2,569
제2 시나리오	2,409	2,518	2,404	2,549	2,470
제3 시나리오	2,341	2,430	2,338	2,457	2,392
	한국의 대일본 수입증가액				
제1 시나리오	7,597	7,946	7,596	7,988	7,782
제2 시나리오	6,868	7,002	6,867	6,974	6,928
제3 시나리오	5,642	5,752	5,640	5,722	5,689

제5절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의 FTA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경쟁 강화가 발생함으로써 우리나라 취약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산업에 따라 상당한 구조조정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구조조정의 압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크게는 CGE 모형을 이용해서 추정한 결과 중 하나인 산업별 생산변동률(액)을 사용하는 방법과 수출입변동액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양 방법은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생산변동률(액)을 사용할 경우, 분석이 간단한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으나, 생산변동률 자체가 구조조정 후 최종 결과치라는 점에서 구조조정의 압력을 분리해 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7] 수출변동률을 사용하게

27) 한편, 구조조정 압력을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사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거시계량모형의 경우 실업률을 변수의 하나로 모형에 추가할 수 있으나 완전균형 neoclassical 모형에서는 곤란하다. 차선책으로 변형된 IO 모형에다가 외생변수를 통제함으로써 실업자의 수를 추정하게 된다.

되면 이러한 문제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다. 대일본 관세철폐의 영향은 수입증가로 나타날 것이고, 수입증가액 중 일부는 우리 산업에 중간재로 투입됨으로써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만,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 일부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것이고, 구조조정의 피해는 이러한 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CGE 추정치를 활용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분리해 낼 수 없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선책으로 대일본 수입증가액보다는 대일본 순수입(수입-수출) 변화액을 고용IO모형에 반영시켜 예상 구조조정의 압력을 추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완전 관세철폐(제1 시나리오)시 4만~5만 명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대일 무역수지적자폭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완전경쟁-단기추정 모형에서 가장 많은 수(약 5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규모의 경제-단기추정 모형하에서 실직 근로자의 수(4만 명)가 가장 적어질 전망이다.

중장기의 경우 단기적으로 나타난 충격은 완화되어 약 4만 명의 근로자에게 그 여파가 남게 되는데, 이는 생산증대 효과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났을 때와 유사한 추정치를 보인다.

산업별로는 단기와 중장기의 구분 없이 기계장비산업의 고용악화가 가장 클 전망이며, 3만 명에 가까운 수의 실직 근로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산업에 대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섬유, 의류·피혁산업은 오히려 고용수준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공식품, 기타 제조업에 대한 고용상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특이한 것은 금속산업의 경우 완전경쟁-단기추정 모형에서는 약 1만 6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시간이 지나거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사라지게 되어 더 이상 FTA로 인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남아 있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분은 아마도 해당 산업 자체의 고용탄력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모형 자체의 추정에서 순수입의 변화액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가 없이 중장기적으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아 단기적으로 온 충격이 실직을 발

생시키는 데 전적으로 기인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고용창출이 되는 반대의 성향을 보이는 의류·피혁산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만 고용창출이 발생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 중장기를 적용한 분석 모형의 경우 다수 산업에서 구조조정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피혁, 석유화학, 금속, 기타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되며, 실제로 이들 산업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대등한 경쟁력 혹은 일본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산업들이다.

이제 관세를 인하하는 속도를 조절하여 완전 철폐가 아니라 제조업에 대해 10%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추정해 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제조업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허용할 경우,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은 당연히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제1 시나리오에서와 마찬가지로 70% 이상의 실직 근로자는 기계장비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표 3-17> 한·일 FTA의 산업별 실업자 추정치(제1 시나리오)

(단위 : 명)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가공식품	1	9	4	9
광물자원	4,156	4,367	4,178	4,390
섬유	-1,411	-1,467	-1,396	-1,466
의류·피혁	-6,794	0	0	0
석유화학	6,372	0	0	0
금속	16,370	0	0	0
승용차·부품	1,828	1,855	1,826	1,853
기타수송장비	251	261	251	261
전기·전자	6,470	6,676	6,468	6,667
기계장비	31,052	31,743	30,915	31,651
기타 제조업	-33	0	0	0
전 체	58,263	43,443	42,246	43,366

주 : 표 내용 중 수치는 한·일 FTA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자의 규모이므로, 양의 숫자가 실직자 규모를, 그리고 음의 숫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취업자 규모의 증가를 나타냄.

<표 3-18> 한·일 FTA의 산업별 실업자 추정치(제2 시나리오)

(단위 : 명)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가공식품	-44	-41	-42	-39
광물자원	3,353	3,395	3,372	3,428
섬유	-1,763	-1,793	-1,751	-1,823
의류·피혁	-6,946	0	0	0
석유화학	5,475	0	0	0
금속	14,575	0	0	0
승용차·부품	1,636	1,645	1,634	1,636
기타 수송장비	225	227	225	226
전기·전자	5,873	5,828	5,873	5,776
기계장비	27,909	28,057	27,788	27,797
기타 제조업	-655	0	0	0
전 체	49,637	37,317	37,099	37,001

주 : 표 내용 중 수치는 양의 숫자가 실직자 규모를, 그리고 음의 숫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취업자 규모의 증가를 나타냄.

10% 예외 허용(제2 시나리오)의 경우, 예상 실직근로자의 수가 줄어들고 섬유, 기타 제조업 등에서는 고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경우는 완전 철폐의 경우보다 FTA의 영향으로 인한 순수입의 확대 규모가 작게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충격이 완화되고 전체 합계에 있어서는 약 1만 명 정도의 실직자가 감소하게 되는 모습(완전경쟁-단기의 경우)을 보인다.

여기서는 제2 시나리오에 더하여 기계장비산업에 대한 대폭적인(50%) 예외를 허용할 때(제3 시나리오) 구조조정 압력은 총 합계 2만 4천 ~ 3만 3천 명의 실직근로자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연히 기계장비산업에서의 실직자수는 제1 시나리오하 추정치의 절반 정도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의 충격을 고려할 때 기계장비산업같이 구조조정의 압력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협상에 있어 관세인하 속도를 조절하거나 해당 품목들 중 관세철폐 예외를 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 3-19> 한·일 FTA의 산업별 실업자 추정치(제3 시나리오)

(단위 : 명)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가공식품	-108	-105	-106	-104
광물자원	2,782	2,818	2,794	2,841
섬유	-1,784	-1,808	-1,776	-1,842
의류·피혁	-7,028	0	0	0
석유화학	4,859	0	0	0
금속	12,096	0	0	0
승용차부품	1,586	1,594	1,583	1,584
기타 수송장비	212	213	212	213
전기·전자	5,332	5,300	5,335	5,261
기계장비	15,635	15,757	15,557	15,602
기타 제조업	-1,049	0	0	0
전 체	32,534	23,770	23,597	23,554

주 : 표 내용 중 수치는 양의 숫자가 실직자 규모를, 그리고 음의 숫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취업자 규모의 증가를 나타냄.

다음으로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의 산업별 기준으로 살펴본 것을 직종별과 기술수준별로 분석하기 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원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 산업-직종 비중 메트릭스를 작성하고, 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28] 산업-기술수준 비중 메트릭스를 만든 후, 이 비중 메트릭스를 활용하여 제조업에서 한·일 FTA로 영향받는 근로자의 규모를 직종별과 기술수준별로 재분배한 후 분석을 시도했다.

직종별로 보았을 때 제1 시나리오 완전경쟁-단기의 경우 한·일 FTA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조립종사자(약 1만 명)와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약 1만 명)에 대해 가장 큰 구조조정 압력을 미치는 것으로

28) 2002년 자료부터 기술수준이 아닌 자격증 소지 여부를 묻는 데이터로 설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술수준에 대해 설문한 자료 중 가장 최근 것인 2001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되었다. 그 뒤를 이어 공학 관련 기술 종사자와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에서 약 7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외 직종에서는 5천 명을 넘어서는 규모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거나 중장기로 넘어서면 이러한 실직자의 규모는 축소되지만 충격이 미치는 부문의 순위는 완전경쟁-단기의 경우와 같다. 특이한 점은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의 경우 완전경쟁-단기에서 1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다가 완전경쟁-중장기 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 8천 명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는 데 반해, 조립종사자의 경우는 그 규모가 감소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는 완전경쟁-단기에서 7천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다가 완전경쟁-중장기 또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 4천 명으로 그 규모가 대폭 감소하는 데 반해, 공학 관련 기술 종사자의 경우는 약 6천 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 영향이 차별화되어 나타난다. 제2 시나리오나 제3 시나리오처럼 제조업 중 관세철폐의 예외를 두는 경우 발생 가능한 실직자 규모는 비례적으로 축소되고, 그 추세는 제1 시나리오와 유사하다(표 3-20 참조).

<표 3-21>은 한일 FTA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수준별 실직자 분포를 보여준다. 실직자의 분포는 모든 기술수준에서 골고루 발생하는데 특히 저기술, 미숙련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고기술, 숙련 근로자들의 숫자보다 저기술, 미숙련 근로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천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나 대응방안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다.

구체적으로는 제1 시나리오 완전경쟁-단기의 경우 일반 사무직과 같이 기술과 무관한 근로자들의 실직규모가 약 2만 2천 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자격증이 없는 기능자가 1만 3천 명, 기능사가 약 6천 명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순위는 시나리오를 변화시키거나 규모의 경제나 중장기의 경우를 보더라도 변화하지 않고 단지 그 규모의 수준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표 3-20>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직종별(2004년 기준)

(단위 : 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1,821	1,256	1,221	1,253	1,555	1,080	1,074	1,070
03	일반관리자	657	448	435	448	545	378	377	375
11	과학 전문가	34	5	5	5	29	5	5	5
12	컴퓨터 관련 전문가	112	100	98	100	98	88	88	88
13	공학 전문가	1,594	1,294	1,260	1,291	1,419	1,139	1,131	1,129
14	보건의료 전문가	35	20	20	20	30	17	17	17
15	교육 전문가	-1	2	2	2	-3	2	2	2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125	93	90	93	108	81	80	80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	0	0	0	0	0	0	0
18	문화, 예술 및 방송 관련 전문가	-312	12	12	12	-371	9	9	9
21	과학 관련 기술 종사자	69	47	45	48	55	36	36	36
22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890	894	870	891	788	788	782	781
23	공학 관련 기술 종사자	7,423	6,133	5,963	6,121	6,565	5,347	5,309	5,304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29	29	28	29	26	25	25	25
25	교육 준전문가	1	1	1	1	1	0	0	0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642	339	330	338	552	294	292	291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1	0	0	0	-1	0	0	0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18	15	15	15	16	13	13	13
29	기타 준전문가	1,456	1,056	1,027	1,054	1,245	911	906	903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10,495	7,868	7,652	7,853	8843	6771	6733	6712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181	182	177	181	155	160	158	158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3	5	5	5	3	4	4	4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252	163	158	163	208	132	131	131
43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6	3	3	3	5	2	2	2
44	보안 서비스 종사자	12	10	9	10	10	7	7	8

<표 3-20>의 계속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194	42	40	42	-220	35	35	35
52	통신 판매 종사자	1	0	0	0	-1	0	0	0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	0	0	0	0	0	0	0
61	농업 숙련 종사자	-34	3	3	3	-35	2	2	2
62	임업 숙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63	어업 숙련 종사자	0	0	0	0	0	0	0	0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996	538	515	540	844	424	421	427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496	889	864	888	2,225	778	776	772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2,246	1,594	1,549	1,592	1,955	1,362	1,353	1,352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기능 종사자	948	421	410	420	792	371	368	367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93	-124	-119	-124	-2,733	-168	-164	-171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4,393	1,833	1,775	1,834	3,802	1,545	1,535	1,541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7,430	3,975	3,883	3,965	6,225	3,273	3,267	3,225
83	조립 종사자	10,805	10,381	10,107	10,354	9,695	9,157	9,092	9,074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1,643	932	896	934	1,376	744	740	747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550	335	324	335	459	275	274	274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23	23	22	23	20	20	19	19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3,578	2,198	2,140	2,193	3,010	1,878	1,868	1,859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430	429	411	431	344	333	331	336
전 체		58,262	43,444	42,246	43,365	49,638	37,318	37,099	37,001

<표 3-20>의 계속

		시나리오 3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02	행정 및 경영관리자	1,064	711	703	701
03	일반관리자	367	250	255	254
11	과학 전문가	25	3	3	3
12	컴퓨터 관련 전문가	60	53	52	52
13	공학 전문가	952	716	710	710
14	보건의료 전문가	19	9	10	10
15	교육 전문가	-5	0	1	1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71	48	51	51
17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	0	0	0
18	문화, 예술 및 방송 관련 전문가	-411	-78	4	4
21	과학 관련 기술 종사자	45	31	29	29
22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449	453	456	456
23	공학 관련 기술 종사자	4,393	3,409	3,355	3,357
24	보건의료 준전문가	15	15	15	15
25	교육 준전문가	0	0	0	0
26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398	187	185	184
27	사회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1	0	0	0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9	8	7	7
29	기타 준전문가	829	582	581	580
3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	5,672	4,201	4,295	4,284
3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85	92	95	95
41	대인 서비스 관련 종사자	1	2	2	2
42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	136	92	77	77
43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4	2	2	2
44	보안 서비스 종사자	8	6	6	6
51	도소매 판매 종사자	-246	-57	25	25
52	통신 판매 종사자	-3	0	0	0
5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	0	0	0
61	농업 숙련 종사자	-37	-9	1	1
62	임업 숙련 종사자	0	0	0	0
63	어업 숙련 종사자	0	0	0	0
7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692	343	345	350
72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810	610	609	606
73	기계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1,358	930	864	864
7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531	215	223	223
75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03	-671	-179	-185

<표 3-20>의 계속

		시나리오 3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8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2,952	1,098	1,077	1,083
82	기계 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	4,270	2,570	1,906	1,873
83	조립 종사자	6,160	5,727	5,673	5,670
8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1,085	591	573	579
9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330	194	188	188
9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11	11	11	11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1,956	1,151	1,116	1,110
94	광업, 건설 및 운송 관련 단순 노무 종사자	281	276	273	277
전 체		32,533	23,769	23,599	23,555

주: 표 내용 중 수치는 양의 숫자가 실직자 규모를, 그리고 음의 숫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취업자 규모의 증가를 나타냄.

<표 3-21>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수준별(2001년 기준)

(단위: 명)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기술사	612	334	325	333	516	293	291	291
기사	1,936	1,511	1,468	1,509	1,823	1,303	1,295	1,293
기능장	166	126	122	125	140	110	109	109
산업기사	676	588	571	586	619	511	507	507
기능사	6,590	5,704	5,547	5,693	6,096	4,963	4,926	4,924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소지자	3,275	2,352	2,283	2,349	3,118	2,010	1,997	1,998
자격증 없는 기능자	12,779	8,415	8,191	8,398	10,407	7,225	7,183	7,159
수습 근로자	196	152	148	152	169	131	130	130
단순 및 기타 근로자	9,762	6,487	6,306	6,479	7,707	5,425	5,410	5,375
해당 없음	22,270	17,775	17,284	17,740	19,044	15,347	15,251	15,216
전 체	58,262	43,444	42,246	43,365	49,638	37,318	37,099	37,001

<표 3-21>의 계속

	시나리오 3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기술사	325	171	169	169
기사	1,231	847	840	841
기능장	92	67	67	67
산업기사	404	320	317	317
기능사	4,021	3,125	3,096	3,100
기타 공인면허 자격증 소지	2,076	1,323	1,312	1,315
자격증 없는 기능자	6,920	4,556	4,524	4,510
수습근로자	102	77	76	76
단순 및 기타 근로자	5,310	3,595	3,582	3,558
해당 없음	12,053	9,688	9,615	9,602
전 체	32,533	23,769	23,599	23,555

주: 표 내용 중 수치는 양의 숫자가 실직자 규모를, 그리고 음의 숫자는 그 반대의 경우, 즉 취업자 규모의 증가를 나타냄.

제6절 소 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존 한·일 FTA 연구에서와는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학기(2004), 전국경제인연합회(2004), 정인교(2001b) 등은 산업별 고용악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직종별, 기술수준별, 관세철폐 시나리오별로 구조조정의 압력을 추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기존 연구에서는 한·일 FTA가 우리 경제에 불리할 것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 의하면 한·일 FTA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의 연구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본 연구가 추정한 일본과의 FTA 체결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압력을 보면, 일부 제조업에 있어 한·일 FTA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관세철폐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구조조정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대세계 수출증가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인 고용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만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기계장비산업처럼 특정 산업에 있어서는, 또한 조립종사자나 기계조작원 및 관련 종사자와 같은 단순기술자, 기술이 없거나 기술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에 대해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FTA로 인한 구조조정의 압력이 나타나면서 실직자 규모가 증가하게 되는 점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하다는 논거로 지적된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한계를 지적하자면, 구조조정의 압력을 모형에 내생화하지 않고 CGE 추정 결과를 노동 IO 모형에 반영시켜 발생 가능한 실직 근로자의 수를 추정하였다.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압력을 내생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CGE 모형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하므로 용이한 작업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압력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사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제4장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국의 대응사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의해 국민들 중 일부가, 또는 조직이 손해를 보거나 실패를 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 주거나 이들의 미래에 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FTA와 같이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일부 부문이나 계층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이익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국민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요구된다.[29]

Kruse(1988)는 세 가지 관점에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일반 실직자와 차별화되어야 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첫째, 무역 자유화에 의한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산업은 저숙련 근로자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직종으로의 재취업이 어렵다. 둘째, 특정 산업에 충격이 클 경우 이것은 특정 지역에 또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를 입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무역 자유화 이전에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무역 자유화

29) Jacobson(1991)은 무역 자유화로 인해 부과된 노동조정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당위성과 더불어 지원제도의 부재로 인해 무역 자유화의 추진이 오히려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세계시장에서 미국 회사가 경쟁에서 실패하여 노동자에게 주어진 손실을 감수하기보다 FTA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자들의 손해를 TAA로 보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또한 이 지원제도가 실직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지를 이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지적했다.

가 경쟁을 더욱 격화시키고, 이로 인해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모습과 함께 쇠퇴산업의 사양산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업에서 퇴출된 실직자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특정 기업의 숙련기술의 효용성이 사라질 것이고, 재취업의 기회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FTA와 같은 무역자유화는 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주로 저기술, 저숙련,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역 자유화가 가져오는 수출입 규모의 확대, 소비자 효용의 증대 등의 혜택은 금전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산업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경제에 확산되기 때문에 무역 자유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보상을 해주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로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 내지는 보상을 할 당위성이 존재한다.

제1절 미국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TAA)

1. TAA의 배경과 특성

미국에서 1962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TAA 프로그램은 FTA와 같은 무역 개방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방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사업체, 농수산물 분야의 업주,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창업지원 및 전직, 교육훈련, 소득보전 프로그램이다. 특히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역 개방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이익집단의 압력을 완화하여 개방을 촉진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방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상하고 시장 상황 변동에 대해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0]

30) 그러나 Magee(2003)에 따르면, 관세율이 매우 높은 국가들간의 FTA가 발생

미국의 TAA 프로그램은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이 제정되면서 1962년부터 실시되었고, 1974년 '무역법(Trade Act)'에 의해 자격기준이 완화되고 수혜 범위가 확장되었다.[31] 이때만 해도 이 제도는 소득보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오직 소수 인원만 교육훈련이나 전직지원서비스를 받았다. 따라서 TAA는 의회가 관세인하권의 행정부 위임을 통해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마련된 일종의 무역 구제조치였다. 1974년 개정된 '무역법'에 따르면, TAA는 미국의 시장개방정책 과정에서 수입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거나 노동자가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 정부가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무역확대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인해 매출, 생산 또는 고용 등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실업노동자에게는 실업보험 충당이나 재고용훈련을 시키는 등 고용안정을 위한 재정적·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확대된 TAA의 지출이 계속 증가하는 한편, 실직자가 이전 직장에 복귀하는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장기실직자가 발생하자 이 제도에 대해 1981년에 대규모의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수혜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장기실직자에 초점을 맞춰서 소득보전보다는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1988년에 법을 개정하여 '총체적 무역 및 경쟁에 대한 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으로 이어져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역재조정 급여(TRA: Trade Readjustment Allowance) 수급자는 공인된 훈련과정에 참가해야 하거나 또는 훈련을 받는 것을 TAA 프로그램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규정하였다.

할 경우 TAA는 노동조합의 저항을 낮추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미 무역장벽이 높지 않은 두 국가에서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1962년 '무역확대법'은 의회가 행정부에게 향후 5년간 거의 모든 품목의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통상협상권을 대폭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02년 8월 의회에서 무역법 개정의 일부로 무역증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舊 신속처리권한)을 통과시키면서[32]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개정하였다. 개정된 2002년 TAA는 적용대상과 지원범위가 더욱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지원과 실업재조정급여를 내용으로 한 기존의 TAA 지원 이외에도 노동자, 농민, 상업 어민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었고, 피해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거나, 전직중인 노동자, 그리고 2차적 실업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의 65%를 환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재조정급여 제공, 교육훈련 마련, 전직비용 지급, 낙후지역 지원 등 기존의 TAA 제도보다 훨씬 확대된 지원내용이 추가되었다. 실업보험의 경우 지급기한 제한이 철폐되었으며,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2년 동안 1만 달러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부업(side job)으로 인해 의료보험료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도 실업보험 이외에 TAA 혜택을 받도록 했다.

2002년도 TAA제도의 개혁은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 의회, 업계 등 많은 이해집단간 의견조율을 상대적으로 쉽게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결국 TAA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해집단들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자유무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김홍률, 2003).

2. TAA의 종류와 내용 및 절차

미국의 경우 무역에 관련된 제도 변화에 의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근로자, 중소기업, 그리고 산업에 대한 무역피해구제제도로 TAA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

32) TAA는 당초 1998년 9월 30일에 종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02년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07년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표 4-1>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의 변천 단계

	주요 특징	비 고
1962년 무역확대법 (Trade Expansion Act)	-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이 제정 - 무역 자유화로 인한 실업자에게 생계유지비, 훈련, 전근수당을 지급	수입경쟁이 아니라 자유무역으로 인한 실업만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극소수의 청원자만 수혜를 받을 수 있었음.
1974년 무역법 (Trade Act)	- 적합성 분류가 용이하게 개정되었고 지원 수단이 다양해졌음. - 이 프로그램에 적합한 실업자는 전 임금의 70%까지 52주 동안 실업보험에서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며, 또한 구직활동에 도움을 받았음.	많은 수의 청원자가 TAA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1981년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 1983년에 이 프로그램을 종결시킬 것을 결정 - 실업보험수당을 감축하고 실업보험수당의 소진 후에 지급하는 것을 규정	강한 규제로 인하여 청원서 수도 줄고 자격을 부여받은 비율도 감소하였음.
1980년 Amendments to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Act (Public Law 98-120)	- 1985년까지 그 프로그램을 연장	
1984년 Deficit Reduction Act	- 훈련수당 이용률과 구직지원, 전근수당이 증가	
1985년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 1991년까지 소멸하기로 한 TAA 프로그램의 시효를 재위임 - 모든 노동자들이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1988년 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 1993년까지 프로그램 시효가 연장되었고 주유와 가스산업도 포함 - 해당되는 모든 노동자들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TRA 수당과의 연계 강화	확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입품에 대하여 세금부과를 조건으로 공급업체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음. 그러나 그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았음.

<표 4-1> 의 계속

	주요 특징	비 고
1993년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Implementation Act 1999년 Public Law	- 1998년까지 프로그램 시효를 연장 - 2001년까지 프로그램 시효를 연장	기타 시효 연장에 대한 국회 승인은 생략
2002년 Trade Act	- NAFTA Implementation Act를 TAA 프로그램에 포함 - 심사기간의 단축(60일 → 40일) - 104주의 최대 훈련기간에서 학력보충(remedial) 교육을 위한 26주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130주까지 가능 - 의료보험 비용에 대해 65%의 세액공제 - 2007년까지 프로그램 시효를 연장	

노동자를 위한 TAA는 무역제도가 변경될 때 실직하거나 또는 임금이 삭감되거나 근로시간이 감축되는(이와 연관되어 소득이 감소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제도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는 값싼 수입품의 증가로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장에 채용될 수 있도록 2년에 걸쳐 재훈련, 직업안정서비스, 이주지원, 소득보조 및 전직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피해구제제도인 TAA for Firms 프로그램은 상무성(Department of Commerce)에서 담당하는 연방프로그램으로 저가격 수입품이 유입되었을 경우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에 대해 새로운 상품 개발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비용, 연구개발비용, 종업원 훈련비용 등 각종 기술적 지

원이나 지급보증, 직접대부, 조세감면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33]

---

33) 현재 TAA는 무역 자유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지원의 경우 미 상무부의 경제발전청(EDA: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실직자 지원의 경우에는 미 노동부의 취업교육청(ET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이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지원자격 심사는 상무부 경제발전청(EDA)이 담당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된 12개의 '무역조정지원센터(TAAC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Centers)',(1978년 신설)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각각의 TAAC는 경제발전청(EDA)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운영되며 각각 관할 서비스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TAAC는 비영리 및 비정부기구로, 매년 정부로부터 출자금(appropriation)을 받으며, 각각의 TAAC에 지급되는 출자금은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 정도 및 과거 운영 성과 등을 근거로 책정된다. 그리고 TAAC는 광범위한 경영지식 및 실무경험을 보유한 평균 5명의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 TAAC의 기본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첫째, TAA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기업들을 확인하고, 둘째, 기업들이 지원자격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며, 셋째, 해당 기업들의 경영성과 회복을 위한 조정전략계획서(AP: adjustment proposal)를 작성하고, 넷째, 조정전략의 수행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는 보통 민간 컨설턴트와의 계약을 통해 수행된다.
기업이 TAA 지원자격을 얻기 위한 증명서류는 TAAC 전문가에 의해 준비되어 상무부 EDA 본부에 전달된다. 이때 기업은 증명과정과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일단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기업은 자사의 경쟁력 실태를 파악하고 악화된 경영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정전략계획서(AP)를 작성하는데, 이때 TAAC의 전문가(Project Manager)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정전략계획서(AP)는 해당 기업의 강점과 약점 등을 분석하고 수입증가로 인해 악화된 경영상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정전략계획서(AP)는 기업의 마케팅 및 판매전략, 정보전달체계 및 품질통제과정 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포함하므로 해당 분야 및 제품 특유의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들을 요하는바, TAAC는 보다 구체적이고 복잡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들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지원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TAA 지원자격이 EDA로부터 인정되고 모든 서류가 통과되면 TAAC는 기업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EDA 방침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TAAC의 지원은 소요비용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15만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 기술지원 총예산이 3만 달러 이하인 소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TAAC가 75%까지 지원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리고 지원받은 기업은 일정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산업에 대한 무역피해구제제도로는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담당하고 있는 농업을 위한 TAA for Farmer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무역 자유화로 손실을 보는 농민들에 대해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 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을 제공한다(표 4-2 참조).

본 연구에서는 실직자에 대한 TAA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업이나 농업부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제 노동자를 위한 TAA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미국의 경우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우선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에 의해 보호를 받는 한편, 고용서비스(ES: Employment Service)를 통해 직업알선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그러한 노력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 전직지원부서(EDWAA: Economic Dislocation and Worker Adjustment Assistance)에서 재교육 및 훈련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취업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EDWAA의 교육훈련은 6개월 이하의 단기 프로그램이며 훈련을 받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소득보조도 제한적이다. 교육훈련에 대한 또 다른 제도인 직업훈련참가법(JTPA: Job Training Partnership Act)은 공장폐쇄나 노령은퇴, 기술부족으로 인한 해고 등 실직자에 대한 구직과 훈련지원에 대한 제도로 TAA의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다(Ramrattan & Szenberg, 2002a).[34]

EDA(1998)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조정지원센터(TAAC)의 기술지원서비스가 수입증가에 의해 타격을 받은 제조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되고있다. 동 보고서는 TAAC의 지원을 받은 기업과 TAAC의 지원수혜자격은 있으나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고용 및 매출 수준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지원승인 후 5년 동안 TAAC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비율로 생존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의 생존율은 70.7%인 데 비해 지원받은 기업들의 생존율은 83.8%였다. 또한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은 평균 5.3%의 고용감소를 보였으나, 지원받은 기업들은 평균 4.2%의 고용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외에도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은 16.2%의 매출증가율을 보인 반면, 지원받은 기업들은 33.9%의 매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김홍률, 2003).

34) 현재 일부 주에서는 TAA 외에도 대체TAA(ATAA: Alternative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제도는 TAA에 해당하는 고령의 실직자에 대해 재훈련이 적절하지 못하지만 임금이 낮은 직종에

<표 4-2> 미국 무역조정지원(TAA)제도

	기업 TAA	노동자 TAA	농민 TAA
시행 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및 2002년 개정	좌동	2002년 무역법
목적	FTA 등 무역 자유화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제주체를 지원		
	무역 자유화로 매출, 생산 및 고용이 감소한 기업 지원	무역 자유화로 인한 수입증가 및 생산기지 이전으로 실직한 노동자 지원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물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 지원
담당 기관	상무부 경제발전청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노동부 고용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농림부 외국농산물서비스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지원 대상	기업	노동자	농어민
지원 형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의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동부담	직업훈련, 소득지원, 구직 및 이사비용, 건강보험료 세금공제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 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운영 성과	기술지원: 기업경쟁력 상승	소득지원: 성과 불분명	2003년부터 실시로 성과는 아직 불분명함

자료: 임혜준 · 박혜리(2005).

만약 무역개방화에 의해 실직을 한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는 위의 서비스 외에 TAA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UI 급여에 대한 연장지급으로 무역재조정급여(TRAs: Trade Readjustment Allowances)를 지급하고 훈련을 포함한 재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1970년대의 TAA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따르면,

---

의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 전 직장과의 임금격차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임금보조금 형태의 지원제도이다. 미네소타 주 같은 경우 이 제도를 2003년 8월 이후에 적용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주의 경우 그 자격조건으로 50세 이상의 TAA 지원자격이 있는 실직자로 실직 전에 26주 이상 상시직으로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재취업된 직장의 고용형태가 상시직이며 5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넘어서지 않으며, TAA 훈련프로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대 ATAA 수급은 연 1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며 보조금 수준은 전 직장과 재취업된 직장의 임금격차의 50% 수준이다.

70% 이상의 TAA 수혜자는 이전 직장에 다시 복귀함으로써 실업을 마감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이러한 추세는 사라졌다. 이에 따라 TAA 프로그램은 무역 개방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실직자의 소득보전에서 그 피해로 인한 장기실직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환되었다(P. Decker and W. Corson, 1995).

무역개방화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구체적으로 기업의 생산이나 고용이 감소되어 실업에 직면한 근로자)들은 회사나 공장 단위의 그룹으로 미국 노동부(USDOL: U.S. Department of Labor)에 청원(petition)하는 것으로 TAA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노동부에서 이들의 실업이 무역개방화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정하면, 그들은 개인적으로 TRA 수급과 재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공인(certified)을 받게 된다. 이 공인된 증명서는 해당 기업과 공장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해고된 경우 재취업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며,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TRA를 수급할 수 있다. ① 실직하기 전 그 직장에서 한 해 동안 26주 이상 일했는데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임금 또는 노동시간이 80% 이상 줄어든 노동자, ② TAA의 자격을 가진 상황에서 UI 수급기간이 소진된 노동자, ③ 지정된 공인 훈련과정을 이행했음에도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1988년 11월 이후 기준).

이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역개방화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는 UI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나 공장이 TAA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그룹으로 공인을 받는 청원 절차가 진행되고(이때 지원신청은 최소 3명 이상의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자그룹, 노동조합, 기업 내 직원, 기타 공식적으로 인정된 대표 등이 할 수 있음), 해당 근로자는 TAA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여부에 대해 연락(notification)을 받게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각 주의 명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고용서비스센터(One-Stop Career Center) TAA 분과에 전달되는데, TAA 분과는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첫째, 노동자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실업상태인지의 여부, 둘째, 기업의 생산이나 판매량이 감소하였는지 여부, 셋째, 수입증가가 노동자의 실업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는지 여부 등이다. 만약 자격이

있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는 TRA를 수급받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자격조건이 충족될 경우 UI 수급이 소진된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는 TRA 수급을 시작하게 된다. 해당 노동자는 해고가 발생한 16주 내 또는 공인이 이루어진 후 8주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TRA 수급은 금액면에서는 UI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26주의 수급기간 제한을 가지고 있는 UI에[35] 더하여 기본적으로 26주가 추가되므로 총 52주의 기간 동안 수급이 가능하다. 장기실업에 빠진 경우 추가적으로 TAA가 제시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다시 52주의 TRA 수급이 연장된다.[36] 훈련을 받게 되는 시점은 UI가 소진되기 전이나 TRA를 받게 된 직후 모두 가능하다. 현실적으로는 공인(certification)을 언제 받느냐에 따라, 제공되는 훈련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해당 근로자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결정된다. 적합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거주지역 외의 원거리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이 될 경우 이주비용(relocation allowance) 또한 지급한다. 이러한 과정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소속 고용 및 훈련청(ETA: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행주체는 각 주의 고용서비스센터(최근에 One-Stop Career Center로 호칭됨)이다(P. Decker and W. Corson, 1995; Corson et al., 1993; L. Marcal, 2001; 김동률, 2003, www.doleta.gov).

1988년에 제정된 '총체적 무역 및 경쟁에 관한 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은 훈련프로그램에 면제받은 기권자들도 TRA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기권자들은 적합한 훈련이 없기 때문에 훈련과정을 포기한 사람들이다. 이에 해당되는 근로자로는 ① 기술이 뛰어난 근로자의 경우, ② 기술습득 훈련이 너무 비싸거나 유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③ 훈련기간이 TRA 수급기간을 넘어설 경우이다. 현실적으로 기권자들은 실업보험수당을 소진한 사람들이고 재활프로그램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Corson et al., 1993). 그러나 미국 노동부 감사팀(OIG)은

35) 불황기에는 연방정부에서 이 수급기간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36) 학력 보충 교육을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26주를 연장하여 총 130주의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원조프로그램 승인과정
(Trade Adjustment Assistance(TAA) Application Process)

1) 무역자유화의 영향에 의해 공장이 문을 닫거나, 실직가능성이 있는 노동자들로 무역자유화로 피해를 입은 주요 생산품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2) 노동자들은 지역 원스톱커리어센터(One-Stop Career Center)를 통해서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받을 수 있다.
3) 3명 이상의 노동자, 회사 직원, 조합 또는 다른 법적 대리인, 또는 One-Stop operators 파트너(주 고용안정센터와 실직자조합도 포함)가 미국 노동부 내의 무역조정원조부서(the U.S. Department of Labor's Division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DTAA))와 공장이 위치한 주 내의 무역원조 조정자나 실직자조합(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Coordinator or Dislocated Worker Unit)에 청원서를 제출한다.
4) DTAA에서 청원서를 심사하고, 그 조사 기간은 40일 이내여야 한다. 심사에 있어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노동자의 회사는 제조업 회사이다.
   - 노동력의 최소한 인원(50명 이내의 공장은 3명, 50명 이상의 공장은 노동자의 5%)이 청원 날짜의 12개월 전에 해고되거나, 해고의 위협을 받았다.
   - 다음과 같은 것 중의 하나
     · 수입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판매나 생산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실직이나 실직의 위협에 기여하였다.
     · 생산라인이 미국 외의 어떤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 유사한 제품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 TAA 프로그램에 의해 공인된 회사에 부품공급, 최후 조립과정 혹은 완제품 거래를 하는 회사에 속한 노동자로 판매나 생산의 실질적 감소를 경험하거나 실직이나 실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5) DTAA는 TAA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청원자나 회사 관리직에게 통보한다.

- 공인된 노동자들은 개인적으로 One-Stop Career Centers를 통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공인이 거부된 노동자들은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6) 노동자들은 공인된 후 8주 훈련, 또는 TRA를 수혜받기 위하여 일시적 실직 후 16주 훈련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훈련을 포기한 자는 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93년 프로그램을 감사한 후에 기권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OIG는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표본 중에서 71% 이상이 기권자인 것을 발견하였고, 훈련 기권이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1988년 강령이 목적한 어떠한 변화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Mathematica 연구소에서는 이 강령으로 인하여 훈련프로그램 참여가 증가하고, 1988년 변경 후에 TRA 지급기간이 줄어들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훈련 참여 비율은 1988년 37%에서 1989년 47%로 증가했고, 평균적으로 TRA 수당 지급기간은 1988년 18주에서 1989년 15주로 감소했다(Marcal, 2001).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는 기존에 받던 임금의 70% 수준까지, 그리고 정규실업급여와 합한 경우에는 제조업 평균임금의 100% 수준까지 무역재조정급여(trade readjustment allowance)를 제공한다. 재조정급여 지급기간은 최초에는 52주까지인데, 노동부 장관이 승인한 재훈련프로그램에 등록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26주를 추가하여 최대 78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실업노동자는 재교육센터에서 최장 104주 동안 기술습득, 기초교육, 외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고, 구직 및 전직 과정에서 다른 영역의 직업으로 전직하였을 경우 구직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9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김홍률, 2003).

TAA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재훈련 경비를 지급한다. 직업훈련을 받는 비용의 한도는 1인당 5천 달러이고 실업보험을 포함한 모든 경비의 한도는 1인당 1만 6백 달러이다. TAA 프로그램에 의한 재훈련 기간은 평균적으로 1년이고, 그 중에 1/3의 인원이 6개월 이내에 훈련을 끝마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직업훈련자들의 대다수는 사교육기관이나 지역 대학을 통하여 직업기술훈련을 받고, 펜실베이니아의 고용서비스센터 직원들에 따르면 TAA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는 근로자들은 평균 한 과목, 그리고 주당 30시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 발표한다(Corson et al., 1992).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80%는 새 직업, 즉 고소득 직업을 위해 훈련에 참여했고, 이들은 전형적으로 회계사, 서비스 매니저, 간호사, 건강관리자, 엔지니어 기술자, 컴퓨터 오퍼레이터, 프로그래머, 비서, 설비공 그리고 전기장치 수리공 같은 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Leah E. Marcal, 2001).

3. TAA의 성과·평가 및 시사점

<표 4-3>은 1980~99년 기간 동안 나타난 TAA 청원 규모와 공인 및 기각 규모 그리고 그 비율 등을 기업과 근로자별로 기록한 것이다.[37] 이 통계의 특징은 다양한 무역자유화 전·후 기간 동안 공인된 청원과 종업원들의 연간 백분율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인데 NAFTA 전후의 청원이 공인된 백분율은 대략 6%이고, U.S.-Canada-FTA 기간 동안은 5%, U.S.-Israel-FTA 기간 동안은 6~7%로 나타났다. 종업원의 연간 청원 공인 백분율 또한 유사한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역자유화 전후 기간 동안의 기각 백분률로 나타나는데, 같은 기간 동안 NAFTA는 청원과 종업원 모두에서 기각 백분율이 7%에서 2%로 감소했다(Ramrattan & Szenberg, 2002).

NAFTA로 피해를 입은 TRA 수혜자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 영향이 수출입과 관련된 산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의류, 가죽, 고무, 금속, 기계, 교통설비 등 제조업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을 제외한 산업의 경우 석유화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38] 둘째, 일반 실직자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실직자들의 평균임금보다

37) 1982~90년 사이에 매년 약 3만 명의 근로자가 TAA로부터 지원을 받았다(P. Decker and W. Corson, 1995).

38) 일반 실직자들의 비중은 비제조업 부문이 더 큰 상황에서 무역자유화의 피해로 인한 실직자의 경우만 제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각 지역의 원스톱커리어센터에서 제공하는 무역조정지원프로그램
(TAA Services at Local One-Stop Career Centers)

TAA 프로그램에 공인된 근로자 그룹에 속하는 실직자는 개인의 자격요건에 따라 다음 사항에서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1) 재취업 서비스(Reemployment Services)
   - 구직등록(Employment Registration)
   - 취업상담(Employment Counseling)
   - 사례평가(Case Assessment)
   - 경력개발(Job Development)
   - 보조서비스(Supportive Services)
   - 직접 구직서비스(Self-Directed Job Search Services)
2)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s): 외부 지역 구직시 비용 지원
3) 이주 지원(Relocation Allowances): 외부 지역에 재취업될 경우 드는 비용 지원
4) **무역재조정급여(Trade Readjustment Allowances (TRA)**: 자격 조건이 구비되어 풀타임 훈련을 받는 실직자에게 최대 104주 동안 현금을 지급하여 소득 보전을 지원
5) 교통과 생계유지비(Transportation and Subsistence Allowances): 외부 지역의 훈련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 지원
6) 건강보험 세액공제(Health Coverage Tax Credit): 공인된 훈련 참여자들에게 한 달 건강보험료의 65%까지 세액공제 지원
7) 훈련서비스(Training Services):
   - 재실훈련(Classroom training)
   - 현장훈련(On-the-job training)
   - 사용자 제공훈련(Employer-based training)
   - 학력 보충교육(Basic or remedial education-교양 훈련과 제2외국어로 영어훈련 포함)

<표 4-3> Petition and Employment Experience for Various Free Trade Hypotheses Sample Period(1980~99년)

	Petitions				Employees			
Various Years	Total Certified	Total Denied	Annual % Certified	Annual % Denied	Total Certified	Total Denied	Annual % Certified	Annual % Denied
80~99	574	269			56,076	18,005		
Data for NAFTA Comparison								
80~93	411	242	5.51	6.92	38,615	16,576	5.30	7.08
94~99	163	27	5.68	2.01	17,461	1,429	6.23	1.59
Data for USISFTA Comparison								
80~86	247	156	7.17	9.67	17,854	13,563	5.31	12.55
87~99	327	113	4.75	3.50	38,222	4,442	5.68	2.06
Data for USCAFTA Comparison								
80~84	111	139	4.83	12.92	9,600	11,718	4.28	16.27
85~99	463	130	5.76	3.45	46,476	6,287	5.92	2.49

자료 : Estimated by the Authors from Data Provided by the Offic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U.S. Department of Labor. Lall B. Ramrattan, Michael Szenberg(2002)에서 재인용.

TRA 수혜자들의 평균임금 수준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TRA를 받는 실직자들은 해고되기 전 부가급부(fringe benefit) 수준, 근속기간, 노동조합 조직률 등이 일반 실직자들보다 모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의 평균임금이 전체 산업의 임금 수준보다 높은 것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기업들이 고용조정을 실시할 때 고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조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40, 50대의 높은 호봉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70% 이상의 TRA 수혜자들은 공장폐쇄나 기업이전 등에 의해 실직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전 직장으로 다시 취업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P. Decker and W. Corson, 1995). 따라서 이들에 대한 고용서비스는 같은 종류의 직업을 찾는 것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988년 법안 수정 전 약 37%의 TRA 수혜자가 TAA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비중은 1988년 법개정 이후 47%로 급증했고, 대부분의 TRA 수혜자는 ES로부터 어떤 종류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

에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혜자들보다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TRA 수혜자들이 타지역으로의 구직 시도를 하거나 이주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Corson et. al(1993)의 연구에 의하면, TAA 훈련 참가자들은 새로운 직업의 특정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훈련은 장기(1년 이상)였고 직업훈련센터(vocational training center)나 지역사회 대학(local community college)에서 이루어졌다. 1988년 이전에는 약 절반이 훈련에 참가하기 이전에 TRA를 받고 있었으며, 1988년 개정 이후에는 60% 이상이 TRA를 이미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훈련 참가자 중에서 72%(1988년 이전)가, 그리고 67%(1988년 이후)가 훈련을 완료했고, 이들은 대부분 훈련과정이 구직에 도움을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증가된 훈련의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1988년 이전에는 평균 18.4주였던 TRA 수급이 1988년 이후에는 15.3주로 단축되었다.[39]

제조업 분야에서 실직한 UI 수급자와 TRA 수급자를 비교할 때 1988년의 개정 전 TRA 수급자의 평균 실직기간은 74주의 중위수(median)를 보였는데, UI 수급자는 42주의 중위수를 기록했고, 개정 후에는 TRA 수급자는 55주의 중위수, UI 수급자는 39주의 중위수를 기록했다. 특히 TRA 수급자 중에는 특별히 긴 실직기간을 가진 개인들이 존재하는데, 1988년 이전 32%였던 장기실직자(2년 이상 실직)의 비중이 1988년 이후에는 27%로 나타난 데 반해, UI 수급자의 경우 23%만이 2년 이상의 실직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 Decker and W. Corson, 1995). 그러나 이러한 성향은 TRA 수급자들이 장기 훈련을 받는 데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되며 UI 수급자들의 개인적인 고용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TRA 수급자들 또한 일반 UI 수급자들보다 긴 실직기간을 갖는 것을 보면, 해당 산업에서의 쇠퇴의 영향이 일반 실직자들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훈

39) 그러나 TAA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장기간의 소득보전과 교육훈련프로그램이 제공됨으로써 오히려 일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동기(work disincentive)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표 4-4> Pre-Layoff Job and Job Separation Characteristics of TRA Recipients, UI Exhaustees, and Other Samples of Unemployed Persons

(단위 : %)

	TRA Recipients		UI Exhaustees in Manufacturing		Displaced Workers	
Independent Variable	Pre-88 Sample	Post-88 Sample	Pre-88 Sample	Post-88 Sample	1988 Survey	1990 Survey
Pre-Layoff Job Characteristics						
Weekly Wage						
Less than $200	6.4	7.1	10.9	16.7	21.8	18.7
$200 to $399	36.1	38.4	48.1	47.3	32.7	33.5
$400 to $599	40.3	30.6	26.2	24.0	27.5	25.7
$600 to $799	13.3	15.9	11.5	7.3	9.8	12.5
$800 or more	3.9	8.1	3.3	4.7	8.5	9.6
Mean weekly wage (in dollars;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448 (246)	458 (229)	394 (198)	372 (213)	408 (270)	435 (290)
Fringe Benefits						
Paid vacation	95.4	93.5	78.0	70.7	NA	NA
Paid holiday	96.3	94.8	83.6	77.9	NA	NA
Paid sick leave	53.6	57.1	45.6	40.6	NA	NA
Health insurance	93.4	93.4	74.9	70.6	75.1	72.5
Pension plan	85.5	78.8	53.7	47.8	NA	NA
Tenure						
Less than 1 year	2.4	3.5	11.1	19.5	b	b
1 to 3 years	10.1	7.0	23.8	27.3	b	b
3 to 5 years	9.9	6.6	13.9	10.9	31.4	31.7
5 to 10 years	18.4	28.6	15.1	17.6	34.3	33.1
10 years or more	59.3	54.2	36.0	24.7	34.3	35.3
Mean tenure (years; standard deviation in parentheses)	14.6 (10.4)	12.2 (8.4)	9.0 (9.1)	7.0 (8.1)	NA (NA)	NA (NA)
Union Status						
Union	72.7	65.5	37.2	29.9	16.2	15.9
Nonunion	27.3	34.5	62.8	70.1	83.8	84.1
Reasons for Job Displacement						
Reason That Job Ended						
Laid off	97.2	97.4	85.4	80.6	NA	NA
Other	2.8	2.6	14.6	19.4	NA	NA
Reason for Layoff						
Plant/company closed	72.0	72.1	36.3	26.6	54.1	55.7
Position or shift elim	6.6	5.1	7.2	11.3	14.4	16.2
Slack work	19.3	22.6	53.1	57.5	25.5	21.9
Other	2.1	0.2	3.3	4.6	6.0	6.3
Expected Recall?						
Yes	26.4	18.3	40.0	45.1	NA	NA
No	73.6	81.7	60.0	54.9	NA	NA
Sample Size	1,085	801	572	602	3,215	268

자료 : P. Decker and W. Corson(1995)에서 재인용.

련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제하는 1988년의 개정 이후의 고용이 더 촉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UI 수급자의 실직기간도 같이 짧아지는 것으로 볼 때 경기 변동의 영향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연구에서 P. Decker and W. Corson(1995)은 수급이 발생한 이후 3년 동안 각 분기마다의 소득을 비교해 본 결과, 일관되게 TRA 수급자의 소득이 UI 수급자의 소득보다 낮은 것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들의 소득을 비교한 결과 또한 TRA 수급자들의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은 UI 수급자들이 실직하기 전 직장의 임금과 이후의 임금을 비교했을 때 약 8% 정도의 임금 감소가 발생한 반면, TRA 수급자의 경우 약 20% 수준의 임금 감소가 나타나는 데 있다. 약 40%의 UI 수급자가 재취업 후에 이전 직장에서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데 비해 TRA 수급자는 25%만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었다. 또한 TRA 수급자 중에는 매우 심각한 임금 삭감(전 임금의 절반 수준)을 경험하는 비중이 20%로 UI 수급자의 12~13%를 넘어서고 있다.[40]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TRA 수급자들은 이전 임금수준에 도달하는 재취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본인이 속했던 산업 또는 담당하고 있던 직무의 복귀가 일반적인 실직자들보다 더 어렵기 때문임을 드러낸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의해 그 산업이나 기업 자체가 피해를 입고 이 때문에 실직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실업급여의 지급으로는 취업이나 임금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의 직업훈련과 소득보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Marcal(2001)에 따르면, TAA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훈련을 받는 대신 고용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곳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고용서비스를 받았다고 할 때 획득하는 예상소득의 수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을 고려할 경우 훈련 참가자들은 보다 안정된 고용을 보장하는 직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40) 일반적으로 해고로 인해 실직된 근로자들의 경우 5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전 임금보다 15% 가량 낮은 임금수준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Topel, 1993; 1990).

한편 TRA 수급자가 받은 훈련이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서 그들의 실업기간을 짧게 해 준다든가 혹은 임금수준을 향상시켜 준다든지 하는 효과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훈련에 참여하는 TRA 수급자들의 경우 개인적인 특성이 이들의 고용가능성이나 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무역자유화에 의해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한 부문에서 발생한 실직자들의 경우 심각한 소득 손실과 장기실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41] 한편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업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거나 TRA 수급자지만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실직자들보다 소득 감소의 폭을 완화시켜 준다든가, 고용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든가 하는 특성은 나타났으나, 대부분 장기적인 효과였으므로 이에 대한 단기적인 비교는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보다 많은 TRA 수급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필요는 있으나, 이들에게 수급의 조건으로 강제성을 띤 훈련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발적인 훈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P. Decker and W. Corson(1995)은 권고한다.[42] 이들은 또한 훈련 이외의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만약 실직자들에 대해 빠른 기간 내에 재취업을 시킬 목적을 가진다면 일을 하지 않고 훈련에 참여해야 TRA 수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 일을 하지 않을 동기(work disincentive)를 확대하기보다는 고용서비스의 참여를 필수항목으로 포함시켜 이들이 일정 기간 소득보조를 받으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을 촉진시키는 것이 오히려 단기적인 제도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업보험 기간 연장으로 인해 TAA는 다소 큰 손실이 있을 실직자들에게 유익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UI와 TAA가 실업으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는 데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직을 할 경우 재고용된 직장에서의 임금이 전보다 감소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효과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TAA가 실직자의 영구적인 손실을 제거

41) 직업훈련이 제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가능성이나 소득보전의 향상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42) 자발적인 훈련참여일지라도 경제상황에 따라 많은 비중의 TRA 수급자가 참여한다는 것이 실증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표 4-5> Comparison of Weekly Wages in Pre-Layoff Jobs and in Jobs Held Three Years After the Initial UI Claim

(단위 : %)

	Pre-88 Sample		Post-88 Sample	
Ratio of Post-Layoff Weekly Wage to Pre-Layoff Weekly Wage	TRA Recipients	UI Exhaustees	TRA Recipients	UI Exhaustees
All Reemployed (percent)	19.2	11.3	20.1	13.3
0-.50	26.6	17.3	27.8	18.3
.60-.75	30.3	34.7	27.2	28.7
.75-1.00	24.0	36.7	24.9	39.6
1.00 or more (no loss)	0.78	0.92	0.76	0.92
Median Ratio	621	324	478	304
Sample Size				

자료 : TAA Evaluation Survey.

하는 데 과연 효과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명확히 대답을 할 수 없다.

펜실베이니아 실업보험에 보고된 45만 개의 회사와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TAA에 의한 소득보조가 무역자유화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전년도 소득의 30% 이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간 약 19%의 손실을 7%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TAA 프로그램은 실직자가 상실한 소득의 약 60% 가량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L. Jacobson, 1991).[43]

Jacobson(1991)에 따르면, TAA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G.I. bill의 경우 재고용이 이루어졌던 이유는 장기의 풀타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해당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며 이 사례는 교육훈련이 재고용에 있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ES를 통하여 직업을 구하는 실직자들이 비사용자보다 9주 빨리 재고용되는 실증분석을 통해 직업훈련과 함께 적극적인 구직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면 매우 효과적인 재고용프로그램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무

43) 그러나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해 TAA의 효과를 평가할 경우 특정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산업 특성에 따른 효과가 전체 효과와 같이 과장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자유화의 영향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 또는 구조조정에서 밀려나 실직하게 된 경우 이들을 재고용시키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구직서비스가 장기적인 비용투입이 필요한 직업훈련에 비해 투입예산을 기준으로 효과적인 수단으로 나타났다.

Ramrattan & Szenberg(2002b)에서는 TAA가 무역자유화로 어려움에 빠진 산업과 실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PE(Partial Equilibrium) 모형과 CGE)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해 본 결과, 실직자들의 압박을 완화하고 다른 직업을 찾거나 은퇴하는 데 있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의류산업은 노동집약적이고 저성장산업인 동시에 저숙련 근로자들이 많은 보호산업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경기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은 의류부문의 소비를 민감하게 변화시키므로 경기변화에 민감할 뿐 아니라 전세계의 경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환율변화 또한 국내 소비에 큰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따라서 이 산업은 무역자유화에 의해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산업에 속하던 근로자 중에서 TAA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규모도 상당하다. 1980~98년의 기간 동안 미국 섬유산업에서 발생한 무역자유화로 인한 실직자의 총비용은 <표 4-6>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TAA 수급을 요청했던 실직자(요청이 받아들여진 실직자 + 기각된 실직자) 규모, 재취업하기까지의 실직기간, 전 직장에서 실직하지 않았을 경우 은퇴할 때까지의 잠정적인 소득 등을 모두 고려할 때 TAA가 기각된 실직자에게는 은퇴까지의 잠정적인 소득이 총비용으로, TAA가 허용된 실직자는 평균 실직기간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분이 총비용으로 계산되었고, 그 합이 이들 무역자유화로 인해 발생한 실직자의 총비용으로 추정된다. 한편 TAA로 인해 의류산업에 발생한 실직자들에 대한 총혜택은 TAA를 받은 실직자들 중 영구 실직이 되는 경우는 TAA의 수급액을, 그리고 재취업이 되는 경우에는 실직기간 동안의 TAA 수급액과 재취업 이후부터 은퇴시점까지의 평균소득을 합하여 추정했다.

<표 4-6> Petition and Employment Experience in the Garment Industry Sample Period(1980~99년)

	Petitions				Employees			
Various Years	Total Certified	Total Denied	Annual % Certified	Annual % Denied	Total Certified	Total Denied	Annual % Certified	Annual % Denied
1980~99	3,791	1,783			355,471	110,076		
Data for NAFTA Comparison								
1980~93	2,034	1,633	4.13%	7.04%	168,072	100,040	3.64%	6.99%
1994~99	1,757	150	9.27%	1.68%	187,419	10,036	10.54%	1.82%
Data for USISFTA Comparison								
1980~86	955	1,200	4.20%	11.22%	53,839	72,770	2.52%	11.02%
1987~99	2,836	583	6.23%	2.72%	301,652	37,306	42.43%	16.94%
Data for USCAFTA Comparison								
1980~84	577	925	3.81%	12.97%	35,565	62,556	2.50%	14.21%
1985~99	3,214	858	21.19%	12.03%	319,926	47,520	6.42%	3.08%

자료 : Estimated by the Authors from Data Provided by the Office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러한 결과를 볼 때 TAA가 의류산업에서 거둔 편익비율(benefits-to-cost ratio)은 67%로, 이 기간 동안 무역자유화로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피해 중 약 67%는 TAA에 의해 보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TAA는 행정부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협상수단이 되었고, 의회로서는 자유무역 확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을 지킴으로써 자국 산업과 노동자들로부터 모두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TAA 같은 제도는, 향후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주의적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장개방정책은 많은 국내 이해집단들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산업기반 약화와 실업 증대 등 시장개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이 운영하는 TAA가 무역확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를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TAA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표 4-7> Estimate of Loss Due to Import Impact(1980~98년)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Displaced Workers	Total Certified TAA	Total Denied TAA	Wage Rate	Average Weakly Hours	Annual Income (3*4)*52	Weeks Not Hired	Percent Perm Unemp	Years To Retire	(2*7) #Perm. Displaced	(5*8*9)/1 M Inc Loss to Retire	2* (88.5) * (26.4/ 52) #unemp :26/52 yrs	(11*5) /1M Inc loss: 26/52 yrs
1980	34,095	19,765	14,330	7.27	39.70	$15.008	26.4	0.115	3.9	3,920.93	$229.50	15,319.15	$229.91
1981	28,823	5,825	22,998	7.99	39.80	$16.536	26.4	0.115	3.9	3,314.65	$213.76	12,950.40	$214.15
1982	24,547	5,213	19,334	8.49	38.90	$17.174	26.4	0.115	3.9	2,822.91	$189.07	11,029.16	$189.41
1983	6,652	3,011	3,641	8.83	40.10	$18.412	26.4	0.115	3.9	764.98	$54.93	2,988.79	$55.03
1984	4,004	1,751	2,253	9.19	10.20	$18.450	26.4	0.115	3.9	460.46	$34.93	1,799.03	$34.99
1985	10,273	6,561	3,712	9.54	40.50	$20.091	26.4	0.115	3.9	1,181.40	$92.57	4,615.74	$92.74
1986	18,215	11,713	652	9.73	40.70	$20.593	26.4	0.115	3.9	2,094.73	$168.23	8,184.14	$168.53
1987	17,245	13,074	4,171	9.91	41.00	$21.128	26.4	0.115	3.9	1,983.18	$163.41	7,748.31	$163.71
1988	15,408	12,585	2,823	10.19	41.10	$21.778	26.4	0.115	3.9	1,771.92	$150.50	6,922.93	$150.77
1989	16,014	12,946	3,068	10.48	41.00	$22.343	26.4	0.115	3.9	1,841.61	$160.48	7,195.21	$160.77
1990	33,940	27,413	6,527	10.83	40.80	$22.977	26.4	0.115	3.9	3,903.10	$349.76	15,249.50	$350.39
1991	25,019	19,214	5,805	11.18	40.70	$23.661	26.4	0.115	3.9	2,877.19	$265.50	11,241.23	$265.98
1992	16,547	14,583	1,964	11.46	41.00	$24.433	26.4	0.115	3.9	1,902.91	$181.32	7,434.69	$181.65
1993	17,330	14,418	2,912	11.74	41.40	$25.274	26.4	0.115	3.9	1,992.95	$196.44	7,786.50	$196.80
1994	29,801	27,351	2,450	12.07	42.00	$26.361	26.4	0.115	3.9	3,427.12	$352.35	13,389.82	$352.97
1995	31,363	29,826	1,537	12.37	41.60	$26.759	26.4	0.115	3.9	3,606.75	$376.40	14,091.64	$377.08
1996	48,126	46,120	2,006	12.77	41.60	$27.624	26.4	0.115	3.9	5,534.49	$596.25	21,623.38	$597.33
1997	45,287	43,459	1,828	13.17	42.00	$28.763	26.4	0.115	3.9	5,208.01	$584.22	20,347.80	$585.27
1998	37,598	35,558	2,040	14.49	41.70	$31.420	26.4	0.115	3.9	4,323.77	$529.83	16,893.07	$530.78

단행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함은 물론 컨설팅 제공, 경영성과 회복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줌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TAA 제도의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TAA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억 2천만 달러(NAFTA-TAA 포함)의 예산을 확보해 왔었고, 이번 2002년 TAA에서는 교육훈련 유지를 위해 추가적으로 3억 달러를, 그리고 건강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2억 2천만 달러를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보다 60%를 증액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표 4-8> Estimate of TAA Benefits Received Due to Import Impact on the Garment Industry(1980~98년)

	13	14	15	16	17	18	19	20
	(12+10) Tot Loss w/o TAA	1*7:#cert& Displaced Permanently	(8*14) *7*5yim years	1*(1-col8)* (col 8/52)# unemployed for Col 8/52 yrs	16*7Col 5/1m Income loss for Col 8/52 yrs	15+17 Tot. TAA Benefits	13-18 Net. Lab cost	18/13 TAA to Losses
1980	$459.41	22,272.98	93.13	8,880.57	93.30	186.43	272.99	0.41
1981	$427.91	669.88	30.24	2,617.22	30.30	60.54	367.38	0.14
1982	$378.48	599.50	28.11	2,342.24	28.16	56.26	322.22	0.15
1983	$109.96	346.27	17.41	1,352.87	17.44	34.84	75.12	0.32
1984	$69.92	201.37	10.69	786.74	10.71	21.40	48.51	0.31
1985	$185.31	754.52	41.38	2,947.91	41.46	82.84	102.46	0.45
1986	$336.76	1,347.00	75.72	5,262.74	75.86	151.59	185.18	0.45
1987	$327.12	1,503.51	86.72	5,874.25	86.88	173.60	153.52	0.53
1988	$301.27	1,447.28	86.05	5,654.54	86.20	172.25	129.02	0.57
1989	$321.24	1,488.79	90.81	5,816.74	90.98	181.79	139.45	0.57
1990	$700.14	3,152.50	197.75	12,316.87	198.10	395.85	304.29	0.57
1991	$531.49	2,209.61	142.73	8,633.00	142.99	285.72	245.77	0.54
1992	$362.97	1,677.05	111.86	6,552.25	112.06	223.92	139.05	0.62
1993	$393.24	1,658.07	114.40	6,478.12	114.61	229.01	164.22	0.58
1994	$705.30	3,145.37	226.36	12,289.01	226.76	453.12	252.18	0.64
1995	$753.47	3,429.99	250.57	13,401.05	251.02	501.58	251.89	0.67
1996	$1,193.58	5,303.80	399.98	20,722.07	400.70	800.68	392.90	0.67
1997	$1,169.49	4,997.79	392.44	19,526.46	393.15	785.60	383.89	0.67
1998	$1,060.61	4,089.17	350.76	15,976.48	351.39	702.14	358.47	0.66

에서도 이러한 재정 측면에 대한 검토와 국민적 동의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김홍률, 2003).

Kruse(1988)에 의하면, 무역자유화로 실직의 위기에 몰리는 근로자들은 주로 수입품 경쟁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며, 무역자유화 이전에도 산업구조조정에 의해 근로자 규모가 감소하는 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무역자유화에 의한 효과를 추정하기 앞서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무역자유화 이전에 어떤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

하게 나타날지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관련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 제조업에서 고용감소의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무역자유화와 함께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제2절 EU의 유럽구조기금 (European Structural Fund)[44]

1. 유럽구조기금의 형성과정

1957년 유럽통합이 추진된 이후 유럽공동체는 역내 국가간, 지역간, 계층간의 균형발전을 매우 주요한 주제로 다루었다. 따라서 통합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낙후지역의 개발, 고용창출, 차별폐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는데, 유럽구조기금(European Structural Fund)은 이러한 노력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ttee)에 의해 1958년 창설되었다. 유럽구조기금은 경제통합으로 피해를 입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럽공동체(EU)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구조기금은 회원국의 증가와 EU 통합의 확대에 따라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1987년 단일유럽시장 내의 재화나 서비스, 인력,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법제화하는 단일유럽법령(Single European Act)을 채택하는 것을 계기로 유럽공동체의 경제 및 사회통합의 노력을 가속화했다. 개혁의 내용은 각 기금별로 구분되어 운영되던 구조기금을 보다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구조기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후 1992년 유럽의회는 제1차 프로

44) 이 절의 내용은 임혜준・박혜리(2005), 임혜준・박혜리(2004), 박혜리(2005) 등의 참고문헌을 요약 내지는 재정리하였다.

그램(1994~99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였고, 유럽집행위원회는 1997년 'Agenda 2000'에서 제2차 프로그램(2000~06년)에 대한 구조기금 운영계획을 확정하여 현재 진행중이다. 'Agenda 2000'에서 결정된 내용에는 운영절차의 간소화와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해 지역별 목표(objectives)나 지역사회 주도 의제(community initiatives)의 설정 개수를 축소하여 운영이 편리하도록 하는 한편, 감독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조기금의 이용 실적에 따라 부가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유연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2. 유럽구조기금의 종류와 프로그램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사회기금(ESF: European Social Fund),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수산업재정수단기금(FIFG: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등 네 가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그 필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만들어졌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그 기능의 확대와 운영의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각 기금의 창설시기, 목표와 지원의 내용, 담당기관, 지원 대상 및 형태 등은 <표 4-9>에 정리되어 있다.

구조기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지역별 목표(Objectives)에 따라 구분되는 영역과 지역사회 주도 의제(Community Initiatives)에 따라 배분되는 내용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1994~99년의 제1차 프로그램에서는 제6 목표 지역까지 각각의 지역별 목표에 따라 우선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였고, 2000~06년의 제2차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3개의 지역으로 통합하여 분배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와 선정기준은 <표 4-10>과 같다. 이때 지역별 목표의 결정은 유럽통계청(EUROSTAT)이 회원국의 통계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수립한 공동지역분류시스템(NUTS: Nomenclature of Territorial Statistical Unit)에 의해 이루어지며 GNP의 수준, 산업구조조정의 영향, 구조적인

<표 4-9> 유럽구조기금

	유럽사회기금 (ESF)	유럽농업지원 보증기금(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 (ERDF)	수산업재정수단기금 (FIFG)
창설 시기	1958년 로마조약에서 창설	1962년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재정수단으로 창설	1973년 오일쇼크에 따른 경제불황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확대되자 1975년에 창설	1987년 단일유럽법령의 채택을 계기로 EU의 통합이 확대되면서 구조기금을 확대 개편한 뒤 1992년 제1차 사업기간(1994~99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창설
목표와 지원 내용	궁극적 목적 : 유럽연합 내 국가 및 지역간 균형적 경제사회의 발전			
	▷ EU 내 사회 불균형의 해소 -고용기회 확대 -생활수준 향상 -노동정책의 촉진과 발전 -노동시장 접근의 동등한 기회 보장 -직업훈련제도의 촉진과 개선 -숙련노동자의 육성과 교육을 통한 노동의 질 향상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농촌지역 개발 -농업설비 현대화, 생산비용 절감, 생산품질의 제고,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농업부문 투자 -정착비와 직업훈련 -조기퇴직자 보조금 -비선호지역에 대한 보상금 -농업환경정책 -농산물 마케팅 -산림의 개발과 이용 -농업지역 서비스 개선, 지방경제 육성, 농업 관광상품 개발	▷ 지역간 불균형 해소(저개발지역, 사양산업지역 경제개발)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개발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 -도시 재개발 -직업 재교육 -농촌 개발 -수산업 개발 -관광·문화산업 개발	▷ 수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어촌 개발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근대화(소규모 연안어업, 내수면어업 등에 대한 지원, 양식어업 육성,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 지원, 수산물 판로 개척) -균형적 사회발전 -어선 및 항구의 근대화(어선 신조 및 현대화, 어항시설 확충) -선박 폐선 및 업종전환 -수산자원 보호(어획량 조정) -개별 어민에 대한 복지사업(어업구조조정 또는 어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한 손실 지원, 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담당 기관	※ 유럽집행위원회, 구조기금이사회, 각 회원국의 경영당국의 협조로 이루어지며 이사회는 각국 대표들로 구성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ttee): 구조기금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 - 구조기금위원회(Structural Fund Committee)및 각 기금별 위원회: 구조기금 운영 자문 - 경영당국(Managing Authority):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의 실질적 담당기관 - 감독위원회: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 자문 및 감독			
지원 대상	-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양산업지역, 구조조정 필요 지역 등 지역별 및 공동체별 지원 형태			
지원 형태	- 프로젝트 수행 비용을 직접 지불하나 지원단체와 유럽공동체가 그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매칭 펀드의 성격			

자료 : 임혜준·박혜리(2005)에서 재정리.

<표 4-10> 지역별 목표의 종류

1994~99	
	목 표
제1 목표 지역	낙후된 지역의 개발 지원
제2 목표 지역	심각한 사업쇠퇴지역의 전환 지원
제3 목표 지역	교육의 현대화와 평등한 고용기회 지원
제4 목표 지역	생산체계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 지원
제5(a) 목표 지역(농업)	농업부문의 현대화 지원
제5(a) 목표 지역(수산업)	수산업부문의 현대화 지원
제5(b) 목표 지역	농촌지역 재개발 지원
제6 목표 지역	극심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2000~06		
	목표	기준 및 내용
제1 목표 지역 (Former : 제1,5(a) 목표)	낙후된 지역의 개발 지원	1인당 GNP가 유럽공동체 전체 평균 1인당 GNP의 75% 미만인 지역이며 소득수준이 낮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어 타지역으로 인구 전출이 계속되는 지역
		낙후되고 부족한 인프라 시설(교통, 통신, 에너지),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낙후된 농업구조, 농촌지역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의 대량 이동, 미숙련 노동자와 청년실업의 만연 등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13개 회원국, 60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기금의 2/3가 배분되고 있음.
제2 목표 지역 (Former : 제2,5(b) 목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산업고도화에 따라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석탄, 철강 산업 지대로 생산, 고용 등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변화가 발생하여 쇠퇴하고 있는 지역, 쇠퇴하는 농촌지역, 취약한 도시지역, 수산업 의존 지역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지역
		EU 전체 제조업 인구의 10%, 농촌인구의 5%, 도시인구의 2%, 수산업 인구의 1% 정도가 이 지역에 포함
제3 목표 지역 (Former : 제3,4 목표)	교육과 고용시스템의 현대화 지원	제1 목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지역 중 장기적인 실업이나 생산체계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로 교육의 현대화, 직업교육, 고용촉진 정책 등을 지원)
		인적자원 개발과 관계있는 모든 활동을 지원

자료 : 임혜준 · 박혜리(2004)에서 재정리.

실업문제 등의 발생을 결정기준으로 사용한다.

지역사회 주도 의제(Community Initiatives)에 의한 배분은 1994~99년의 제1차 프로그램 13개의 지원기금에서 2000~06년의 제2차 프로그램 4개 기금으로 통합되어 추진되는 중이다. 첫째, EQUAL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훈련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유럽고용전략(European Employment Strategy)에 따라 고용역량(Employability), 기업가정신(Entrepreneurial Spirit), 혁신역량(Capacity of Change), 기회의 균등(Equal Opportunity)의 4개 영역에 지원된다. 둘째, Leader+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 프로그램을 보조하고 지역사회가 보다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로 소규모 농촌지역을 위한 통합 농촌개발전략 수립, 각 국가별 농촌지역간 인적자원과 재원의 협력, 노하우나 경험의 공유를 위한 농촌네트워크 구성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INTERREG Ⅲ는 유럽공동체의 균형적·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경간·지역간 협력 및 통합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Ⅰ, Ⅱ 프로그램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국경간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 국가간 통합적 지역개발(Standard A), 초국적 협력(Transnational Cooperation): 유럽공동체 국가들간의 균형적인 지역통합(Standard B), 지역간 협력(Inter-regional Cooperation):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과 결속정책(Standard C)의 세 가지가 추진되고 있다. 넷째, URBAN Ⅱ는 경제통합과 수렴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 및 교외지역(urban and suburban)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이 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할 때 사회, 경제, 교통, 환경, 보안 등을 고려한 통합된 접근방법을 제시한다(표 4-11 참조).

구조기금의 분배는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 분배할 기금의 종류와 규모를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설명한 유럽사회기금(ESF),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수산업재정수단기금(FIFGG)의 네 가지 기금이 세 가지 지역별 목표(Objectives)와 네 가지 지역사회 주도 의제(Community Initiative)로 나뉘어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도록 분배되는데, 특정 지역에 특정 기금이 1 대 1 방식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표가 일치한다면 여러 종류의 기금이 중복하여 지급되기도 한다. <표 4-12>는 2000~06년의 제2차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동안 어떤 기금이 어떤 목표와 주도 의제 지역에 적용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목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제1 목표 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동 지역에는 농업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지역개발, 고용의 문제가 모두 공존하므로 유럽사회기금,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 수산업재정수단기금이 모두 배분되며, 제2 목표 지역은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으로 농어촌지역은 아니므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 수산업재정수단기금을 제외한 유럽사회기금, 유럽지역개발기금만이 분배된다. 또한 제3 목표 지역은 교육과 고용시스템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어느 정도 근대화가 진행된 지역으로, 농수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불균형 해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럽사회기금만이 동 지역에 배분된다.[45]

<표 4-11> 지역사회 주도 의제의 종류

1994~99	
	주요 내용
Adapt	노동자들이 산업변화에 적응하도록 지원
Employment	인적자원 개발
Leader	농촌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
Peace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접경 지역 국가들의 평화와 화합 지원
SMEs	중소기업이 단일시장에서 적응하도록 지원
Rechar	광산지역 개발 지원
Regis	원거리지역 개발 지원
Konver	국방지역 개발 지원
Resider	철강산업지역 개발 지원
Retex	섬유 및 의류산업 의존 지역의 개발 지원
Urban	쇠퇴하는 도시지역 개발 지원
Interreg	지역간 협력 지원
Horizon	장애인들의 고용 지원

45) 구조기금은 비상환기금이며 직접보조 형태로 지급된다. 제1 목표 지역은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제2, 3 목표 지역은 프로젝트 총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나머지의 비용은 해당 지역에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표 4-11>의 계속

2000~06	
EQUAL	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자들의 훈련과 경쟁력 향상에 지원
Leader+	농촌지역 개발 프로젝트 지원
INTERREGⅢ	지역간 협력 지원
URBANⅡ	쇠퇴하는 도시지역 개발 지원

자료 : 임혜준 · 박혜리, 『주요국의 FTA 피해산업대책』, 대한상공회의소, 2004.

<표 4-12> 유럽구조기금의 종류별 분배

	제1 목표 지역	제2 목표 지역	제3 목표 지역	Interreg Ⅲ	UrbanⅡ	Leader+	Equal
ERDF	○	○		○	○		
ESF	○	○	○				○
EAGGF	○					○	
FIFGG	○						

자료 : http://europa.eu.int/comm/

3. 유럽구조기금의 운영

가. 운영원칙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연합 전지역에 걸친 방대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도의 운영이 복잡하다. 또한 국가간, 공동체간,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각국의 정책 또한 다양하여 관련 기관간의 파트너십과 복잡하게 얽힌 상호간 이해관계 및 개별국가의 이해관계,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원칙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유럽구조기금은 1999년에 프로그래밍(Programing), 파트너십(Partnership), 부가성(Additionality), 경영감독 및 평가(Management, Monitoring and Evaluation), 지급 및 재정관리(Payment and Financial Controls) 등과 같은 다섯 가지의 운영원칙을 만들었다.

첫째, 프로그래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개발계획, 협동적이고 단계적인 의사결정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다. 각 회원국이 개발계획안을 제출하면 집행위원회에서는 이를 평가하여 각 회원국별,

지역별로 기금을 분배하고 각국은 경쟁을 통해 채택된 프로젝트에 받은 기금을 지불하게 된다. 개발계획안에는 해당 지역의 현재 상황(불균형, 낙후 정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전략을 담아야 한다. 이 개발계획안은 지역 사회지원틀(Community Support Framework), 운영안(Operational Plan), 단일 프로그램안(Single Program Document) 등으로 구성된다. 둘째, 파트너십은 프로그램 운영의 준비단계에서 프로젝트의 실행단계까지 모든 관계기관(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각 회원국의 국가단위 기관(National Authorities), 지역별 협력체(Regional Partners), 사회경제 협력체(Social-Economic Partners) 등)의 수평적·수직적 협동과정을 말한다. 셋째, 부가성은 기금이 어디까지나 각 회원국 내의 공공지출에 부가적인 지원인바, 각국은 목표별로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지출을 유지(특히 지난 해의 공공지출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째, 경영감독 및 평가 원칙에 따라 각국은 구조기금의 운영과 감독을 담당할 경영기관(Managing authority)과 감독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런 기관들은 프로그램의 실행과 평가업무 및 국내 기금의 운영과정을 총괄해야 한다. 다섯째, 지급 및 재정관리의 원칙은 각국별로 지불기관(Payment authority)을 구성하여 기금수혜자와 집행위원회간에 중간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나. 운영방법

기본적으로 EU 내의 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단체는 유럽구조기금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구조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총비용의 일정부분은 구조기금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주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정부부처들, 지역개발사무소, 지방 당국,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원단체 등의 단체들이 일정한 자금을 마련한 상태에서 구조기금을 신청하게 된다. 그러나 민간기관이 제안하는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유럽구조기금의 목표에 부합한다면 구분 없이 지원한다. 단, 민간기업(특히 대기업)의 이익창출

을 위한 프로젝트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공단체나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하면 기금의 수혜가 가능하다.

유럽구조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은 프로젝트를 각 국별 신청기관에 제안하고 이 프로젝트는 점수화되어 경쟁입찰을 통해 기금의 수혜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동일한 규모의 기금을 지급하였을 때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어떤 프로젝트가 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관은 기금의 지원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간을 늦추어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지역별 목표나 지역사회 주도 의제 등의 기준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유럽구조기금은 지원할 프로젝트의 선별과정이 엄격하고 경쟁적이기 때문에 경제통합과정에서 낙후된 지역의 기업이나 단체는 연합 차원의 보조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지역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는 능동적인 입장을 취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운영절차

원칙적으로 유럽구조기금은 프로젝트 단위로 기금을 지급한다. 프로젝트는 작은 규모에서부터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까지 그 규모가 다양하다. 구조기금의 최고결정기관인 유럽집행위원회는 사업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기금예산과 수혜지역, 수혜단체 등을 미리 계획하고 기금의 지급은 연차적으로 한다.

운영절차의 가장 첫 단계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기금의 수혜지역과 지역사회 및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유럽연합 통계청인 EUROSTAT과 각 회원국의 통계 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이루어지며, 각국은 이에 맞추어 발전계획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집행위원회에서는 구조기금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심사하고 승인한다. 각국의 경영기관은 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에 이를 공고하고 프로젝트

제안을 받으며, 승인된 프로젝트에 기금이 전달된다.

각 회원국은 수혜지역이 발표된 후 4개월 이내에 발전계획서(DP: Development Plan)를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발전계획서는 각 국가나 지역이 당면한 과제와 문제, 프로그램의 실행단계 이전에 정부가 달성해야 할 선행조건, 이전 사업기간 동안의 성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의 정부는 각 지역과 경제·사회단체들과 의논하여 발전계획서를 작성한다.

발전계획서를 제출한 후 각 회원국은 더 세부적인 계획서인 단일프로그램안(SPD: Single Program Document)과 지역사회지원안(CSF: Community Support Framework)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는데, 이들 계획안에는 지급받을 구조기금의 종류, 규모, 실행계획 등이 기술되어 있다. 지역사회지원안은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문서로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은 협상을 통해 이 지원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점, 프로젝트 이행의 선행조건과 전략, 기금의 효과적인 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각 지원안에는 운영계획서(OP: Operational Programme)가 있으며 여기에 기금의 운영방법, 사용처, 그에 따른 예상효과, 프로그램의 감독 및 평가 방법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운영계획서는 분야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되며 각 회원국이 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단일프로그램안(SPD)은 CSF와 OP의 통합형태로 운영과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CSF와 OP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다. 각 회원국은 목표(objectives)별로 SPD 또는 CSF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선택권은 각 회원국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10억 유로 이하의 규모인 경우 SPD를 제출하는 경향이 있다. SPD를 작성할 때는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발전계획서(DP)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SPD는 각 지역이나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각국이 제출한 SPD, CSF, OP를 5개월 내에 심사하고 구조기금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이들 계획안의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승인이 나면 3개월 이내에 각 회원국은 다시 프로그램보충계획서(Program Complement)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승인절차와는 무관하다.

이때 각 회원국의 경영기관(Managing Authorities)은 각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데 공공이나 민간기관에 상관 없이 구성될 수 있으며, 승인이 난 후 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공고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받고 이들 기관이나 단체의 프로젝트 운영을 감독하는 의무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감독위원회(Monitoring Committee)의 자문을 구해야 하며, 감독위원회(Monitoring Committee)는 경영기관과 협의하여 지급된 기금이 프로젝트에 쓰이는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하는 연차보고서의 최종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경영기관이 채택하고 승인한 프로젝트는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자금이 지급되게 된다. 유럽구조기금은 프로젝트의 총 수행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하며 보통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지원한다. 보통 지원금액이 전체 비용의 50%를 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제1 목표 지역에 대해서는 75%를 허용하고 있다. 지원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야 한다.

4. 유럽구조기금의 성과와 평가

1994~99년 제1차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을 때 총 1,136억 유로의 구조기금이 지급되었는데, 지역별 목표에 610개의 프로젝트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524개의 프로젝트가 지원을 받아서 총 1,134개의 프로젝트가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았다. 구조기금의 지원을 많이 받은 국가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이었으며 구체적인 지원금액의 배분은 다음 <표 4-13>과 같다. 종류별로는 유럽지역개발기금(ERDF)이 554억 유로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46] 지역별 목표의 분배는 제1 목표 지역에 767억 유로가 지원되어 이 지역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표 4-14 참조). 지역사회 주도

46) 자금 지원은 일시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일정 비중을 지원하여 최종 연도에 지원하기로 한 총금액이 지원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여기 기록된 금액들은 제1차 프로그램 기간 동안 누적된 지원금액으로 해석해야 한다.

의제에 따라 지원된 유럽구조기금의 총액은 83억 유로이며 고용(Employment)부문에 가장 많은 비중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표 4-15 참조).

<표 4-13> 구조기금의 국가별 배분(제1차 프로그램: 1994~99년)

(단위 : 백만 유로)

	ERDF	ESF	FAGGF	FIFG	전 체
벨기에	528	592	192	20	1,332
덴마크	80	310	94	117	601
그리스	7,081	3,043	1,734	113	11,971
스페인	14,273	6,326	3,751	1,063	25,413
독일	6,883	5,482	3,445	125	15,935
프랑스	3,583	3,754	2,619	153	10,109
아일랜드	2,241	1,772	1,012	43	5,068
이탈리아	8,311	3,010	1,675	166	13,162
룩셈부르크	8	23	28	0	59
네덜란드	323	954	74	16	1,367
오스트리아	249	477	478	1	1,205
포르투갈	8,206	2,823	1,752	168	12,949
스웨덴	247	477	4,851	39	5,614
영국	3,270	4,182	397	92	7,841
핀란드	284	383	354	21	1,042
전 체	55,467	33,608	22,456	2,137	113,668

주 : 공동체 기금은 제외.

자료 : European Commission, “11th Annual Report on the Structural Fund”, 1999.

<표 4-14> 구조기금의 지역별 목표 배분(제1차 프로그램 : 1994~99년)

(단위 : 백만 유로)

Objective	ERDF	ESF	EAGGF	FIFG	전 체
1	45,728	18,079	11,454	1,520	76,781
2	7,230	2,370	-	-	9,600
3	-	10,581	-	-	10,581
4	-	1,799	-	-	1,799
5(a) Agriculture	-	-	4,040	-	4,040
5(a) Fishery	-	-	-	613	613
5(b)	2,285	689	2,090	-	5,064
6	224	90	4,872	4	4,190
전 체	55,467	33,608	22,456	2,137	113,668

주 : 공동체 기금은 제외.

자료 : European Commission, “11th Annual Report on the Structural Fund”, 1999.

<표 4-15> 지역사회 주도 의제별 배분(제1차 프로그램 : 1994~99년)

(단위 : 백만 유로)

	ERDF	ESF	EAGGF	FIFG	전 체
Adapt	20	938	-	-	958
Employment	28	1,171	-	-	1,199
Leader	454	43	434	-	931
Peace	77	14	-	67	158
SMEs	533	23	-	-	556
Rechar	295	54	-	-	349
Regis	325	40	27	-	392
Konver	398	40	-	-	448
Resider	281	34	-	-	315
Retex	350	15	-	-	365
Urban	406	63	-	-	469
Interreg/Peace	1,898	161	128	2	2,189
전 체	5,065	2,606	589	69	8,329

자료 : European Commission, "11th Annual Report on the Structural Fund", 1999.

제2차 프로그램의 추진계획은 1999년도에 발표한 'Agenda 2000'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구조기금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역별 목표와 지역사회 지원의 종류를 통합하여 축소하고 여러 참여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며, 경제사회적 통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통합정책을 신규 회원국들에게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제1차 프로그램에서 개정된 내용은 먼저 6개의 지역별 목표를 3개로 줄이고 이 과정에서 수혜지역에서 비수혜지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과도기적 지역(Transitional region)으로 구분하여 한시적으로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사회 주도 의제의 지원 프로그램도 네 가지로 축소하였다. 한편 구조기금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집행위원회와 각 회원국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구조기금 규정집에 각국의 경영기관과 감독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 구조기금의 기본 운영원칙인 파트너십을 강화하였다. 실행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각 회원국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 계획단계부터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그 계획서에 기초하여 별도의 이행절차 없이 바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

기관과는 별도로 재정운영기관(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을 신설하여 매년 집행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제2차 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해 구조기금에 EU 총예산의 약 32%인 1,950억 유로를 배정하였다. 먼저, 제1 목표 지역에 대해 총 구조기금 예산의 70% 이상(1,350억 유로)이 배분되어 EU 총 인구의 약 20%가 수혜를 받게 된다. 제2 목표 지역에는 11.5%(197억 유로)가 지원되며 총 인구의 약 18%가 수혜를 받게 되고, 제3 목표 지역에는 제1 목표가 담당하는 이외 지역에 대한 교육, 훈련, 고용개선을 위한 인력개발 정책기금으로 그 성격상 유럽사회기금에서만 기금을 지원받으며 총 구조기금의 12%(240억 유로)에 해당하는 자금이 지원된다(표 4-16 참조). 지

<표 4-16> 구조기금 국가별 분배 계획(제2차 프로그램 : 2000~06년)

(단위 : 백만 유로)

	제1 목표 지역	제2 목표 지역	제3 목표 지역	그 외 지역*	전 체
벨기에	625	368	737	34	1,764
덴마크	-	156	365	197	718
독일	19,958	2,984	4,581	107	27,630
그리스	20,961	-	-	-	20,961
스페인	38,096	2,553	2,140	200	42,989
프랑스	3,805	5,437	4,540	225	14,007
아일랜드	3,088	-	-	-	3,088
이탈리아	22,122	2,145	3,744	96	28,107
룩셈부르크	-	34	38	0	72
네덜란드	123	676	1,686	31	2,516
오스트리아	261	578	528	4	1,371
포르투갈	19,029	-	-	-	19,029
핀란드	913	459	403	31	1,806
스웨덴	722	354	720	60	1,856
영국	6,251	3,989	4,568	121	14,929
전 체	135,954	19,733	24,050	1,106	180,843

주 : 1) 예정금액임.
2) 공동체 지원은 제외.
3) 1999년 가격기준.
*제1 사업목표 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과도기에 있는 지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http://europa.eu.int/

역사회 주도 의제에 의한 예산 배분은 INTERREG에 약 48억 유로, EQUAL에 약 48억 유로, LEADER에 약 20억 유로, URBAN에 약 7억 유로가 지원될 계획이다.

유럽구조기금은 EU 전체 예산에서 두 번째 큰 규모를 차지하는 재정사업으로 자금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구조기금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의 문제점인 도덕적 해이 현상을 피하기 위해 매칭 펀드(Matching Fund) 시스템과 성과에 기초한 기금분배, 그리고 프로젝트별로 중간·최종평가를 실시하여 과거 성과를 기준으로 다음 사업기간의 기금분배를 결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후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프로젝트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제출된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기금의 수혜 또한 불가능하므로 충실한 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며, 또한 한번 지급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 다음 사업기간의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프로젝트 실행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럽구조기금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 제도가 아닌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의 재정수단으로 유럽공동체에서 시행하는 농업정책, 지역개발정책, 수산업보조정책, 구조정책 등과 맞물려 계획이 수립되어 광범위한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

1999년 제1 사업기간을 마치고 이루어진 유럽구조기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 낙후 지역들은 유럽구조기금의 지원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생산력이 향상되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동 지역과 역내 다른 지역과의 GDP 격차도 다수 줄어들었다. 산업고도화로 인한 사양산업지역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으로 실업률 감소와 경제활동 다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 및 수산업 부문을 지원하여 농수산업의 활동 개발과 농가의 소득 증대, 동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때 Krugman(1991)이 발전시킨 집적이론(agglomeration theory)과 Romer(1990)가 주장한 내생성장모형(endogenous growth model)에 따르면 경제통합은 경제적 격차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유럽구조기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신고전주의 성장모형과 비교우위이론에 입각한 이론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생산요소간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로 이해하고 완전한 요소의 이동을 보장하는 무역자유화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유럽구조기금은 산업구조조정과 생산요소의 활발한 이동을 저해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Obstfeld and Peri, 1998).

실증분석에 의한 평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의견이 나뉘는데, European Commission(1999)에 따르면 1986~96년 기간 동안 EU의 가난한 지역의 1인당 GDP는 평균 수준의 41%에서 50%로 격차를 좁혔고, 가장 낮은 1인당 GDP를 기록하던 25개 지역은 52%에서 59%로 올라갔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가 유럽구조기금의 전적인 기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별 수준에서는 이보다 더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조기금을 받은 국가들 중 가장 1인당 GDP 수준이 낮던 국가(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들의 경우 1986년 평균의 65% 수준에서 1999년 78%까지 격차를 좁혔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EU의 25%에 해당하는 인구가 제1 목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1인당 GDP의 격차는 좁혀졌으나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상대적인 불균형도 좁혀졌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유럽구조기금이 지원을 했던 각 지역의 경우, 특히 제1 목표 지역의 경우 경제성장률이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통계적으로 증명된다(Pereira, 1999). Garcia Solanes(2002) 또한 β-convergence test를 통해 유럽구조기금이 국가의 경우 1인당 GDP를 연간 8.6%, 지역의 경우 2.5% 증가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통합의 속도 또한 촉진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 따르면 유럽구조기금은 생산성이나 인프라 기술 축적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적인 변수들을 바꾸어 나가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47]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책 차원에서의 성과 평가와 달리 경제학의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는 시각은 약간 다르다. 일부 학자들은 유럽구조기금이 지원하는 지역, 산업 등에 대해 불균형과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지연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변화가 가져오는 구조조정에 의한 경쟁력 향상을 저지하는 한편,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조장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던진다. K. Helene et al.(2002)은 13개 EU 회원국에 대해 36개 산업을 1970~97년 기간 동안의 생산데이터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유럽구조기금이 지원을 하는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 보다 연구개발에 집중된 산업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을 하지만 그 산업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나 연구자를 유인하는 데는 실패하는 것을 보여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발생시키는 실증 결과를 도출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구조기금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각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기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EU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각 기관마다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여전히 각 회원국과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유럽구조기금의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48]

그 외에도 유럽구조기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가지고

47) 유럽구조기금이 비록 도덕적 해이현상이나 대체효과 등의 부작용이 있으나 1995~2001년의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의 격차를 축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근거로 구조기금이 향후(새로운 동구권 국가들이 EU멤버로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더 커다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최근 연구로 Beugelsdijk(2005)가 있다.

48) Gil et al.(2002)은 가장 취약한 지역의 소득성장률이나 수혜자성장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 중심의 시스템(equal development), 또는 모든 지역에 비슷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 중심의 시스템(equal opportunities)을 설명하고 각 지역별로 효율성-형평성의 자료를 만들어 과거의 분포를 비교했을 때보다 많은 지역에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있다. 첫째, 기금분배의 결정에 있어 통계에 의존한 현재의 기금분배 결정은 방대한 유럽의 각 지역과 계층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과 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각 지역 책임부서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별국가에 자체 운영권을 부여하고 운영기관을 분권화하였으나, 분권화 과정에서 운영의 효율성과 신속한 결정이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운영기관간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효율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교육과 운영기술을 갖춘 제도 운영 전문가를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최대의 성과를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4년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동부권 유럽의 10개국[49]이 EU에 참가하게 되면서 지역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오는 2007~13년의 제3차 프로젝트에서는 이들 국가에 많은 비중의 유럽구조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49)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이다.

제5장
결 론

거시적으로 인력수급과 관련하여 FTA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가격하락에 의해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는 산업과 경합하는 국내 산업의 경우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이 발생하여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앞서 언급한 무역창출효과에 의해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산업에서는 산출물의 증가와 연관된 고용계수의 크기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한·일 FTA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산업이 일본에 종속되는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 혹은 경제모형에 의한 추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자본축적과 경쟁촉진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에 따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즉 고용의 순규모 변화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앞서 정리한 산업별 전망에 따르면 다음 산업에서는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 변화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철폐의 영향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타나는데, 중간재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일 산업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효과는 다른 국가의 중간재 수입의 감소와 더불어 국내 중간재 생산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업과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발생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산업으로는 시장확대와 고용의 증가라는 노동시장에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산업으로 농수산업과 건설서비스업이 지적되고, 시장의 잠식과 고용의 악화가 예상되는 산업은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이며, 서로 비슷한 경쟁력으로 상황에 따라 시장확대 또는 시장잠식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유통서비스, 금융서비스, 해운서비스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협상이 어떤 내용으로 타결되느냐에 따라 시장상황이 변화할 수도 있다. 국내 시장이 잠식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고부가가치 제품은 일본이, 저부가가치 제품은 한국이 전문화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의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는 섬유·의복과 조선산업이 지목되고 있으며, 관세철폐가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산업으로 반도체, 통신기기, 철강, 통신서비스 산업이 예상된다.

총량적으로 볼 때 한·일 FTA의 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조정의 압력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근로자 집단이 존재하며, 또한 인력수요의 증가가 나타나는 산업이나 직종에서도 그 산업이나 직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이 갖추어져야만 필요 인력의 초과수요라는 비효율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실직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피해집단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지원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해당 사업체들의 전업 및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피해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현재 일하고 있는 산업, 직종, 학력수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한 전직지원서비스와 교육 및 훈련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야로 전직을 하거나 기술을 축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은 이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 중 FTA의 영향으로 인력수요의 증가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또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부문의 직종과 기술수준을 살펴보면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노동력과 직장을 찾고 있는 구직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CGE 모형에 의한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에 있어 단기에 발생 가능한 실직자 규모는 최대 5만 8천 명 수준으로, 그 중 기계장비부문의 규모가 3만 1천 명으로 가장 크다(완전경쟁 기준). 산업별로는 단기적으로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산업은 섬유와 의류·피혁 부문 정도이며, 단기적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산업으로는 기계장비, 금속, 석유화학, 전기·전자, 광물자원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중장기로 갈 경우 전체 실직자 규모는 4만 2천 명으로 감소하지만 기계장비부문의 실직자 추정치는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문에 있어서는 관세철폐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이 부문에 대해서는 협상단계에서 다른 제조업과 차별화하여 관세철폐의 이행기간을 늦출 필요가 있다.

한편 직종별, 기술수준별 분석에서는 조립과 조작원과 같이 저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처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서 이들에 대한 전직이나 재교육훈련과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발견되었다.

지금도 고용보험은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서비스, 훈련비용 지원, 전직지원, 직업정보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하여 만약 FTA에 의해서 실업을 하게 된 근로자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규모를 일반적인 수준보다 0.5배 높여 준다거나, 또는 실업급여의 만료기간을 연장해 준다거나, 그 외 훈련 및 전직지원의 한도와 기간을 확대한다거나, 보다 전문적인 고용안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기존의 실업자와 차별화된 혜택을 줌으로써 무역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던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역 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용보험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어떤 예산을 이용하든지 소득보조, 훈련지원, 전직지원, 고용안정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사점을 찾기 위해 살펴본 미국의 TAA나 유럽의 구조기금 모두 일정 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TAA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의 지지기반을 얻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여했고, 또한 피해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이전 수준의 60~70%의 소

득을 보전하는 한편,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의 부담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럽구조기금의 경우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운영방식과 평가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점에서 장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각 회원국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구조기금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점은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프로젝트에 따른 효율적 배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TAA 방식은 FTA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다시 고용되고 소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유럽구조기금은 취약한 지역에 지원(지역사회 조직이나 그룹이 자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하여 그 지역의 경제나 고용을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을 성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제도는 서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TAA는 피해 당사자 개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지역별 격차가 부문별 격차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단점을 가지며, 유럽구조기금은 역으로 지역별 격차는 축소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러한 두 제도의 장단점을 취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자유무역원리에 따른 이론대로라면 FTA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은 생산요소의 이동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면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생산요소의 이동에 가까운 현실을 만들기 위한 재교육 및 훈련과 전직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서 TAA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직업훈련, 소득보조, 구직서비스의 적합한 배합과 균형이 효율적인 재고용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요약컨대, 한·일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협상과정에서 국내 산업이나 기업, 근로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가 크다고 추정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나 이행기간의 연기, 관세철폐 항목에서의 제외 등 예방책의 마련과 협상 내용의 조절이 필요하다. 또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산업정책을 취하면서 관세 완전 철폐를 연기하거나, 단계별로 철폐할 수 있다. 둘째, 다음으로 개방하기로 결정된 분야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근로자, 기업,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노동부와 산자부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그 운영체계나 성과평가 시스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일 FTA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외국인 투자의 확대와 기술력 제고, 국제경쟁력의 향상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FTA의 궁극적인 효과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모든 부작용의 해결 또한 소용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FTA 협상에 더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내외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두용(2004),「제조업 공동화 지수의 정량적 추정」,『경제분석』, 제10권 제3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49~71.

강문성·김양희·김흥종·권경덕·이종화·정인교(2004),『거대경제권과의 FTA의 평가 및 정책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인수·김태준·박태호·유재원·유진수·이호생·채욱·한홍렬(2004),『국제통상론』, 박영사.

강준구(2001),「WTO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과 시사점」,『월간 KIEP 세계경제』, 2001년 제5호.

_____(2004),「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대칠레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고준성(2005),「FTA의 주요 내용」, 정인교·노재봉 편저,『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91~128.

_____(2003),『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김도형·유관영·심승진·김원규·이항구(1999),『한·일 자유무역협정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

김원호·강문성·나수엽·김진오(2000),『NA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출범 전 전망과 실행효과 비교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승택(2004a),『인력알선 및 인력공급서비스 개방에 대비한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_____(2004b),「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매월노동동향』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정인교·양윤정·조정란(2004),『한·일 자유무역협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김준동·이한영·장범진·강상인·조성한(200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 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0), 『한·일 FTA의 경제효과와 정책방향』.

_____(2005), 「한·일 FTA의 경제효과」, 미공개 내부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시아경제연구소(2000. 5), 「한·일 자유무역협정의 구상: 평가와 전망」, KIEP·IDE 주최 한·일 공동 심포지엄.

무역연구소(2003), 『아시아 주요국의 FTA 추진 동향』,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_____(2004), 『2004년 전세계 FTA 추진일정』,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

박번순·전영재·김현진·이수희·최세균(2004),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순찬(2004), 「한·일 FTA 추진경과 및 협상 진행사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부자료.

박순찬(2001), 「한·일 자유무역지대 형성과 자본축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 풀 토의자료.

박순찬·김진오·김흥종·박영곤·김균태·권기수·권율·박복영·배희연(2004), 『FTA의 득과 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혜리(2005), 『유럽구조기금의 운영현황과 한국의 FTA 피해산업 지원대책에 대한 시사점』, 세계경제.

산업연구원(2005), 『한·일 FTA효과의 분석』.

서정해(2004), 「한·일 FTA가 기계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일 FTA 체결에 따른 기계업계의 영향과 대응방안 심포지엄.

손찬현(20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안세영(2005), 「FTA정책 국내여건 평가 및 외국의 정책사례 연구」,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255~297.

_____(2003), 「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한·칠레 FTA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무역연구』, 제28권 제2호, pp.55~

79.
이홍식·이종화·신관호·왕윤종(2005),『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성장효과』, 정책연구 04-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혜준・박혜리(2004),『주요국의 FTA 피해산업대책』, 대한상공회의소.
_____(2005),『무역자유화 피해지원제도: 미국· EU 사례와 시사점』, 세계경제 제05-10호.
유명희(2005),「우리 정부의 FTA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정인교・노재봉 편저,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157~184.
전국경제인연합회(2004),『한일 FTA에 대비한 업종별 전략』.
_____(2000),『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 희망』.
_____(2004),「실태조사 결과 및 보완과제」, 한・일 FTA 대토론회, 전경련·대한상의·무역협회·중기협 공동세미나.
_____(2004),『한・일 FTA 산업별 영향과 대책』, 국제경제 이슈페이퍼 9.
정만기·안세영(2002),「한・EU 협상에서 내부협상 갈등에 대한 연구: 조선협상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무역학자 학술대회 발표논문.
정인교(2001a),『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2001b),『FTA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2004a),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경제정책연구』, 제6권 제3호, 국제문제조사연구소, pp.105~138.
_____(2004b),『한-아세안 FTA의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협회 공동주관 '한-아세안 FTA 공청회', 한국무역협회.
_____(2005a),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 추정 및 양국간 협상에 대한 시사점」,『한일경상론집』 제29권.
_____(2005b),「한-멕시코 FTA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경제연구』 제14권.
_____(2005),「주요 FTA의 예상 경제효과」, 정인교・노재봉 편저,『글로벌시대의 FTA전략』, 해남, pp.218~254.
정인교·노재봉 편저(2005),『글로벌 시대의 FTA전략』, 해남.
정인교·조용균·권영민·이홍배·조현준·김은지·최태욱·안세영

(2003),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강문성·김흥종·박복영·지만수·이경희·김정곤(2005), 『선진통상국가의 개념정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2004), 『세계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및 경영환경 및 투자만족도 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은행(2003), 『2000년 산업연관표』.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경제정보분석팀(2002), 「자유무역협정 왜 확산되나」, 『나라경제』.

한이경 · 이형오(2004), 『2만불 달성을 위한 대일본전략: 한 · 일 FTA와 한·일간 신분업론』, 삼성경제연구원.

日本 經濟産業省(2001), 「對外經濟政策 基本理念」(www.meti.go.jp).

_____(2000), 『産業の中間投入に係る內外價格調査』.

Armington, Paul(1969). "A Theory of Demand for Products Distinguished by Place of Production", IMF Staff Papers 16, pp.159 ~ 178.

Baldwin, R. E(1989), "The Growth Effects of 1992", *Economic Policy* 4, pp.247 ~ 283.

Baldwin, R. E. and P. Krugman(1988),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in Wide-bodied Jet Aircraft", in *Trade Policy Issues and Empirical Analysi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aldwin, R. E. and A. J. Venables(1995),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G. M. Grossman and K. Rogoff (eds.), *Handbook of International Economics* Ⅲ, Amsterdam: North-Holland, Elsevier.

Beugelsdijk, Maaike, Eijffinger and C. W. Sylvester(2005), "The

Effectiveness of Structural Policy in the European Union: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EU-15 in 1995-2001",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3, Issue 1, pp.37~51.

EC(1999), *Sixth Periodic Report on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Regions in the Community*, Commiss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rancois, J. F., B. McDonald, and H. Nordström(1995), "Assessing the Uruguay Round", in W. Martin and A. Winters (eds.),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World Bank Discussion Paper 201.

_____(1997), "Capital Accumulation in Applied Trade Models", in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 A Handbook,*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cois, J. F. and David W. Roland-Holst(1997), "Scale Economies and Imperfect Competition," in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 A Handbook,*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Garcia Solanes, Jose, Maria-Dolores, and Ramon(2002), "The Impact of European Structural Funds on Economic Convergence in European Countries and Regions", *Convergence Issues in the European Union*, pp.61~82.

Gil Carlos, Pascual Pedro, Rapun and Manuel(2002), "Regional Allocation of Structural Funds in the European Union", *Environment and Planning C: Government and Policy* 20, Issue. 5, pp.655~677.

Gunderson, Morley(1998), "Regional Impacts of Trade and Investment on Labour", *Canadian Journal of Regional Science* 21, Issue 2, pp.197~225.

Harrigan, F. and P. McGreger(1989), "Price and Quantity Interactions in Regional Economic Modeling: The Importance of Openness

and Closures," *Recent Advances in Regional Economic Modeling*, Pion Press, pp.178~205.

Hertel, T. W.(1997), *Global Trade Analysis: Modeling and Applic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Hertel, Tom(2004), *GTAP Database,* Purdue University.

_____(2005), *GTAP Database,* Purdue University.

Hitomy, K., Y. Okuyama, G. Hewings, and M. Sonis(2000), "The Role of Interregional Trade in Generating Change in the Regional Economies of Japan, 1980-1990", *Economic Systems Research* 12(4), pp.515~537.

Holmes, T. & John Stevens(2002), "Geographic Concentration and Establishment Size"(holmes@econ.umn.edu).

Igawa, Kazuhiro and Bonggil Kim(2001), "A Note on Possibilities about Japan-Korea Free Trade Area: A Theoretical and Strategic Approach", mimeo, Kobe, Japan: Kobe University.

Jacobson, L.(1991), "Congressional Testimony on the Effectiveness of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Program", Upjohn Institute Staff Working Paper 92-12.

Jones, R. and J. Whally(1988), "A Canadian Reg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 *Journal of Urban Economics* 25, pp.368~404.

Karen Helene, Midelfart-Knarvik, Overman and G, Henry(2002), "Deloc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Is Structural Spending Justified", *Economic Policy*, European Forum, Issue 35, pp.321~351.

Krugman, P.(1991), "Increasing Returns and Economic Geograph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 pp.483~499.

Ramrattan, L. and, M. Szenberg(2002), "Trade adjustment Assistance and Import Competition: Experience in the U.S. Footwear Industry: 1980~1997",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XVI,

Issue 1.

Marcal, L.(2001), "Does Trade Adjustment Assistance Help Trade-Displaced Workers?", *Western Economic Association International* 19(1), pp.59~72.

Meunier, S.(2000), "What Single Voice? European Institutions and EU-US Trade Negoti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54. (I).

Miller, R. and P. Blair(1985), *Input-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Prentice-Hall.

Norcliffe, G. B.(1983), "Using Location Quotients to Estimate the Economic Base and Trade Flows", *Regional Studies* 17(3), pp.161~168.

Pearson, K. and M. Horridge(2003), "Hands-on Computing with runGTAP and winGEM to Introduction GTAP and GEMPACK".

Pereira A.(1999), "International Public Transfers and Convergence in the European Union", *Public Finance Review* 27, pp.194~219.

OECD(2003), *Regionalism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utnam, R.(1988), "The Diplomacy and Domestic Policies: The Logics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2(III).

Round, J.(1985), "Decomposing Multipliers for Economic Systems Involving Regional and World Trade," *The Economic Journal* 95, pp.383~399.

Romer, P.(1990), "Endogenous Techn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S.71~102.

Wilson, J.(1975), *Political Organization*, New York: Basic Books.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and 2000/2001.

WTO(2003), "Regional Trade Agreements Notified to the GATT/WTO and in Force by Status in the Examination Process", Geneva.

<부 표>

<부표 1> 한·일 FTA가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한국 제조업 10% 예외 인정)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9	9	9	9
원료 농산물	63	61	63	60
축산물	3	3	3	3
임산물	0	0	0	0
수산물	11	10	11	10
광물자원	567	569	566	567
가공식품	0	0	0	0
섬유	303	307	302	306
의류·피혁	558	560	556	557
석유화학	242	253	244	254
금속	127	141	129	158
승용차·부품	1	3	2	4
기타 수송장비	0	0	0	0
전기·전자	111	155	107	166
기계장비	53	75	59	89
기타 제조업	373	380	371	378
건설	0	0	0	0
무역·운송	-6	-4	-7	-5
금융	-6	-4	-6	-5
기타 서비스	-2	-1	-2	-2
전 체	2,409	2,518	2,404	2,549
제조업 전체	1,769	1,875	1,769	1,911

<부표 2> 한·일 FTA가 한국의 대일본 수입에 미치는 영향(한국 제조업 10% 예외 인정)

(단위 :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1	1	1	1
원료 농산물	5	5	5	5
축산물	7	7	7	7
임산물	0	0	0	0
수산물	28	28	28	28
광물자원	233	234	233	233
가공식품	6	6	6	6
섬유	244	246	243	241
의류·피혁	50	51	50	50
석유화학	1,351	1,374	1,355	1,440
금속	1,058	1,082	1,063	997
승용차·부품	260	263	260	262
기타 수송장비	23	24	23	24
전기·전자	640	676	637	682
기계장비	2,729	2,765	2,722	2,755
기타 제조업	234	238	234	236
건설	0	0	0	0
무역·운송	-2	1	-2	2
금융	0	2	0	3
기타 서비스	0	0	0	0
전 체	6,868	7,002	6,867	6,974
제조업 전체	6,596	6,724	6,594	6,695

<부표 3> 한·일 FTA가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 미치는 영향(한국 제조업 10%, 기계류 50% 예외 인정)

(단위: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9	9	9	9
원료 농산물	63	61	63	60
축산물	3	3	3	3
임산물	0	0	0	0
수산물	11	10	11	10
광물자원	567	569	566	567
가공식품	0	0	0	0
섬유	304	307	303	306
의류·피혁	558	560	557	558
석유화학	243	252	246	254
금속	128	140	131	157
승용차·부품	1	2	1	3
기타 수송장비	0	0	0	0
전기·전자	55	91	51	98
기계장비	38	55	40	65
기타 제조업	374	379	372	378
건설	0	0	0	0
무역·운송	-6	-4	-7	-5
금융	-5	-4	-6	-5
기타 서비스	-2	-1	-2	-2
전 체	2,341	2,430	2,338	2,457
제조업 전체	1,701	1,786	1,701	1,818

<부표 4> 한·일 FTA가 한국의 대일본 수입에 미치는 영향(한국 제조업 10%, 기계류 50% 예외 인정)

(단위: 백만 달러)

	완전경쟁		규모의 경제	
	단기	중장기	단기	중장기
곡물	1	1	1	1
원료 농산물	5	5	5	5
축산물	7	7	7	7
임산물	0	0	0	0
수산물	28	28	28	28
광물자원	233	234	233	233
가공식품	6	6	6	6
섬유	245	247	245	242
의류·피혁	51	51	51	51
석유화학	1,360	1,379	1,364	1,444
금속	1,068	1,088	1,072	1,000
승용차·부품	261	263	261	263
기타 수송장비	23	24	23	24
전기·전자	636	666	633	669
기계장비	1,482	1,511	1,476	1,507
기타 제조업	236	239	236	237
건설	0	0	0	0
무역·운송	-1	1	-1	2
금융	0	1	0	2
기타 서비스	0	0	0	0
전 체	5,642	5,752	5,640	5,722
제조업 전체	5,368	5,474	5,366	5,443